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I.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1. 총괄	1
가. 총수입·총지출	1
나. 세입·세출예산안(총계 기준)	4
다. 기금운용계획안	7
라.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8
2.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부사업 주요 변동내역	10
가. 2026년 신규사업	10
나. 2025년 종료사업	14
3.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15
II. 예산안 총괄	17
1. 총수입 분석	17
2. 총지출 분석	25
III. 회계·기금별 검토	34
1. 일반회계	34
가. 개요	3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36
1) 국가농업 AX플랫폼 :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6
2) 국제농업협력(ODA)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대비용 절감방안 마련 필요	52
3) 국제기구분담금 및 국제기구분담금(ODA)	58

(1) 국제기구분담금 및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 동일 환율 기준 적용 필요	60
(2)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 재검토 필요	64
4)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67
5) 직장인 든든한 한끼	72
(1) 사업추진 필요성 및 고려사항	75
(2)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관련 검토	78
(3) 성과평가의 개선 필요	80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2
가. 개 요	82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85
1) 농업재해보험	85
(1) 농작물재해보험 '24년 미지급금 전액 정산 필요	87
(2) 품목별 가입률과 농가 수요에 기반한 목표 가입률 설정 필요	90
2) 농촌고용인력지원	96
(1)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배분 기준 마련 등 필요	97
(2)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적정성 검토 필요	103
3)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06
(1)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107
(2)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 필요	111
4)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지원: 은퇴봉사동물 민간입양지원 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19
5) 가축방역대응지원: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정보화전략계획 (ISP) 및 업무재설계(BPR) 수립 예산 반영 필요	124
6)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128
7) 국립농업박물관운영: 인건비 처우개선 미반영분 검토 필요	134
8)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절차 및 관리·감독 등 의무 준수 필요	138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43
가. 개 요	143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5
가. 개 요	145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6
가. 개 요	14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48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48
(1)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149
(2) 예산안 편성절차 준수 필요성	152
(3) 성과지표의 목표 적정성 검토 필요	154
2) 농촌경제활성화지원	157
(1) 유사 창업 콘테스트 및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필요	160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 관련 문제	162
(3) 농촌산업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	164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6
가. 개 요	166
7. 양곡관리특별회계	167
가. 개 요	16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69
1) 쌀 소비기반구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홍보 필요성에 따른 적정규모의 홍보예산 운영 필요	169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74
가. 개 요	17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76
1) 비축지원: 긴급가격안정자금의 실제 집행내용에 부합하는 비목 편성 필요	176
2)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유사 시스템 간 통합·조정 계획 마련 검토 필요	180
3) 자조금지원: 쌀 자조금에 대한 의무자조금 전환 유도 노력 필요	186
4)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191
(1)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내역사업의 2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192
(2)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의 시범사업 성과관리 강화 및 지역 확산 체계 설계 필요	195
5)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농산물 PLS 제도의 홍보 예산 편성 시 기관 간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200
9. 농지관리기금	206
가. 개 요	20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08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당초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해외 인턴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208
2)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 실효성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212
3) 농지연금(융자): 월 지급단가 현실화 필요	220
10. 축산발전기금	225
가. 개 요	22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27
1)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보조)	227
(1) 축산악취개선 실집행률 제고 필요	228
(2)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31
2)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건비 통합 편성 필요	238

11.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43
가. 개 요	24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45
1) 공익기능증진직불	245
(1) 수급조절용 벼 운영에 따른 RPC의 부담 해소 및 가루쌀 관련 예산 및 정책수단 점검 필요	247
(2)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의 농가 참여 유인 강화 및 직불금 지급기준 등 보완 필요	257
1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67
가. 개 요	26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69
1) 과수생산유통지원: 실집행 단계의 연례적 이월 등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269
2) 축사시설현대화(육자·보조): 사업 추진 시 부처간 사전 협력체계 강화 필요	273
1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79
가. 개 요	279
14. 양곡증권정리기금	281
가. 개 요	28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I.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총 관

가. 총수입·총지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 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 교육지원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7개 기금(농산물가격안정 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 정리기금)으로 구성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총수입¹⁾은 14조 6,5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30억원(12.3%) 증가하였음.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2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조 7,326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0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 총수입은 총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회계의 총계, 특별회계의 총계, 기금(금융성기금과 재정성 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를 모두 더한 뒤, 회계 간 내부거래수입,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함. 여기서 내부거래수입이란, 어느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차입이나 예수와 같이 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됨. 보전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 입장에서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를 의미함.

0.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6,886억원
 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4,518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 4,265억원,
 축산발전기금 7,269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558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361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87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 21억원임.

이를 성질별로 보면, 농어촌특별세 8조 4,988억원, 기업특별회계영업
 수입 6,508억원, 재산수입 2,696억원, 경상이전수입 1조 4,165억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530억원, 수입대체경비수입 12억원, 관유물매각대
 8,115억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조 8,541억원 등으로 구성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총수입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8,015,774	8,159,239	9,497,673	1,338,434	16.4
- 일반회계	10,916	21,333	22,318	985	4.6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255,349	7,602,011	8,732,634	1,130,623	14.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667	43,047	43,047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34	45	11	32.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53	3,481	11,024	7,543	216.7
- 양곡관리특별회계	731,789	489,333	688,605	199,272	40.7
기 금	4,064,210	4,893,186	5,157,795	264,609	5.4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42,835	2,360,763	2,451,761	90,998	3.9
- 농지관리기금	1,186,818	1,392,423	1,426,472	34,049	2.4
- 축산발전기금	375,549	634,946	726,879	91,933	14.5
-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82,180	7,066	55,849	48,783	690.4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66,129	341,612	336,124	△5,488	△1.6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062	156,089	158,658	2,569	1.6
- 양곡증권정리기금	1,637	287	2,052	1,765	615.0
합 계	12,079,984	13,052,425	14,655,468	1,603,043	12.3

* 주: 일반수입 기준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은²⁾ 20조 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934억원(6.9%) 증가하였음.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7,58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조 3,931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8,496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9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6,117억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조 5,211억원, 농지관리기금 2조 6,622억원, 축산발전기금 8,542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조 123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889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506억원임.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년 대비 4.7%(134억원) 증가한 2,999억원, 자치단체이전(경상 및 자본)은 전년 대비 8.2%(4,616억원) 증가한 6조 1,228억원,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1%(4억원) 증가한 327억원, 융자사업은 전년 대비 22.3%(7,256억원) 증가한 3조 9,720억원, 일반출연금은 전년 대비 △72.8%(△1,488억원) 감소한 557억원임.

2)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함(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총지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9,551,049	10,481,861	10,645,670	163,809	1.6
- 일반회계	825,815	925,321	758,500	△166,821	△18.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220,846	5,369,383	5,393,074	23,691	0.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873	16,495	16,837	342	2.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27,145	1,362,423	1,849,634	487,211	35.8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297	15,697	15,897	200	1.3
- 양곡관리특별회계	2,745,073	2,792,542	2,611,728	△180,814	△6.5
기 금	8,195,109	8,259,777	9,389,323	1,129,546	13.7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51,237	2,189,650	2,521,112	331,462	15.1
- 농지관리기금	2,039,324	1,826,528	2,662,181	835,653	45.8
- 축산발전기금	870,363	908,935	854,200	△54,735	△6.0
- 농업농촌공익증진작업지불기금	2,617,174	2,995,105	3,012,290	17,185	0.6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57,732	288,954	288,927	△27	△0.01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9,279	50,605	50,613	8	0.02
합 계	17,746,158	18,741,638	20,034,993	1,293,355	6.9

* 주: 일반지출 기준

나. 세입·세출예산안(총계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구성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18조 9,4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766억원(12.3%)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조 2,544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0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6,117억원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 농어촌특별세가 8조 4,9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35억원(14.6%)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6,054억원(△9.6%) 감소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편성하지 않았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0,916	21,333	22,318	985	4.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707,888	14,005,522	16,254,381	2,248,859	16.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667	43,047	43,047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0	34	45	11	32.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53	3,481	11,024	7,543	216.7
양곡관리특별회계	2,870,389	2,792,542	2,611,728	△180,814	△6.5
합 계	2,870,389	16,865,959	18,942,543	2,076,584	12.3

* 주: 총계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5조 6,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045억원(8.0%)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 4,87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조 6,511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8,496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9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6,117억원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배수개선 1,559억원 및 농업재해보험 8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양곡매입비 1,318억원과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계정으로 전출금 1,898억원이 감액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736,362	7,259,351	6,487,141	△772,210	△10.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466,360	12,281,344	14,651,124	2,369,780	19.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873	16,495	16,837	342	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27,145	1,362,423	1,849,634	487,211	35.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297	15,697	15,897	200	1.3
양곡관리특별회계	2,745,073	2,792,542	2,611,728	△180,814	△6.5
합 계	20,707,110	23,727,852	25,632,361	1,904,510	8.0

*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구성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조 4,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89억원(9.5%) 증가하였음.

기금별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3조 481억원, 농지관리기금 2조 7,802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 1,215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조 1,124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298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5,139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은 3,890억원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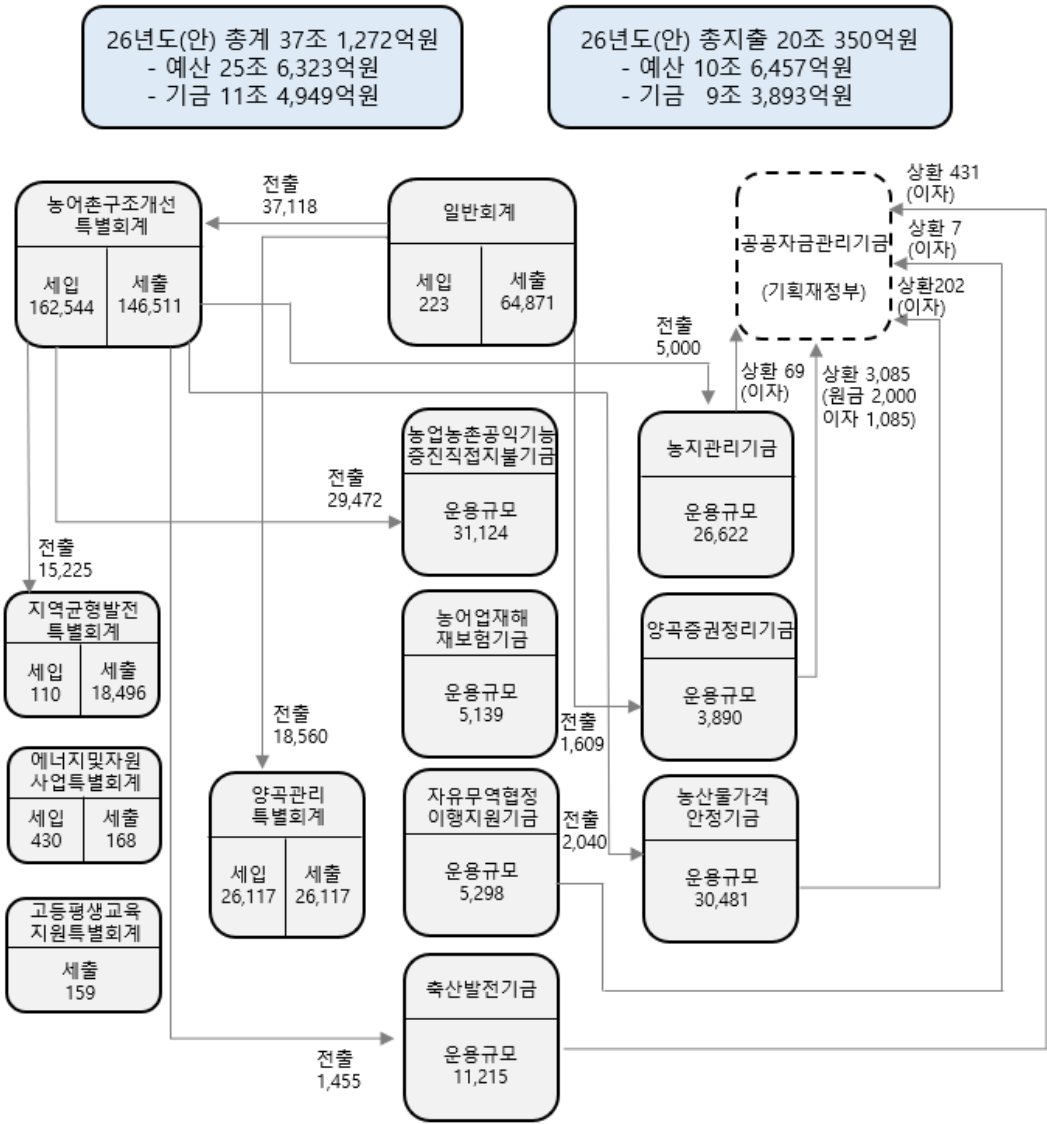
구 분	2024 결산	2025 계획(A)	2026 계획안(B)	증감	
				B-A	(B-A)/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99,891	2,597,796	3,048,050	450,254	17.3
농지관리기금	2,868,163	2,328,915	2,780,209	451,294	19.4
축산발전기금	912,955	1,025,446	1,121,527	96,081	9.4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970,267	3,104,461	3,112,418	7,957	0.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6,542	482,612	529,782	47,170	9.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08,497	405,862	513,915	108,053	26.6
양곡증권정리기금	1,550,413	550,904	388,957	△161,947	△29.4
합 계	11,275,728	10,495,996	11,494,858	998,862	9.5

* 주: 총계 기준

라.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

(단위: 억 원)



* 주: 총계기준

- 일반회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3조 7,118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1조 8,560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1,609억원이 각각 전출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 5,225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 2조 9,472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2,040억원, 농지관리기금으로 5,000억원, 축산발전기금으로 1,455억원이 각각 전출됨.
- 축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각각 431억원, 7억원, 202억원, 69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고,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000억원의 예수원금 및 1,085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함.

2.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부사업 주요 변동내역

가. 2026년 신규사업 내역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13개 사업, 3,555억 1,000만원 규모임.

□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소멸 위험도가 높은 군(郡)을 공모·선정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자대상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임.
- ②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은 AI 기술을 농업분야로 적용·확산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선도사업(농산업, 스마트팜) SPC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③ 노지스마트농업ICT 융복합확산 사업은 주요 작물(양파·콩·사과 등) 주산지 단위 대규모 스마트 전환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임.
- ④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조성 사업은 스마트팜 로봇, AI,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을 집적한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⑤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지원사업(농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식품 분야 제품·서비스 신속 상용화(개발 및 실증 사업화비용 등)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⑥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은 노동력 감소 난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로봇 전환(RX) 기술 기반의 농업 로봇·드론 활용 및 협업기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⑦ 첨단바이오기술기반수요연계형그린바이오소재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은 그린바이오 6대 거점 등과 함께 연계,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미래소재 개발 및 대량생산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 ⑧ 합성화학기반K-신작물보호제글로벌산업화(R&D) 사업은 합성화학 기반 K-신작물보호제 개발 및 글로벌 산업화를 위해 민간보유 후보 물질에 대해 등록자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 ⑨ 농생명자원기반국가필수의약품원료공급망대응기술개발(R&D) 사업은 국가필수의약품 중 농생명자원 유래 원료의약품(API), 의약품 배지의 원자재 국산화를 통한 자급률 향상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 ⑩ 반려동물난치성질환극복기술개발(R&D) 사업은 반려동물의 수명

증가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첨단바이오 기술 기반 주요 난치성 질환
정밀 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⑪ 농업농촌국민체감AX전환기술개발(R&D) 사업은 “모두의 AI”를 농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기능 유지를 위해
AI 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농촌 체감형 서비스 모델(10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⑫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값을 지원하여 근로자 밥값 부담 경감, 쌀 소비확대 및 외식경기
활성화 도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⑬ 지속가능한 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R&D) 사업은 축산분야
탄소감축,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축산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신규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6년 예산안	회계명	사 업 내 용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337	지특회계	•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소멸 위험도가 높은 군(郡)을 공모·선정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자 대상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
▪ 국가농업 AX 플랫폼	70,500	일반회계	• AI 기술을 농업분야로 적용·확산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선도사업(농산업, 스마트팜) SPC 설립
▪ 노지스마트농업ICT 융복합확산	10,300	농특회계	• 주요 작물(양파·콩·사과 등) 주산지 단위 대규모 스마트 전환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보급 지원
▪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조성	200	농특회계	• 스마트팜 로봇, AI,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을 집적한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지원사업(농업)	67,500	농특회계	•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식품 분야 제품·서비스 신속 상용화(개발 및 실증 사업화비용 등) 지원
▪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 산업화기술개발(R&D)	6,975	농특회계	• 노동력 감소 난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로봇 전환(RX) 기술 기반의 농업 로봇·드론 활용 및 협업기술 산업화
▪ 첨단바이오기술기반수요연계형 그린바이오소재산업화기술개발(R&D)	6,900	농특회계	• 그린바이오 6대 거점 등과 함께 연계,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미래소재 개발 및 대량생산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
▪ 합성화학기반K-신작물보호제 글로벌산업화(R&D)	1,500	농특회계	• 합성화학 기반 K-신작물보호제 개발 및 글로벌 산업화를 위해 민간보유 후보물질에 대해 글로벌 산업화를 위한 등록자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농생명자원기반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대응기술개발(R&D)	6,000	농특회계	• 국가필수의약품 중 농생명자원 유래 원료 의약품(API), 의약품 배지의 원자재 국산화를 통한 자급률 향상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
▪ 반려동물난치성질환극복 기술개발(R&D)	2,775	농특회계	• 반려동물의 수명 증가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첨단바이오 기술 기반 주요 난치성 질환 정밀 치료기술 개발
▪ 농업농촌국민체감 AX전환기술개발(R&D)	1,575	지특회계	• “모두의 AI”를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기능 유지를 위해 AI 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농촌 체감형 서비스 모델(10종) 개발
▪ 직장인 든든한 한끼	7,948	일반회계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값을 지원하여 근로자 밥값 부담 경감, 쌀 소비확대 및 외식경기 활성화 도모
▪ 지속가능한 저탄소축산 확산을위한기술개발(R&D)	3,000	농특회계	• 축산분야 탄소감축,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저탄소 축산업 기반 마련
합 계	355,510		

나. 2025년 종료사업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등 총 18개로, 2025년 해당 사업에 편성되었던 예산액은 총 2,663억 5,100만원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종료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5 예산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26,495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3,76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150,000
종자산업교육인프라구축	6,119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21,116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	5,000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3,600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 (그린바이오소재첨단분석시스템)	4,95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 (5G기반 식품안전생산기술개발)	4,904
식품산업인프라강화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연구)	300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10,150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농촌재생에너지통계구축)	50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농촌에너지전환로드맵마련지원)	300
축산물품질관리 (안동축공모돈도축시설지원)	2,000
맞춤형농지지원(융자) (대규모스마트팜창업단지)	18,000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250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200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9,155
합 계 (18개 사업)	266,351

3.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편성하였음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20조 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934억원(6.9%) 증가하였음.

예산안의 일반지출 규모는 10조 6,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638억) 증가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반지출 규모는 9조 3,8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1조 1,295억원)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 】

(단위: 억원)

구 분	'25예산(A)	'26정부안(B)	전년대비 (B-A)	
				%
▣ 예산+기금(총지출)	187,416	200,350	12,934	6.9
○ 예산	104,818	106,457	1,638	1.6
○ 기금	82,598	93,893	11,295	13.7

□ 부문별로는 혁신성장·체질강화(13.0%), 농가소득·경영안정(5.1%), 농촌 복지·지역개발(19.0%), 재해대책·기반정비(12.0%), 식품(8.4%) 분야는 증가한 반면, 양곡관리·유통혁신(△1.1%), 동물복지(△36.8%), 기타사업비(△1.6%)는 감소하였음.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문별 총지출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25예산 (A)	비중(%)	'26정부안 (B)	비중(%)	전년대비 (B-A)	증감 %
총지출		187,416	100.0	200,350	100.0	12,934	6.9
부 문 별	◇ 사업비	182,834	97.6	195,586	97.6	12,753	7.0
	▣ 농업·농촌	172,162	91.9	184,421	92.0	12,259	7.1
	• 혁신성장·체질강화	39,706	21.2	44,852	22.4	5,147	13.0
	• 농가소득·경영안정	53,722	28.7	56,443	28.2	2,721	5.1
	• 농촌복지·지역개발	13,597	7.3	16,176	8.1	2,578	19.0
	• 양곡관리·유통혁신	45,718	24.4	45,196	22.6	△522	△1.1
	• 재해대비·기반정비	19,419	10.4	21,754	10.9	2,335	12.0
	▣ 식품	9,383	5.0	10,172	5.1	789	8.4
	▣ 동물복지	781	0.4	493	0.2	△287	△36.8
	▣ 기타 사업비	508	0.3	499	0.2	△8	△1.6
◇ 기본적 경비		4,582	2.4	4,764	2.4	181	3.9

II. 예산안 총괄

1. 총수입 분석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총수입³⁾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6,030억원 증가한 14조 6,556억원이 편성됨.

【 농림축산식품부 총수입 】

(단위: 억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B-A)	
	예 산	결 산	본예산(당초) (A)	추경(수정)			증가율
총수입	135,056	120,800	130,524	130,524	146,555	16,030	12.3
예산	84,635	80,158	81,592	81,592	94,977	13,384	16.4
기금	50,421	40,642	48,932	48,932	51,578	2,646	5.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3%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농식품부 총수입 및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

(단위: 억,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2025년	2026년(안)
총수입	113,655	125,839	130,486	135,056	130,524	146,555
증가율	5.4	10.7	3.7	3.5	△3.4	12.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 총수입은 총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회계의 총계, 특별회계의 총계, 기금(금융성기금과 재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를 모두 더한 뒤, 회계 간 내부거래수입,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함. 여기서 내부거래수입이란, 어느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차입이나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됨. 보전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 입장에서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세입 재원으로서 총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전년 대비 1조 834억원(14.6%) 증가한 8조 4,988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총수입 증가를 견인한 것에 기인함.

【 농식품부 농특세 세입 및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

(단위: 억,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농특세 세입 예산	6,680,200	6,988,000	7,619,900	7,415,300	8,498,826
증가율	22.1	4.6	9.0	-2.7	14.6
총수입 대비 비중	53.1	53.6	56.4	56.8	58.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조세감면액, 증권거래액 및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고 있고 이러한 과세체계는 농어촌특별세 도입 이후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 2026년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 조세감면액 - 내국세감면 - 관세, 지방세 감면	20%	○ 조특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부과 (농어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 저축감면	10%	○ 세금우대종합저축만 과세
○ 개별소비세액	10% (골프장 입장 30%)	○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 사치성물품
○ 증권거래금액	0.15%	○ 상장주식만 과세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 취득세액	10%	○ 부동산 등의 취득자 (서민·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등 제외)
○ 레저세액	20%	
○ 종합부동산 세액	2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과거 수납실적을 보면, '20년부터 증권거래금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례적인 과다 수납(2020년 134%, 2021년 139.3%)이 이루어진 후 '22년에도 초과 수납(105%)이 이루어졌으나, 2023년에는 과소 수납(수납률 93.9%)이 발생하였음.

'24년에는 예산액 7조 6,199억원 중에서 7조 249억원만이 수납되면서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하였고, '25년의 경우 7조 4,15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⁴⁾에 따르면 약 8조 5,0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농어촌특별세 세입 예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본예산	추경(A)				
2020	4,552,010	4,671,111	4,671,111	6,259,604	6,259,604	134.0
2021	5,470,700	6,390,300	6,390,300	8,899,997	8,899,997	139.3
2022	6,680,200	6,680,200	6,680,200	7,013,196	7,013,196	105.0
2023	6,988,000	6,988,000	6,988,000	6,562,807	6,562,807	93.9

4) 기획재정부, '25년 국세수입 재추계', 25.9.25

연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본예산	추경(A)				
2024	7,619,900	7,619,900	7,619,900	7,024,873	7,024,873	92.2
2025	7,415,300	7,415,300	7,415,300			
2026(안)	8,498,826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한편, ‘2026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6년 농어촌특별세 수입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8조 4,98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정당국이 경기 회복세,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등으로 농어촌특별세의 주요 재원인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감면분 증가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즉, 농어촌특별세 재원 중 가장 큰 비중(’24년 기준 50%)을 차지하는 증권거래세 수입은 ’25년 추경 예산 대비 39.8% 증가한 5조 3,753억원이 편성되고, 법인세 세입 역시 전년 추경 대비 3.6% 증가한 86조 5,474억원이 편성되었음.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해당 세입의 증가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 할 것임.

특히 최근 4년간 농어촌특별세 세입 부족으로 농특회계에서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 운용의 불안 요인으

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어촌특별세 세입 확대는 이러한 이월 발생 가능성을 완화하고 재정 집행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세입재원 없는 세출 이월 현황 】

(단위: 억원, %)

연도	농특회계 계정	세입 결산 (A)	세출 결산 (B)	차년도 이월액 (C)	세계 잉여금 (A-B-C)	구조개선계정 전출금이월액 (결산상 잉여금기준) (D)	세입재원 없는 이월액 (A-B-C+D)
2021	구조개선사업	56,282	55,926	631	△276		△276
	농어촌특별세	113,954	88,781	135	25,038	0	0
2022	구조개선사업	52,714	52,358	4,574	△4,219		△319
	농어촌특별세	98,175	85,711	4,309	8,154	3,900	0
2023	구조개선사업	63,480	61,378	3,987	△1,884		△74
	농어촌특별세	80,377	77,211	1,999	1,167	1,810	0
2024	구조개선사업	61,695	55,963	10,698	△4,967		△4,249
	농어촌특별세	75,919	75,131	6,159	△5,370	719	△5,37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특별세 수입 증가에 따른 여유 재원을 바탕으로 '26년 농특회계 농어촌특별세계정에서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전년 대비 1조 3,080억원 증가한 3조 8,099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26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3,050,039	2,501,932	2,466,868	3,809,977	1,308,045	52.3
공익직불기금 전출	2,717,213	2,987,213	2,987,213	2,947,213	△40,000	△1.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는 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타 회계나 기금으로의 전출금 소요가 전년 대비 1조 506억원 증가한 2조 5,003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26년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332,762	1,277,316	1,304,713	1,522,538	217,825	16.7%
축산발전기금 전출	145,000	145,000	145,000	145,000	-	전년동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		-	-	204,030	204,030	순증
농지관리기금 전출		-	-	500,000	500,000	순증
수산발전기금 전출		-	-	128,792	128,792	순증
합계	477,762	1,422,316	1,449,713	2,500,360	1,050,647	73.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타 회계나 기금으로의 전출금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2,178억원 증액되었는데, 이 중 1,538억 5,800만원은 '26년부터 농특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이관된 사업 예산에

해당하며,⁵⁾ 이를 제외한 증액분은 지특회계 내 기존사업의 예산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임.

둘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은 2,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26년 농특회계로부터 농안기금으로 이관된 5개 사업의 예산 규모와 동일함⁶⁾.

셋째, 농지관리기금 전출금 5,000억원은 사업의 이관과 무관하게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청년농 맞춤형 농지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과거 농지관리기금에서 농특회계로의 전입 실적⁷⁾ 등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넷째, 수산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된 1,288억원은 '26년 농특회계로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된 6개 사업⁸⁾에 대한 예산임.

□ 이와 같이 당해 연도 사업 이관에 따른 전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농지관리기금으로의 전출은 과거 전입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5) 농림축산식품부는 지특회계 포괄보조 확대 기조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와 재정당국 등과 협의·조정을 거쳐 8개 사업을 이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관 사업은 청년 농촌보급자리조성, 임대형스마트팜,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촌경제활성화지원, 스마트팜실증단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등임.

6) 농업관측,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농식품소비기반조성, 국가인증 농식품지원농산물사업 등

7) 실제 청년농에 대한 농지 지원 확대를 위해 맞춤형 농지(융자) 예산이 '25년 9,625억원에서 '26년 1조 6,170억원으로 6,545억원 대폭 증액된 바 있고, '17년에서 24년까지 농지관리기금에서 농특회계로 2조 3,971억원을 전출한 바 있음.

8) 수산식품산업육성, 수급위기관리체계구축,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수산물이력제, 수산관측 등

그러나 지특회계 사례와 같이 타 회계·기금의 재정 소요 부족 보전을 목적으로 전출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식은 해당 회계·기금의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과 내부 구조 조정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후술하는 농업재해보험사업에서 농특회계 세입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보험료의 전전년도 미지급금(262억 6,900만원)의 절반만을 '26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출금 규모 확대를 위해 농특회계 고유사업의 예산안을 과소 편성한 사례임.

이와 같이 농특회계 재원을 고유사업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기보다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활용하는 것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 확대 편성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농특회계 재원이 목적 외 용도로 과도하게 전출되지 않도록 전출금 운용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총지출 분석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총지출⁹⁾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상회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 】

(단위: 억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당초) (A)	추경(수정)			증가율
총지출	183,392	177,462	187,416	192,485	200,350	12,934	6.9
예산	98,963	95,511	104,818	108,396	106,457	1,639	1.6
기금	84,429	81,951	82,598	84,089	93,893	11,295	13.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전년 대비 증가율은 6.9%로, 예년 증가율(2.2%)과 비교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 6년간의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농식품부 총지출 및 전년 대비 증가율 】

(단위: 억,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2025년	2026년(안)
총지출	162,856	168,767	173,574	183,392	187,416	200,350
증가율	3.2	3.6	2.8	5.7	2.2	6.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함(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그런데 이러한 예년 대비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26년 정부 총지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75%로, 전년(2.7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정부 총지출 중 농림축산식품부 비중 추이 】

(단위 : %)

구분	2022년	2023년	2024	2025년	2026년(안)
비중	2.78	2.72	2.79	2.78	2.7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는 정부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기조 아래 총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8.1%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증가율(6.6%)은 이를 하회하였기 때문임.

【 정부 총지출 증가율 추이 】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2025년	2026년(안)
총지출	558.0조원	607.7조원	638.7조원	656.6조원	673.3조원	728.0조원
증가율	8.9	8.9	5.1	2.8	2.5	8.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참고로, 정부 총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로는 보건복지부(18.9%), 교육부(14.6%), 행정안전부(10.5%), 국토교통부(8.6%) 등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전체 부·처·청 등 62개 기관 중 10번째에 해당함.

또한, 총지출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부처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5.2%), 산업통상자원부(21.4%), 기획재정부(16.9%), 중소벤처기업부(10.5%) 등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증가율은 같은 그룹 내에서 8번째임.

【 정부 총지출 중 부처별 전년 대비 증가율 및 비중 】

(단위: 십억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률 (B-A)/A	비중
총지출		673,285	728,006	8.1	100
1	보건복지부	125,491	137,648	9.7	18.9
2	교육부	104,868	106,266	1.3	14.6
3	행정안전부	72,084	76,443	6.0	10.5
4	국토교통부	58,176	62,490	7.4	8.6
5	기획재정부	44,474	52,005	16.9	7.1
6	국방부	45,061	47,450	5.3	6.5
7	고용노동부	35,345	37,616	6.4	5.2
8	인사혁신처	28,489	30,303	6.4	4.2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942	23,709	25.2	3.3
10	농림축산식품부	18,742	20,035	6.9	2.8
11	중소벤처기업부	15,249	16,845	10.5	2.3
12	환경부	13,956	15,037	7.7	2.1
13	경찰청	13,528	14,244	5.3	2.0
14	산업통상자원부	11,434	13,878	21.4	1.9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한편, '26년도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규모 및 증가율을 살펴보면, R&D(19.3%),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7%), 일반·지방행정(9.4%)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12대 분야 중 세 번째로 낮은 증가율(7.7%)을 나타내고 있음.

【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본예산 대비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지출	673.3	728.0	54.7	8.1
1. 보건·복지·고용	248.7	269.1	20.4	8.2
2. 교육	98.5	99.8	1.4	1.4
3. 문화·체육·관광	8.8	9.6	0.8	8.8
4. 환경	13.0	14.0	1.0	7.7
5. R&D	29.6	35.3	5.7	19.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32.3	4.1	14.7
7. SOC	25.4	27.5	2.0	7.9
8. 농림·수산·식품	25.9	27.9	2.0	7.7
9. 국방	61.2	66.3	5.0	8.2
10. 외교·통일	7.7	7.0	△0.7	△9.1
11. 공공질서·안전	25.0	27.2	2.2	8.8
12. 일반·지방행정	110.7	121.1	10.4	9.4

※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2025~2029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 총지출의 평균 증가율은 5.5%,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4.2%로 전망되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재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25~2029년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

(단위: 조원, %)

구분	'25	'26	'27	'28	'29	'25~'29 연평균
총지출	673.3 (2.5)	728.0 (8.1)	764.4 (5.0)	802.6 (5.0)	834.7 (4.0)	5.5
1. 보건·복지·고용	248.7 (4.7)	269.1 (8.2)	285.5 (6.1)	300.6 (5.3)	313.5 (4.3)	6.0
2. 교육	98.5 (3.5)	99.8 (1.4)	106.0 (6.2)	110.5 (4.3)	115.1 (4.1)	4.0
3. 문화·체육·관광	8.8 (0.6)	9.6 (8.8)	10.0 (4.9)	10.8 (3.3)	10.8 (3.0)	5.2
4. 환경	13.0 (3.8)	14.0 (7.7)	14.5 (3.4)	14.9 (3.1)	15.3 (2.7)	4.2
5. R&D	29.6 (11.5)	35.3 (19.3)	37.3 (5.8)	39.4 (5.5)	41.4 (5.1)	8.8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0.7)	32.3 (14.7)	34.0 (5.2)	35.6 (4.6)	36.8 (3.4)	6.9
7. SOC	25.4 (△3.8)	27.5 (7.9)	28.6 (4.1)	29.7 (3.8)	30.1 (1.6)	4.3
8. 농림·수산·식품	25.9 (1.8)	27.9 (7.7)	28.9 (3.7)	29.9 (3.0)	30.5 (2.1)	4.2
9. 국방	61.2 (3.1)	66.3 (8.2)	69.7 (5.1)	73.2 (5.1)	76.2 (4.1)	5.6
10. 외교·통일	7.7 (2.3)	7.9 (2.3)	7.3 (7.3)	7.5 (3.5)	7.7 (3.5)	0.1
11. 공공질서·안전	25.0 (2.3)	27.2 (8.8)	28.0 (3.0)	28.8 (2.9)	29.5 (2.4)	4.2
12. 일반·지방행정	110.7 (0.1)	121.1 (9.4)	126.7 (4.6)	135.1 (6.6)	141.9 (5.1)	6.4

※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6년에 확보한 재원을 새 정부의 농업·농촌 분야 4개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농정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점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①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과 ‘콩비축지원’ 예산을 각각 확대(2,440

억원→4,196억원, 1,532억원→3,150억원)하고, ‘국가 농업 AX 플랫폼 조성’과 ‘AI 기술 응용 농산업 제품 상용화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705억원, 675억원)하였음.

또한, ②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실현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과 재해대책비 예산을 각각 대폭 확대(2,078억원→2,752억원, 1,600억원→2,500억원)하였고,

③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구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1,703억원)하였으며, ④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27→86억원)하였음.

【 국정과제별 예산 편성 현황 】

국정 과제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주요사업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6조 8240억원	7조 2447억원	
식량안보 및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5조 1,849억원	5조 3,492억원	▶ 전략작물직불(2,440억원→4,196) ▶ 콩 비축지원(1,532억원→3,150) ▶ 어린이, 근로자 등 먹거리 제공 확대 * 농식품바우처(381억원→740), 직장인 든든한 한 끼(79억원, 신규), 어린이 과일간식(170억원) 등 ▶ 스마트 APC 구축(223억원→387)
AI 기반의 농업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뒷받침	1조 6,391억원	1조 8,955억원	▶ 국가 농업 AX 플랫폼(705억원, 신규) ▶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675억원, 신규) ▶ 농식품 R&D(2,267억원→2,612) ▶ 농식품 수출 바우처(360억원→720)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8조 4,189억원	9조 3,712억원	▶ 수입안정보험(2,078억원→2,752) ▶ 재해대책비(1,600억원→2,500)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1조원→1.6조원)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1조 4,391억원	1조 6,990억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국정 과제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주요사업
선도하는 농산어촌			▶ 농촌공간정비(1,045억원→1,519) ▶ 농촌 빈집철거(105억원, 이관)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65억원→96)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781억원	493억원 * 개식용종식사업 '26년 소요 감소	▶ 동물복지 강화(118억원→120)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27억원→8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분야로 재원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그 결과 총 164개 사업에서 25년 예산 대비 7.1%에 해당하는 1조 3,219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남.

【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 】

(단위: 억원)

유형	'25 예산 (A)	'26년 정부안(B)	'26년 지출구조조정	
			(B-A)	비중(%)
합계(164개)	86,616	73,397	△13,219	100.0
<사업비성(126개)>	83,711	71,189	△12,523	94.7
제도개선(9개)	6,993	5,808	△1,184	9.0
유사중복(4)	1,319	1,111	△208	1.6
집행부진(24)	2,034	1,498	△536	4.1
사업 우선순위 조정(72)	39,103	30,982	△8,122	61.4
외부지적 등 기타(12)	1,105	1,021	△84	0.6
의무지출 효율화(3)	33,059	30,694	△2,365	17.9

(단위: 억 원)

유형	'25 예산 (A)	'26년		
		정부안(B)	지출구조조정	
			(B-A)	비중(%)
민간-지자체 재원 분담구조 개편(2)	99	74	△24	0.2
<경상비성(38개)>	2,905	2,209	△696	5.3
기관운영 여건 변화(23)	2,704	2,031	△673	5.1
연례적 행사 및 홍보성 경비 절감(5)	53	42	△12	0.1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10)	148	136	△11	0.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감액분 1조 3,219억원은 정부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인 27억원 중 국토교통부(6.7조원), 교육부(2.5조원), 중소벤처기업부(1.9조원) 다음으로 큰 폭으로서 지출구조조정 규모의 '25년 예산 대비 비율(△7.1%)도 예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부처 중 국토교통부(△11.6%), 산업통상자원부(△9.5%), 환경부(△7.7%) 다음 순으로 나타났음.¹⁰⁾

【 지출구조조정 상위 부처 】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구조조정액	27조원	국토교통부 6.7조원	교육부 2.5조원	중소벤처기업부 1.9조원	농림축산식품부 1.3조원
25년 예산 대비 비중	100%	국토교통부 △11.6%	산업통상자원부 △9.5%	환경부 △7.7%	농림축산식품부 △7.1%

※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브리핑 자료 재구성

10) 나라살림 462호, 나라살림브리핑, 나라살림연구소, 25. 9. 2

□ 이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동시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기조 하에 편성된 것으로 보임.

다만,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성,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존사업의 축소가 현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Ⅲ. 회계 · 기금별 검토

1. 일반회계

가. 개 요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23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9억 8,500백만원)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B-A)	%
총 계	213.3	223.2	9.9	4.6
○ 관유물대여료	7.3	7.3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5	3.8	1.3	52.0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0.8	21.0	0.2	1.0
○ 변상금및위약금	8.8	8.8	-	-
○ 가산금	0.3	0.3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39.2	139.2	-	-
○ 면허료및수수료	20.0	20.0	-	-
○ 입학금및수업료	4.7	4.7	-	-
○ 실습수입	0.1	0.1	-	-
○ 잡수입	9.1	9.1	-	-
○ 고정자산매각대	0.5	-	△0.5	순감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8.8	8.8	순증
○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0.1	0.1	-	-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조 4,8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7,723억원) 감소하였음.

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계정) 전출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은 1,141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2%(1,297억 750만원) 감소한 반면, 어린이 과일간식 170억 3,000백만원, 국가 농업 AX 플랫폼 705억이 순증되었음.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72,594	64,871	△7,723	△10.6
○ 일반지출	9,253	7,585	△1,668	△18.0
○ 회계간거래	61,731	55,677	△6,054	△9.8
○ 기금전출금	1,609	1,609	-	-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국가농업 AX플랫폼 :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농식품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①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② 기술 성숙도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 ③ 국내 농업 구조와의 정합성 고려, ④ 신뢰 기반의 데이터 공유 생태계 구축 전략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등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가농업AX플랫폼은 AI 기술을 농업 분야로 적용·확산하기 위해 민·관 공동 출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0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¹¹⁾.

사업 기간은 2026년~2030년이고, 총사업비는 2,900억원¹²⁾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예산을 출자한 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총괄 SPC로 재출자하고,

총괄 SPC에서 농업 AI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농작업센터, 스마트팜(온실, 축사)등 첨단시설을 조성하는 개별(선도사업) SPC에 기획·출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2026년도 국가농업 AX플랫폼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국가농업AX플랫폼	-	-	-	70,500	70,500	순증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1)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국가농업AX플랫폼(2220-300)

12) 정부출자분 1,400억원, 민간출자분 1,500억원

나) 검토 의견

□ 개방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은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¹³⁾

【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시스템의 전환 】¹⁴⁾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후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산업인프라 구축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13)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확산방안」, 2018. 4.

14)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농업 동향과 정책(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02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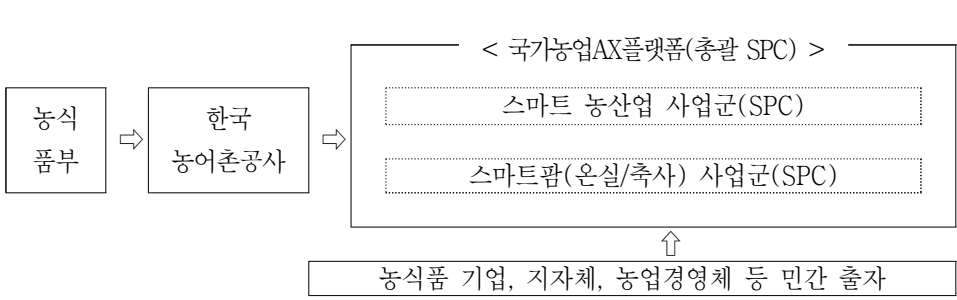
【 스마트농업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26년도 주요 사업 개요 】

사업명	'26년 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국가농업AX플랫폼	70,500	AI 기술을 농업분야로 적용·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농업 AX 거점 마련	농업인, 농업 (농기자재 SW) 기업 등	검토중
임대형스마트팜	31,500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 창업 및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임대 온실을 조성하여 적정 임대료로 재배·경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년농업인	국비 50~100% 지방비 30~50%
스마트팜 실증단지	6,631	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 기계 등의 실증·검증과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시·체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창출	지자체 청년농업인, 실 증기업 등	국비 33.3% 지방비 33.3% 자부담 33.3%
ICT융복합 및 농림 행정통계체계 구축	9,823	스마트팜 데이터, 팜맵, 농식품 통계 등 농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촉진, 대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 구축	농업인 농업법인 스 마트팜기업 일반 국민 등	국비 100%
데이터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지원	8,012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를 농가에 적용하고 고도화 지원	농업인 스마트팜 기업 등	국비 50~100% 자부담 0~50%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3,277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농산업체의 제품 설계 및 제품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재직자 전문 교육을 통한 ICT 기술 접목 확대 지원	스마트팜 ICT 농산업체	국비 70~100% 자부담 0~30%
노지스마트농업 ICT융복합확산	10,300	노지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기술 도입과 원활한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솔루션 도입, 기술 활용 교육 등 지원	농업경영체, 스마트팜 기업 지자체 등	국비 50~60% 지방비 또는 자부담 20~4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러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중 농식품부가 '26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국가농업 AX 플랫폼'은 민·관 협력으로 SPC를 설립하여 ① 에너지 절감 등 첨단기술 성과가 집약된 농업 AI 선도모델 조성·확산, ② 농업·농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수출산업화, ③ R&D 성과¹⁵⁾ 적용·고도화 기반 마련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사업임.

【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 계획(안) 】

목 적	① 정부가 마중물 역할 + ②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 AI 전환의 구심점이 될 스마트팜(온실·축사)·농산업 기업 육성
정책목표	①에너지 절감 등 첨단기술 성과가 집약된 농업 AI 선도모델 조성·확산 ②농업·농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수출산업화 ③R&D 성과* 적용·고도화 기반 마련 등
사업규모	총 2,900억원 (정부출자 1,400억원, 민간출자 1,500억원)
사업기간(안)	투자기간 5년('26~'30년), 존속기간 최대 30년,
추진방식	공모로 선정된 민간참여자(1개 컨소시엄) 총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각 사업 SPC에 출자·설립·운영
추진체계(안)	
추진방향(안)	AI기술 및 로봇 농작업 서비스 제공, ,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온실 조성, 스마트 축산 기술이 집약된 클러스터 조성
참여대상	농업경영체, 국내·외 농업 기업, 지역 주민, 지자체* 등으로 해외 유통채널 등 종합 컨소시엄
의사결정 구조	민간을 중심으로 SPC를 경영하되, ❶출자비중 및 ❷시행합의서('민간 투자 협약(안) 체결') 등을 통해 공공성 반영 - 민간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50%이하 출자, 민·관 실제 투자비중(금액)에 따라 구체적인 지분 비율 결정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5) 스마트팜다부처혁신기술개발 R&D('21-'27) 등

□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지난해에만 8만 5천 명이 감소한 200만 4,000여명으로, 200만명 선이 붕괴 직전에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2년 49.8% → '23년 52.6% → '24년 55.8%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농업의 인력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또한, '24년 7~9월에 발생한 폭염과 고온현상으로 농작물 재배면적 3,477ha의 피해와 벼멸구 생육기에 지속된 고온현상으로 총 17,732ha의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4년 7월에 발생한 호우로 9,447ha의 농작물 피해 및 102.2만 마리의 가축 피해 등이 발생¹⁶⁾하는 등 기후위기가 농업 생산현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 인구 소멸, 심각한 고령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다층적인 도전에 직면한 현 농업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농업 AX(AI Transformation) 플랫폼' 도입과 같은 AI 기반의 대전환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동 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자동화·지능화 기술로 농촌의 노동력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당면한 총체적 위기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16) 정부 합동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췌

현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농업 분야의 AI 전환을 위해 동 사업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재정사업의 체계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활용한 출자사업의 형태로 설정되어 있고, SPC를 통한 출자 및 사업구조도 복잡화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재정적 성과에 대한 명확한 재정환류체계도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결산과정을 통한 재정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일정 수준 확보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총괄SPC에 대한 일괄적인 출자 시에는 예산안 심사의 대상이 되는 등 재정통제가 가능하나, 일단 총괄SPC에 투자가 된 후 개별 출자에 대해서는 예산과정을 통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현황 및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등 보완책이 강구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¹⁷⁾.

둘째, 사업 성공의 전제 조건인 핵심기술의 성숙도가 사업 추진 계획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7) 농식품부는 현행 SPC 출자구조(총괄 SPC-사업SPC)와 관련하여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중이며,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건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견 제출

농식품부가 구상하는 AI·로봇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완전 자율주행(4~5단계) 농기계 활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국내 기술 수준은 아직 운전자 보조 및 부분 자동화 단계인 2단계에서 조건부 자동화 단계인 3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¹⁸⁾임.

【 농업기계 농작업자동화 수준(국가표준 KSB7951) 】

□ 국내 농업기계 농작업자동화 수준은 국가표준(농업기계 농작업자동화 수준(KSB7951))에 따라 6개 단계(0~5레벨)로 구분

Level	명칭	정의	직진, 선회	경로 및 작업	작업 및 환경 인식	오류 대응	농지 설정
0	수동	자동화가 없는 단계로서 운전자가 모든 제어의 주체가 됨					
1	운전자 보조	운전자가 설정한 직진 경로를 농기계가 자동으로 추종하며 농작업을 수행하는 수준. 단, 새머리 선회는 작업자가 직접 제어					
2	부분 자율주행 농작업	경작지 일부구간을 시스템이 작업 경로생성 및 추종, 그리고 작업기 제어 명령을 수행하고, 새머리 선회를 자동으로 수행. 단, 농작업 상태와 주변 환경 및 대응은 운전자가 수행					
3	조건부 자율주행 농작업	작업자가 사전 설정한 농지 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농기계가 회경을 포함한 전체 작업경로와 작업기 작동 명령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작업을 수행함. 농작업 상태와 주변 환경 인식은 시스템이 수행하지만 차량 및 농업용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또는 농작업 상태 불량 시 운전자가 대응					
4	고도 자율주행 농작업	작업자가 사전 설정한 농지 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농기계가 농경지 진출입 경로를 포함한 전영역 경지의 작업 경로와 작업기 작동 명령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작업을 수행함. 농작업 상태와 주변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함께, 차량 및 ASFA 결함 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함					
5	완전 자율주행	농지영역 설정, 경로 및 업계획을 농기계가 자동으로 수립하고 농지 내 모든 작업을 시스템이 수행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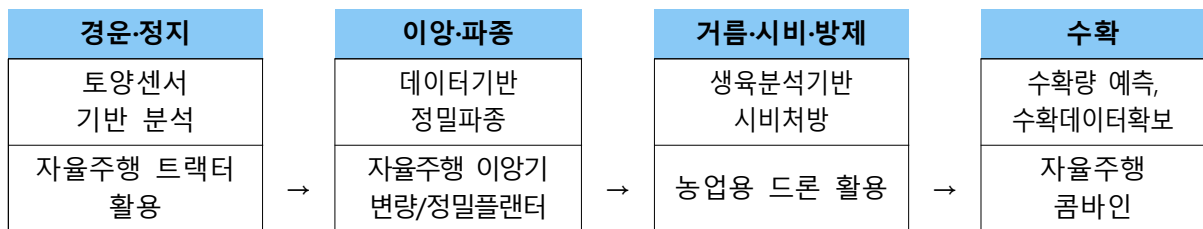
18) 농촌진흥청 의견 제출

【 AI·로봇 농작업 서비스 제공 사업 계획(안) 】

□ (개요) 드론·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활용하여 농작업 대행운영

- 농업·농촌이 직면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전문 인력이 첨단 장비**(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등)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 지원**

< 예시 : 농작업 효율화를 위한 AI-데이터 서비스 제공 >



□ (조성규모(안)) 10개소 이상

□ (운영방안) 스마트농산업 SPC가 대행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농작업 대행 및 데이터솔루션 서비스 등 종합플랫폼 역할 수행

- 센터는 ①첨단 농기계 구비, ②농작업 대행 인력 고용·위탁 및 ③농작업 대행단(직접고용) 교육 등을 통해 **대행 서비스 제공**
 - 각 지역에 조성된 센터는 첨단 농기계의 **소랍 역할을 수행, 시범 사용 및 장비 사용 교육 등 종합 역할 수행**
-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드론, **자율주행트랙터** 등 **구독서비스** 및 AI 작황예측(파종·시비처방 등) 스케줄링 등 **결합 서비스 제공**

※ 자료: 농식품부 제출

현재의 자율주행 2단계 기술은 운전자가 농기계에 탑승하여 작업을 감독해야 하므로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는 ‘보조’ 기술의 성격이 강하고, 3단계 기술의 경우에도 기본 주행(직진, 선회) 및 작업의 자동화는 가능하나, 환경(장애물) 인식·판단 등은 운전자 개입 필요함.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대의 농기계를 원격으로 감독하거나 특정 구역 내에서 완전히 스스로 작업하는 ‘노동력 대체’ 수준의 기술, 즉 4~5단계의 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동 사업 계획에 포함된 R&D 로드맵상으로도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5단계 기술 확보 시점은 2034년 이후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 초기에는 ‘첨단 장비(자율주행 트랙터 등)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 지원’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기술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농식품부의 AX기반 지능형 농작업 산업화 R&D('26-'28) 연계(안) 】

구분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 로드맵					최종목표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경운 정지	트랙터간 통신 시스템 및 상호 연계 기반 경로 제어 기술, 협동작업을 위한 작업분할 및 최적화 기술개발 등	데이터 프로토콜 개발					다중 트랙터 협업 대수 : 3대
			실시간 인식 기술 개발				
				트랙터 협업 스케줄링 기술			
					대규모 재배단지 실증		
	On-Device 방식 AI 영상처리 SW 및 개별 트랙터 자율 작업 알고리즘 개발 등			트랙터 자율작업 시스템 제어 기술 개발			트랙터 간 협동 자율주행 레벨 ('25) Lv. 3 → ('34) Lv.5
			AI 영상처리 SW 개발				
		AI 영상처리 카메라 모듈 개발					
이송	품질예측 AI 모델 및 3D 작물 품질 지도 생성 기술, 연속작업 대응 로봇간 협업제어 기술 개발 등	품질 및 수성 예측 AI 모델 개발					재배관리 지능화 ('25)Lv.3 → ('34)Lv.4
			로봇간 자율협업을 위한 실시간 스케줄링 기술 개발				
					농작업 현장 실증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따라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 ‘기술적 공백기’를 최종 기술(4~5단계) 완성을 위한 ‘전략적 준비 단계’로 활용하는 로드맵 수정이 필요해 보임.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현재 확보된 2~3단계 기술을 기반으로 ‘노동력 대체’가 아닌 ‘노동력 보조’ 중심의 서비스 모델을 우선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현장 실증 데이터(작업 환경, 돌발 변수, 농가 피드백 등)를 관련 R&D 부문에 즉각 환류시켜, 실제 환경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기술 성숙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과제로 판단됨.

즉, 단기적으로는 현 기술로 가능한 ‘보조’ 서비스를 통해 농가의 노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사업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4~5단계인 ‘노동 대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단계적·병행적 전략 추진이 필요해 보임.

이러한 전략적 운영은 자율화 기술 로드맵과 사업 현실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당초 사업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셋째, 동 사업에 따른 대규모 자본 집약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농 중심의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024년에 발간한 ‘노지 원예농업의 스마트화 실태와 과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평균 경작면적은 7,529평(약 2.5ha), 중앙값은 3,850평(약 1.3ha)으로 대다수 농가가 소규모 경작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응답 농가의 72.1%가 서로 떨어진 여러 필지에서 농사를 짓는 ‘파편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규모 자율주행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소수의 초거대 ‘SPC 농장’을 조성하는 것은 자본과 기술에서 소외된 대다수 중소농과의 격차를 심화시켜 ‘이중 농업’ 구조를 고착화하는 등 농업 전체의 동반 성장이 아닌, 일부 대자본에 의한 기존 농업생태계의 대체라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식품부는 동 사업과는 별개로 일반농가가 첨단 기술 도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나아가 이들이 AX 플랫폼이 창출하는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 모델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농업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 혁신의 긍정적 효과가 농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넷째, ‘국가농업 AX(AI Transformation) 플랫폼’이라는 사업명과 달리,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AI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보임.

농식품부는 ’19년부터 주요 스마트팜 지원사업¹⁹⁾에서 나오는 데이터²⁰⁾를 실시간 수집·제공 중이나, 현재(’25. 10.) 기준 데이터 수집

19) 스마트팜 혁신밸리,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확산, 노지스마트 시범단지, 지역 우수농가 등

을 완료한 농가 수는 2,221호로, 전체 농가('24년 조사 기준 200만 4,000명)의 0.1%에 불과한 실정임.

전체 농가의 0.1%에 불과한, 그것도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참여한 특정 농가의 데이터는 전체 농업 현실을 대변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편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AI 모델은 범용성이 떨어져 대다수의 일반 농가 현장에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딥러닝 기반의 AX는 데이터의 '양'이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와 같이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환경 변수(지역, 토양, 기후) 및 돌발 변수(병해충, 재해)에 대응하는 정교한 예측·제어 모델 개발이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이는 결국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플랫폼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현장의 외면을 받아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 달성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함.

한편, 데이터 양의 부족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반 농가의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불신 및 보상체계 미비로 인한 '데이터 공유의 부재' 문제도 상존하고 있음.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가를 상대로 실시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ICT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응답한 농가 비율은 노

20) 환경(온·습도, CO2 등), 제어(구동기 작동여부 등), 생육(엽폭, 착과수 등) 등

지채소농가 10.5%, 노지과수농가 20%, 시설원예농가 33.5%, 축산
 농가 47.3%로 특히, 노지농가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ICT 데이터 수집 농가 현황 】

(단위: %)

구 분	실 시	미 실시	('실시'인 경우) 수집 주체(복수응답)	
			자가	외부기관
시설원예	33.5	66.5	58.2	41.8
노지과수	20.0	80.0	26.7	73.3
노지채소	10.5	89.5	77.8	22.2
축산	47.3	52.7	70.0	3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노지 및 시설 스마트농업 농
 가에 대한 데이터거래소 활용 의향 설문조사 결과,

활용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각각 97.2%와 93.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공유 및 유통에 대한 현장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ICT 데이터 거래소 활용의향 농가 설문조사 결과 】

구 분	노지 스마트농업		시설 스마트농업	
	응답자(명)	비중(%)	응답자(명)	비중(%)
활용할 의향이 전혀 없다	32	13.0	174	24.2
활용할 의향이 없다	207	84.2	500	69.6
보통	1	0.4	9	1.3
활용할 의향이 있다	4	1.6	27	3.8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다	2	0.8	8	1.1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노지 원예농업의 스마트화 실태와 과제'(2024) 발췌

이처럼 낮은 데이터 수집률과 데이터 공유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데이터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명확한 보상체계가 없으며,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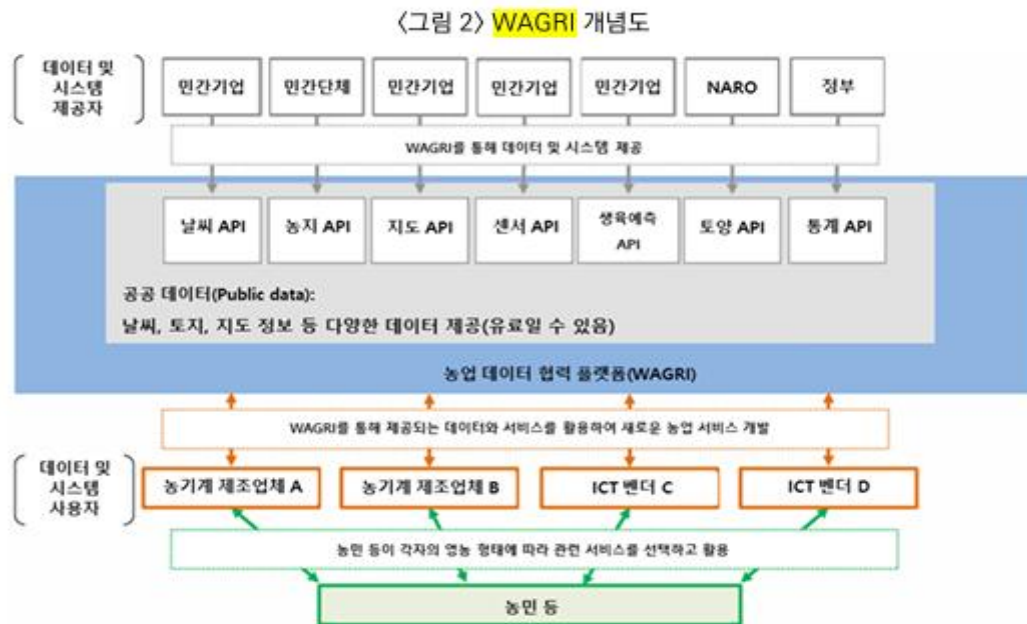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한 농식품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농가 현장에서의 낮은 데이터 수집률 및 데이터 공유 기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은 부재하고,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산 및 축적할 수 있는 대규모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클러스터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우회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처럼 소수의 통제된 농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만으로 다양한 환경과 품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AI 모델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일본의 경우 농가, 기업, 연구기관에 각각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농림수산성) 주도로 데이터 플랫폼 ‘WAGRI’를 개발한 바 있음.

【 WAGRI 개념도 】



※ 자료: 세계농업 2025 가을호, 일본 스마트농업의 전개와 시사점(구자춘, 최진용) 내용 발췌

이처럼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기에 앞서 데이터가 연결 및 공유될 수 있는 생태계를 먼저 조성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신뢰 기반의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농식품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①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 ② 기술 성숙도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 ③ 국내 농업 구조와의 정합성 고려, ④ 신뢰 기반의 데이터 공유 생태계 구축 전략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등 보다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²¹⁾.

21) 농식품부는 향후 ‘농업 데이터·솔루션 공유허브’를 구축하여 다양한 AI 솔루션과 농가 데이터가 단일 플랫폼에서 공유·거래되는 민간중심 생태계를 조성하고, SPC가 구축한 데이터셋도 공공·정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의견 제출

2) 국제농업협력(ODA)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대비용 절감방안 마련 필요

- WFP 식량원조 사업이 식량 위기국에 쌀을 현물로 원조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곡대보다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물류비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업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농업 관련 시설구축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문가 파견 및 초청 연수 등을 통한 농업기술 전수, 식량 지원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농업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보다 1,297억 7,500만원(53.2%) 감액된 1,141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²²⁾.

【2026년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국제농업협력(ODA)	160,240	243,926	139,385	114,151	△129,775	△53.2%

※ 자료: 농식품부 제출

22)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국제농업협력(ODA)(5031-300)

나) 검토의견

□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내역사업 중 “WFP²³⁾ 식량원조 사업”은 식량 위기국²⁴⁾을 대상으로 쌀을 원조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한 2018년부터 매년 쌀 5만톤을 원조하였고, '24년에는 원조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여 쌀 10만톤을, '25년에는 15만톤의 쌀을 원조하였으며, '26년 정부제출 예산안에는 예년 수준으로 5만톤의 쌀을 원조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WFP 식량원조 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예 산(억원)		460	460	460	503	519	519	1,120	1,901
물 량(톤)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0,000	150,000
국가별 지원물량 (톤)	예 멘	17,000	19,000	19,000	18,000	18,686	18,000	18,000	23,424
	에티오피아	15,000	16,000	16,000	13,680	13,000	13,000	13,582	12,000
	케냐	13,000	10,000	10,000	9,500	11,000	11,000	21,000	23,268
	우간다	5,000	5,000	5,000	4,500	6,000	2,492	3,000	2,544
	시리아	-	-	-	3,000	-	3,006	-	2,400
	라오스	-	-	-	1,320	1,314	-	-	-
	아프가니스탄	-	-	-	-	-	2,502	4,896	4,032
	기니비사우	-	-	-	-	-	-	2,400	1,800
	모리타니	-	-	-	-	-	-	6,720	13,020
	시에라리온	-	-	-	-	-	-	2,400	1,800
	모잠비크	-	-	-	-	-	-	3,000	2,328
	마다가스카르	-	-	-	-	-	-	10,002	9,984
	방글라데시	-	-	-	-	-	-	15,000	20,064
	필리핀	-	-	-	-	-	-	-	2,016
	타지키스탄	-	-	-	-	-	-	-	960
	나미비아	-	-	-	-	-	-	-	4,896
	레바논	-	-	-	-	-	-	-	864
	쿠바	-	-	-	-	-	-	-	24,6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23) UN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 전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해 설립된 UN 산하의 식량 원조기구로 202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24)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유럽연합, 미국 국제개발처 등이 협력하여 구성한 식량 안보정보네트워크(FSIN)는 세계 식량 상황을 관측하여 매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의 내용에 식량위기국이 포함되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사업예산 전액을 WFP에 공여하고 있으며, WFP가 해당 예산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정부관리양곡을 구매한 후 이를 식량 위기국으로 운송한 후 수혜자에게 직접 분배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WFP가 지급한 원곡대는 다시 정부 수입액(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판매수입)으로 수납되고, 그 밖의 비용은 WFP가 해상·내륙 운송비, 창고 보관비, 분배비용, 사업수행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이 식량 위기국에 쌀을 현물로 원조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전체예산 중 50%대에 그쳤던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4년의 경우 약 7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

【WFP 식량원조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지원국가		4개국	4개국	4개국	6개국	5개국	6개국	11개국
지원물량		5만톤	5만톤	5만톤	5만톤	5만톤	5만톤	10만톤
예산 집행 내역	원곡대	20,731 (45.1%)	22,401 (48.7%)	19,921 (43.3%)	18,022 (35.8%)	11,439 (22.1%)	19,974 (38.5%)	35,565 (31.8%)
	물류비 및 기타 사업수행비	25,269 (54.9%)	23,599 (51.3%)	26,079 (56.7%)	32,301 (64.2%)	40,418 (77.9%)	31,883 (61.5%)	76,395 (68.2%)
	해상물류 ²⁵⁾	5,796 (12.6%)	4,583 (10.0%)	5,285 (11.5%)	6,480 (12.9%)	16,982 (32.7%)	9,292 (17.9%)	17,774 (15.9%)
	내륙운송 및 창고 ²⁶⁾	10,996 (23.9%)	11,758 (25.6%)	13,578 (29.5%)	16,819 (33.4%)	15,404 (29.7%)	15,688 (30.3%)	37,652 (33.6%)
	분배 및 모니터링 등 ²⁷⁾	8,477 (18.4%)	7,258 (15.8%)	7,216 (15.7%)	9,002 (17.9%)	8,032 (15.5%)	6,903 (13.3%)	20,969 (18.7%)
	계	46,000	46,000	46,000	50,323	51,857	51,857	111,96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처럼 동 사업 예산의 약 70%가 부대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것은 실제 식량 위기국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쌀의 가치(약 30%)보다 이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 2배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사업운영 방식은 ‘식량위기국에 대한 우리나라 쌀 원조’라는 사업의 목적 및 명분과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쌀의 운송비 및 WFP 사무소 운영비 지원’ 등 ‘부대비용’의 집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²⁸⁾.

또한, 동 사업의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편성액 및 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19년을 제외하고 매년 당초 편성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특히, '24년의 경우에는 약 100억원을 초과지출하였음.

한정된 사업 예산 내에서 매년 일정량의 쌀 물량을 고정하여 원조하는 사업 집행구조에 따라, 이와 같이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소요가 증가할수록 ‘원곡대’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음.

25)(해상운송비)

- 한국 선적항부터 수원국 하역항까지의 해상운송비, 항구, 통관 등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UN의 물류를 담당하는 WFP가 선박을 수배하여 해상운송 진행
- WFP는 물류 비용 최소화 및 분쟁으로 인한 선사 기피 지역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대형 선사들과 글로벌 MOU를 체결하고 있음
- 국가들과의 협정을 통해(예: EU 협정) 위험지역(예: 소말리아 해상)에서 군병력 호위 받음

26)(내륙운송비 및 창고 보관비)

- 도착항에서 창고까지의 운송, 분배를 위한 분배지로의 운송, 품질관리비, 창고보관 비용
- 수원국이 내륙국인 경우(예: 우간다, 라오스) 도착항에서 수원국 국경까지의 내륙 운송비용도 포함됨

27)(모니터링 및 국가 사무소 운영비)

- 분배 및 분배 모니터링 등 사업수행비
- 식량원조 수원국 사무소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간접비용(WFP국가사무소 운영 지원: 직원관련, 자동차/사무실 비품/건물(사무실) 유지 등)(행정비)
- 본부, 지역본부 등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모든 국가의 WFP 공여액의 6.5%*로 동일 적용

*'17년 11월 WFP 집행이사회에서 7.0%에서 6.5%로 하향조정 의결, UN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

28) 농식품부는 홍해 사태 등으로 국제 해상 운임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대비용도 증가하였다는 입장임.

【물류비 등 부대비용 편성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18년	편성액	23,908	당초 편성액 대비 13억 6,1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25,269	
2019년	편성액	23,972	-
	집행액	23,599	
2020년	편성액	22,170	당초 편성액 대비 39억 9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26,079	
2021년	편성액	31,104	당초 편성액 대비 11억 9,7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32,301	
2022년	편성액	32,064	당초 편성액 대비 83억 5,4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40,418	
2023년	편성액	30,647	당초 편성액 대비 12억 3,6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31,883	
2024년	편성액	66,425	당초 편성액 대비 99억 7,0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76,395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국판매수입 중 원조용 쌀 판매수입액은 '20년부터 '23년까지 매년 당초 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되었음.

【원조용 쌀 세입예산 편성액 및 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18년	편성액	미편성	-
	수납액	21,585	
2019년	편성액	20,000	-
	수납액	23,599	
2020년	편성액	20,000	당초 편성액 대비 △7억 800만원 과소수납
	수납액	19,292	
2021년	편성액	20,000	당초 편성액 대비 △16억 2,000만원 과소수납
	수납액	18,380	
2022년	편성액	21,114	당초 편성액 대비 △87억원 과소수납
	수납액	12,414	
2023년	편성액	23,320	당초 편성액 대비 △40억 8,800만원 과소수납
	수납액	19,232	
2024년	편성액	36,720	당초 편성액 대비 13억 3,700만원 수납
	수납액	38,057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다만, '24년에는 13억 3,700만원 초과수납되었는데, 이는 WFP의 원곡대 지출 시점과 정부의 수납 시점 간 환율이 급등²⁹⁾한 우연한 외부 변수에 기인한 결과일 뿐, 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만약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WFP가 실제 집행한 '원곡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2024년 정부의 '세입예산 편성액'(36,720백만원) 대비 WFP의 실제 '원곡대 집행액'(35,565백만원)은 11억 5,500만 원이 부족함.

이는 2024년 물량이 10만 톤으로 두 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비 비용 비율이 68.2%까지 치솟아 원곡대에 배분될 재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사업 초기부터 세입예산(편성액) 목표 달성이 어려운 구조였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환율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이 없었다면 '24년 역시 '과소수납'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6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도한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고질적인 과소수납 문제를 해결하여 세입 예산의 정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9) 2024년 송금 시 환율 2024.2.07 1288.57

2024년 수납 시 환율 2024.6.25 1380.67(수납금액 16,926백만원), 2024.7.04 1377.47(수납금액 21,131백만원)

3) 국제기구분담금 및 국제기구분담금(ODA) : 양 사업 간 동일 환율기준 적용 필요 및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 검토 필요

- 국제기구분담금 사업과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은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에 대하여 다른 기준 환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동일 환율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협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업 ‘국제기구분담금’ 사업과는 그 성격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농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을 ‘국제기구분담금’ 내 내역사업이 아닌, 「국가재정법」 제21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기구분담금 및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은 농업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14개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임.

농식품부 국제기구분담금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적인 분담금을 납부하는 “국제기구분담금 사업(5031-530)”과 공적개발원조 관련 분담금을 납부하는 “국제농업기구분담금(ODA) 사업(5031-531)”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26년 정부제출 예산안은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이 2025년보다

2억 8,600만원(9.2%) 증액된 3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제
기구분담금(ODA) 사업은 2025년보다 19억 3,600백만원(6.8%)
증액된 30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³⁰⁾.

【2026년도 국제기구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ODA)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국제기구분담금	2,688	3,123	3,223	3,409	286	9.2
국제기구분담금(ODA)	23,244	28,391	28,287	30,327	1,936	6.8

※ 자료: 농식품부 제출

30)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국제기구분담금(5031-530), 국제기구분담금(ODA)(5031-531)

나) 검토의견

(1) 국제기구분담금 및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 동일 환율 기준 적용 필요

□ 국제기구분담금 사업과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은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편성된 점에서 유사하나,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이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식물품종 보호 및 종자자원 확보 등 농업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곡물 이사회(IGC),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등 관련 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인 반면,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은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재정적 기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의 관련 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동 사업들은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구별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담하여야할 금액에 예산안 편성 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6년 정부제출 예산안의 경우 유로화에 대하여 양 사업 간 다른 환율이 적용되어 그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의 경우 달러화는 1달러당 1,380원, 1유로당 1,587원, 1파운드당 1,696원, 1스위스프랑당 1,861원의 환율이 적용되었음.

【2026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사업 세부 편성 내역】

구 분	'25예산	'26안
□ 국제기구분담금	2,461백만원	2,747백만원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의무)	791백만원(EUR 544,753)	1,079백만원(EUR 680,189)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의무)	120백만원(CHF 80,462)	136백만원(CHF 80,462)
▪ 국제곡물이사회(IGC, 의무)	51백만원(GBP 29,800)	56백만원(GBP 29,800)
▪ 아태지역식물보호기구(APPPC, 의무)	58백만원(USD 43,167)	60백만원(USD 43,167)
▪ 아세안+3 쌀비축기금(APTERR, 의무)	101백만원(USD 75,015)	104백만원(USD 75,015)
▪ 국제낙농연맹(IDF, 의무)	65백만원(EUR 44,500)	72백만원(EUR 45,600)
▪ 국제설탕기구(ISO, 의무)	105백만원(GBP 61,835)	121백만원(GBP 64,740)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의무)	204백만원(EUR137,338)	214백만원(EUR 134,787)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의무)	299백만원(USD 221,852)	262백만원(USD 189,800)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의무)	149백만원(USD 110,384)	156백만원(USD 112,684)
▪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의무)	178백만원(USD 132,000)	147백만원(USD 106,500)
▪ AARDO 극동지역사무소(의무)	340백만원	340백만원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환율 : 1\$=1,380원, 1€=1,587원

□ 그러나,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은 1달러당 1,380원으로 국제기구분담금 사업과 동일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유로화의 경우 1유로당 1,594원의 환율을 적용하여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에서 적용된 환율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 세부 편성 내역】

구 분	'25예산	'26안
□ 국제기구분담금(ODA)	28,391백만원	30,327백만원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의무)	20,807 (\$8,599,000+€6,000,000)	21,053 (\$8,462,000+€6,000,000)
▪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 락사무소(FAO PLO, 의무)	1,106 (\$700,000+140백만원)	1,110 (\$700,000+144백만원)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의무)	6,478 (\$4,700,000)	8,164 (\$5,916,0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환율: 1USD=1,380원, €1=1,594원

□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초로 예산안을 편성하던 당시에는 당초 기획재정부가 공지한 기준 환율을 적용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전 체적으로 달러에 한해 기준환율을 인하하여 재공지함에 따라 달러 의 기준 환율이 변경되었고,

이후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 부 농림해양예산과’에서 달러 외의 다른 외화(유로, 파운드, 스위스 프랑)의 기준환율도 조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농협은행 최근 3개 월(4.26~7.25) 평균 매매기준율 적용한 반면,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 정부 행정예산과’에서는 달러 외의 다른 외화에 대한 조정 요청이 없어 최초 환율로 편성함에 따라, 양 사업 간 유로 기준환율에 차 이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사업 내용 및 취지가 동일한 두 사업 간 다른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고, 동 사업들은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약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납부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신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의 유로 기준환율(€1=1,587원)을 국제기구분담금 사업(ODA)의 유로 기준환율(€1=1,594원)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 재검토 필요

- FAO 한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³¹⁾에 근거하여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념의 국내 보급 및 관련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농업 정책 동향 및 정보 분석, 국제 교류 협력 사업(정책포럼, 세계 식량의 날 기념행사 등) 수행 등의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연간 6억 6,200만원을 협회에 지원하고 있음.

【 FAO 한국협회 예산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연도	지원 금액	지원 사유
국제기구 분담금 (FAO 한국협회 지원)	320-01 (민간경상보조)	2024	662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교류, 인력·기술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
		2025	662	
		2026	662	

※자료: 농식품부 제출

3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정부 공식 대표단)이 FAO 총회, 지역 총회, 농업/수산/임업 위원회 등 FAO가 주관하는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정부 대표단은 국가를 대표한 공식 교섭 및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협회는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자문, 정보 분석, 실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협회의 FAO 내 법적·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FAO 공식 및 비공식 회의체에서 회원국들의 논의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우리나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런데,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협회에 대한 지원을 하는 동 사업은 세부사업 ‘국제기구분담금’의 내역사업으로 '09년부터 예산이 편성³²⁾되고 있음.

그러나, 세부사업 ‘국제기구분담금’은 명칭 그대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분담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 사업과는 그 성격 및 내용이 상이함.

32)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AO 한국협회 지원 예산은 '08년까지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09년부터는 국제기구분담금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임.

협회의 경우 FAO 국제회의에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이 참석 및 대응함에 있어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와는 거리가 있음.

또한, 분담금은 의무적이고 경직성 경비인 반면, 보조금은 재량적이고 정책적 경비라는 점에서 사업 간 성격도 전혀 다름.

따라서, 두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묶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21조³³⁾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식품부는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3)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4)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안 편성 필요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기본경비”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운영경비(7018-278)에 “주요사업비”의 성격을 가지는 ① KAHIS 망분리 및 X-RAY 자동화시스템 구축, ② KAHIS MICRO CT 기반 곤충관독시스템 고도화 관련 전산장비 임차료를 편성한 것은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 편성으로 보이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련 지침에 부합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식물검역, 가축방역, 축산물 안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유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보다 7억 6천 600만원(△4.9%) 감액된 148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³⁴⁾.

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사업은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간 통신요금 및 사무용SW 라이선스 비용 등으로 이루어진 기관 고유업무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성격의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하게 13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³⁵⁾.

34)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6231-300)

35)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7018-278)

【 2026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화 및 전산운영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16,225	15,609	10,465	14,843	△766	△4.9%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운영경비	1,375	1,389	541	1,389	-	-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

나) 검토의견

-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예산을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하고, 기본경비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① 기본행정경비, ②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③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상기 지침에서는 소규모 전산운영경비의 경우 “전산소모품, 임차료, 회선사용료 등 전산장비의 유지운영”과 “PC 교체 등 소규모 전산경비”의 목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본 전산장비 유지·운영 및 소규모 전산 경비 예산의 경우 기본경비³⁶⁾에 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운영경비 사업에 편성하여야 하고,

주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유지·운영 예산은 주요사업비³⁷⁾에 해당하는 검역본부정보화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운영경비(7018-278)에 “주요사업비”의 성격을 가지는 ① KAHIS 망분리 및 X-RAY 자동화시스템 구축,

36) 소속기관기본경비-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37) 검역검사정보화-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② KAHIS MICRO CT 기반 곤충판독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전산장비 임차료가 편성되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 편성으로 보임.

【 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7018-278) 2026년 예산안 편성 내역 】

- 전산장비 임차료 : ('25)883백만원 → ('26예산안)883백만원
- KAHIS 망분리 및 X-RAY 자동화시스템 구축 : 297.5백만원 × 2회 = 595백만원
 - KAHIS MICRO CT 기반 곤충판독시스템 고도화 : 142.5백만원 × 2회 = 285백만원
 - 강의실 임차료 : 100백만원 × 3회 = 3백만원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 예산안 설명자료 발췌

□ 이와 관련하여 국립종자원 정보화 사업[종자원정보화(정보화) (6433-522)]의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검역본부가 기본경비인 전산운영경비에 편성한 서버 교체 등의 예산을 주요사업비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편성하고 있음.

【 종자원정보화(정보화) (6433-522) 2026년 예산안 편성 내역 】

- 단순 전산장비(임차료) : ('25) 125백만원 → ('26) 145백만원
- (산출)
- * ('26년 신규) 망분리 PC 49대 123백만원 × (6년임차) 18.54% = 23백만원 / 순증
 - * ('21년) 항온항습, 통신장비 교체 8백만원 × 2회 = 16백만원 / 전년 동일
 - * ('23년) 보안장비 교체 21백만원 × 2회 = 42백만원 / 전년 동일
 - * ('24년) 백본, 서버 교체 32백만원 × 2회 = 64백만원 / △3

※ 자료: 국립종자원 2026 예산안 설명자료 발췌

또한, 검역본부는 '25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주요사업비에 해당하여 정보화사업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전산운영경비 사업에 편성하는 등 관행적·지속적으로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7018-278) 2025년 예산안 편성 내역 】

○ 임차료(210-07) : 883,000천원

가. 축산차량 출입 정보관리시스템 : 91,000천원 × 4회

나.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 149,500천원 × 2회

다.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 108,500천원 × 2회

라. 강의실 임차료 : 3,000천원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25예산안 설명자료 발췌

□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주요사업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검역본부정보화 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등, 각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5)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비 규모에 대한 적정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등 검토 필요

- 점심밥 지원을 위한 내역사업이 매년 단기간(5개월)만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사업 효과성 검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수정하여 총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로 수혜자 만족도 조사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식비 절감 효과, 지역 외식업체 매출 변화,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의 정량적 지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가) 예산안 개요

□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은 취약지역 근로자의 식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79억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³⁸⁾.

【2026년도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직장인 든든한 한끼	-	-	-	7,948	7,948	신규

38)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직장인 든든한 한끼(2837-300)

나) 검토의견

-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은 산업단지, 인구감소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비를 지원하여 근로자 밥값 부담 경감과 외식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의 2개 하위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 개요 】

구분	세부내용
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값을 지원하여 근로자 밥값 부담 경감과 외식 경기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침밥은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 한정 ** 지원 기업 중 <u>산업단지,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기업 우선 선정</u> ***아침밥은 식당 접근성 취약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포함 검토
지원 내용	○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침밥 또는 점심밥을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내식당, 공동식당, 주문배달 등에 대해 정부가 2천원 지원 -(든든한 점심밥) 중소기업 종사자가 점심시간에 인근 외식업종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결제한 금액의 20%(월 4만원) 지원
지원 방법	○ 기업이 아침밥 또는 점심밥을 선택(중복 지원 불가)하여 신청
지원 규모	○(천원의 아침밥) 19억 4800만원, 전국 산업단지 34개소 3,740명 ○(든든한 점심밥) 60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

※자료: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시행방안」(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4.10.4)

□ 각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내역사업은 산단근로자 3,840명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4만원(20일×2천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17억 9,500만원과 사업 운영비 1억 5,300만원으로 총 19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내역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에 대하여 5개월 동안 매월 2만원(20일×1천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50억원, 운영비 등 10억원으로 총 60억원이 편성되었음.

【 직장인 든든한 한끼 내역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내역사업명	'26 예산안	편성내역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19억 4,800만원	○지원금(17억 9,500만원) = 3,740명* × <u>12개월</u> × 40,000원** *3,740명= 산단 34개소 × 110명 **40,000원= 2,000원× 20일 ○운영비(1억 5,300만원)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60억원	○지원금(50억원)= 5만명 × <u>5개월</u> × 20,000원 ○운영비(8억원) 홍보 및 신청 접수시스템 구축 등 ○연구용역비(2억원)
합계	79억 4,800만원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II-1)」(농림축산식품부, 2025. 9.)

(1) 사업추진 필요성 및 고려사항

□ 동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아침 식사 및 점심값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해당 지역의 외식산업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특히, 동 사업에 따른 식사비 지원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식생활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 지난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7.1% 상승하는 동안 외식물가는 25.4% 증가하여 직장인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73.1%가 구내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³⁹⁾ 특히 인구소멸지역 또는 산단지역 근로자는 상권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리고, 동 사업을 통하여 외식업체 이용 시 식비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이들 외식업체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처럼 동 사업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건강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 외식업체와 연계된 할인 지원 방식으로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9) 2024 직장인 점심식사 및 구내식당 관련 인식조사(엠브레인)

□ 다만,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 또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동 사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재정적자의 지속으로 후세대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정된 재정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음.

더욱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동 사업이 추후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10% 수준만 지원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매년 9,56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현실적인 재정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⁴⁰⁾

둘째, 동 사업은 지원대상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 또는 저연차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을 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영세 업체들의 공동구내식당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예산지원을 선별화·표적화하여 예산 지출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성 또한 제기될 수 있음.

셋째, 점심값 지원 내역사업은 외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40) 9,560억원= 월 4만원 × 12개월 × 중소기업 종사자(1,991만 7,649명) × 10%

*중소기업 종사자 1,991만 7,649명(「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중소벤처기업부, 2025))

외식을 하는 경우에만 식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입점하고 있는
급식업체에 대한 식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외식
수요가 국내 급식 수요를 대체하여, 외식업체의 수익 증가가 국내
급식업체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2026년부터 2028
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일부 대상에게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
업성과와 추진방법을 조사·분석한 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서, 시범사업의 실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사업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임.

(2)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관련 검토

- 「국가재정법」⁴¹⁾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동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총 사업비 446억 8,500만원, 국비 지원 296억 8,500만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직장인 든든한 한끼 내역사업 총사업비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금		1,795	3,590	5,385	10,770
	운영비 등		152	305	458	915
	소계		1,947	3,895	5,843	11,685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금	국비 (50%)	5,000	5,000	5,000	15,000
		지방비 (50%)	5,000	5,000	5,000	15,000
	운영비 등		1,000	1,000	1,000	3,000
	소계		11,000	11,000	11,000	33,000
	총 계		12,947	14,895	16,843	44,68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각색

4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이하 생략)

□ 그러나,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내역사업은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한 2026년뿐만 아니라 2027년 및 2028년에도 5개월분의 지원금(100억원)만 총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27년 및 2028년에도 사업을 매년 5개월만 추진할 경우 단기간의 제한적 시행으로 지역 외식업의 매출 변화 등과 같은 시범사업의 효과를 의미있게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특히, 동 사업은 2026년에 선정된 대상 지역을 3년간 연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에도 예산상으로는 연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내역사업은 연간 12개월을 지원하고 있어, 내역사업 간 지원기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내역사업의 운영기간이 5개월로 짧은 점에 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만약, 이를 감안하여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내역사업이 2027년 및 2028년에 연간 12개월분의 지원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총 280억원(국비 140억원)⁴²⁾이 추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음. 이 경우 총 사업비는 726억 8,500만원, 국비 지원 436억 8,500만원이 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42) 추가 사업비 280억원 = 480억원('27년, '28년 총 지원금) - 200억원('27년, '28년 총사업비에 반영된 지원금)

*'27년, '28년 총 지원금(480억원) = 100억원(5개월분 사업비) ÷ 5개월 × 12개월 × 2개년

(3) 성과평가의 개선 필요

- 동 사업은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 성과지표 】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2026년 목표치
사업수혜자 만족도 조사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90%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II-1)」(농림축산식품부, 2025. 9.)

-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수혜자가 일상적·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식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형태로서, 수혜자 입장에선 추가 부담 없이 금전적 혜택을 지원받는 사업이므로 만족도가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사업수혜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근로자의 식비 부담 경감이나 지역 외식경기 활성화라는 동 사업의 주요 추진목표 달성 여부를 적절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동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추후 본사업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 평가와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정책목표와 연계된 실질적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만족도 조사 외에도 근로자의 식비 절감 효과, 지역 외식업체 매출 변화,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의 정량적 지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하여 시범사업의 효과를 사회 전반의 관점에서 보다 정확히 검증하고, 추후 본사업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 2026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5.7%(2조 3,534억원) 증가한 17조 3,707억원으로, 구조개선사업계정은 전년대비 17.4%(1조 1,401억원) 증가한 7조 6,935억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은 전년대비 15.0%(1조 1,263억원) 증가한 8조 6,146억원, 임업진흥계정은 전년대비 8.9%(869억원) 증가한 1조 625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각 계정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구조개선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3조 8,100억원과 농특세계정 전입금 3조 7,118억원 등 총 7조 6,935억원을 조달하여, 일반사업비로 5조 644억원(농림축산식품부 4조 3,153억원, 해양수산부 7,406억원, 농진청 84억원)을 지출하고, 내부거래로 2조 6,291억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조 6,508원, 농지관리기금 5,000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40억원, 축산발전기금 1,455억원, 수산발전기금 1,288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농특세계정은 농특세 8조 4,988억원, 기타수입 1,158억원 등 8조 6,146억원

을 조달하여, 일반사업비로 1조 8,574억원(농림축산식품부 1조 777억원, 해양수산부 7,772억원, 환경부 24억원)을 지출하고, 내부거래로 6조 7,572억원(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전출금 2조 9,472억원, 구조개선계정전출금 3조 8,100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임업진흥계정은 자체수입 3,111억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7,514억원 등 총 1조 625억원을 조달하여 일반사업비로 3,760억원을 지출하고, 내부거래로 6,865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2026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

(억원, %)

세 입					세 출				
구분	'24년	'25년 (A)	'26년안 (B)	증감 (B-A)	구분	'24년	'25년 (A)	'26년안 (B)	증감 (B-A)
계(구조+특별세+임업)	155,115	150,173	173,707	23,534	계(구조+특별세+임업)	155,115	150,173	173,707	23,534
계(구조+특별세)	145,248	140,417	163,082	22,665	계(구조+특별세)	145,248	140,417	163,082	22,665
[구조개선계정]	62,992	65,534	76,935	11,401	[구조개선계정]	62,992	65,534	76,935	11,401
o 자체수입·경상이전수입	922	939	1,159	220	□ 일반지출	54,509	51,305	50,644	△661
- 농식품부	661	677	735	58	o 농식품부	44,320	42,116	43,153	1,037
- 해양수산부	250	251	416	165	o 해양수산부	10,114	9,121	7,406	△1,715
- 농촌진흥청	11	11	7	△4	o 농진청	75	68	84	16
- 식약처	-	-	-	-	□ 내부거래지출	8,483	14,228	26,291	12,063
o 정부내부수입	61,230	64,035	75,217	11,182	o 농식품부	8,483	14,228	25,009	10,781
- 일반회계전입금	26,451	39,016	37,118	△1,888	- 지특회계전출	-	12,773	15,225	2,452
- 농특세계정전입금	34,779	25,019	38,100	13,081	- 농안기금전출	-	-	2,040	순증
o 용자원리금회수	840	559	559	-	- 농지기금전출	-	-	5,000	순증
					- 수발기금전출	-	-	1,288	순증
					- 축발기금전출	1,455	1,455	1,455	-
					o 해수부 지특전출	-	-	1,283	순증
[농어촌특별세계정]	82,256	74,883	86,146	11,263	[농어촌특별세계정]	82,256	74,883	86,146	11,263
o 농어촌특별세	76,199	74,153	84,988	10,835	□ 일반지출	17,605	19,992	18,574	△1,418
o 경상이전수입등	713	696	1,124	428	o 농식품부	10,540	11,578	10,777	△801
- 농식품부	631	604	1,017	413	o 해양수산부	6,685	7,590	7,772	182
- 해양수산부	68	70	85	15	o 환경부	380	824	24	△800
- 환경부	6	21	21	-	□ 내부거래지출	64,651	54,891	67,572	12,681
- 복지부	8	1	1	-	o 농식품부	64,651	54,891	67,572	12,681
o 용자원금회수	-	34	34	-	- 공익기금	29,872	29,872	29,472	△400
o 기금전입금	1,718	-	-	-	- 계정간전출금	34,779	25,019	38,100	13,081
o 전년도세계잉여금	3,626	-	-	-					
[임업진흥계정]	9,867	9,756	10,625	869	[임업진흥계정]	9,867	9,756	10,625	869
o 자체수입	3,381	3,068	3,111	43	□ 일반지출	7,004	6,716	3,760	△2,956
o 일반회계전입금	6,388	6,688	7,514	826	□ 내부거래지출	2,863	3,039	6,865	3,826
o 전년도세계잉여금	98	-	-	-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농업재해보험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미지급금 정산 원칙을 분명히 하여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 편성에 앞서 농특회계 내 미지급금 정산 재원을 우선 확보하는 등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품목별 가입률 변화 추이와 농가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성 있는 목표 가입률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재정 소요를 추계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업재해보험 사업은 농가가 재해를 대비해 가입하는 농업재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가축재해보험·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51억 6,000만원(10.6%) 증액된 8,870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⁴³⁾

【 2026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실집행)		(B-A)	%
농업재해보험	657,104	801,929	591,956 (510,550)	887,089	85,160	10.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3)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재해보험(1031-300)

나) 검토의견

□ '26년 농업재해보험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851억 6,000만원 (10.6%) 증가한 8,870억 8,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이는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예산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이 각각 175억 5,900만원(3.6%)과 673억 6,400만원(32.4%)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26년도 농업재해보험 내역사업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25예산 (A)	'26 예산안(B)	증 감	
			(B-A)	%
농업재해보험	801,929	887,089	85,160	10.6
농작물재해보험	484,182	501,741	17,559	3.6
가축재해보험	109,930	110,167	237	0.2
농업수입안정보험	207,817	275,181	67,364	32.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임.

【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안정보험 비교 】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76개('25) → 78개('26)	시범사업 6개, 본사업 9개('25) → 시범사업 6개, 본사업 14개('26)
보상 기준	자연재해로 인해 당해연도 수량이 평년수량의 60~90% 미만으로 감소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품목별 수입이 평년수입의 60~85% 미만으로 감소
보장수준	60%, 70%, 80%, 85%, 90%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60%, 70%, 80%, 85%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지원내용	보험료의 50% 수준	보험료의 50% 수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농작물재해보험 '24년 미지급금 전액 정산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금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거 미지급금 정산분⁴⁴⁾을 포함하고 있음.

【 2026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농작물 재해보험 (A=B+C)	보험료 지원 (B)	과거 미지급금 (C)	(발생연도)	
				'23 28,985	'24 26,269
2025	484,182	469,686	14,496	14,496	-
2026	501,741	474,117	27,624	14,489	13,13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4) 과거 보험료 미지급금은 농가에는 보험료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보험료 지원분 정산이 지연되어 발생한 보조사업자 대상 미정산금임.

이 중 '26년 미지급금 편성액은 전년 대비 131억 2,8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25년 예산에는 '23년 미정산액의 1/2 수준만 편성하였던 반면, '26년에는 '23년과 '24년 2개년분 미정산액 절반의 예산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임.

과거 미지급금 발생 및 정산 현황을 보면, '20년과 '21년에 미지급금이 과다 발생하면서 '22년과 '23년 예산 편성 시 각각 2개년도 미지급금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고, '24년에는 '22년 미지급금 229억 5,900만원을 전액 정산한 바 있음.

【 과거 미지급금 발생 및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A=B+C)	보험료지원 (B)	과거 미지급금 (C)	미지급금 발생연도	미지급금 발생액
2020	359,816	271,345	88,471	(‘18) 88,471	79,890
2021	351,871	329,820	22,051	(‘19) 22,051	85,890
2022	508,820	438,087	70,733	(‘19) 44,103 / (‘20) 26,630	22,959
2023	607,729	468,579	139,150	(‘20) 53,200 / (‘21) 85,950	28,985
2024	535,584	512,625	22,959	(‘22) 22,959	26,269
2025	484,182	469,686	14,496	(‘23) 14,496	
2026안	501,741	474,117	27,624	(‘23) 14,489 / (‘24) 13,13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26년 예산안에 '24년 미지급금을 전액 반영하지 않고 2개년에 분할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농특회계 자

금 부족 등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6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6년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전년 대비 14.6% 증가한 8조 4,9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 보험료는 재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서, 미지급금의 규모와 발생 빈도의 증가는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보험금의 적시 지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보조금에서도 매년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점('24년 897억5,400만원)을 감안하면⁴⁵⁾, 미지급금의 정산 지연은 보험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6년 예산에 '24년 미지급금을 전액 반영하고, 미지급금 정산 원칙을 분명히 하여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 편성에 앞서 농특회계 내 미지급금 정산 재원을 우선 확보하는 등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5)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관련 각 연도말 기준 지방비 미지급금이 '22년 38,504백만원, '23년 52,343백만원, '24년 89,754백만원 발생하였음.

(2) 품목별 가입률과 농가 수요에 기반한 목표 가입률 설정 필요

-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은 '25년에 전년 대비 1,997억 1,700만원 (2,466%) 증가한 2,078억 1,700만원이 편성된 이후, '26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673억 6,400만원(32.4%) 증가한 2,751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수입안정보험 예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4예산	'25예산(A)	'26예산안(B)	증 감	
				(B-A)	%
수입안정보험	8,100	207,817	275,181	67,364	32.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5년 당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24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던 9개 품목을 '25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6개 신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하였기 때문임.

또한, '26년에는 '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5개 품목이 본사업으로 전환⁴⁶⁾될 예정이며, 사과, 배, 파 등 5개 품목을 '26년 신규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음.

46) 농식품분에 따르면 벼는 모든 농작물 중 재배 농가, 면적, 농지수 등이 가장 큰 품목으로, 안정적으로 전국 운영이 가능할지 면밀히 검증하기 위하여 타 품목과 달리 시범사업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음.

【 수입안정보험 사업 품목 】

구 분	'24 품목	'25 품목	'26 품목
본사업	-	콩,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옥수수, 마늘, 양파, 보리, 포도	
			가을무, 가을배추,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시범사업	콩,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옥수수, 마늘, 양파, 보리, 포도	벼	
		가을무, 가을배추,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사과, 배, 파 등 5개 품목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6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를 제외한 보험료 지원예산은 예상보험료 4,687억 9,400만원의 50%를 반영한 것으로, 예상보험료는 '26년 운영 예정인 20개 품목의 목표 가입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품목별 목표 가입률은 시범사업 품목의 경우 전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되었고, 본사업 1년차 품목은 전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년차 품목은 35%를 적용하고 있음.

【 25년 및 26년 수입안정보험 보험료 산출내역 】

2025	2026
○ '25년 보험료 지원 = 175,745백만원 ('25년 예상 순보험료* 351,491 × 국고 지원비율 50%) * 예상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2,893,952백만원 × 보험료율 12.1%	○ '25년 보험료 지원 = 232,416백만원 ('25년 예상 순보험료* 464,833 × 국고 지원비율 50%) * 예상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2,856,690백만원 × 보험료율 12.0%

2025	2026
** 보험가입금액 = {각 품목별(품종·작형별) 생산액 × 각 품목별 가입률(<u>본사업 품목 25%, 시범사업 품목 15%</u>)}의 합계	** 보험가입금액 = {각 품목별(품종·작형별) 생산액 × 각 품목별 가입률(<u>본사업 2년차 품목 35%, 본사업 1년차 품목 15%, 시범사업 품목 10%</u>)}의 합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26년 가입률 목표치는 '25년 9월 기준 보험 판매기간이 종료된 품목의 가입 실적을 감안할 때, 실제 가입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즉, '25년 시범사업 품목의 실제 가입률은 18.4%로 당초 목표(15%)를 상회하였으나, 본사업 1년차 품목의 가입률은 17.2%로 당초 목표(25%)에 미달하고 있는데, '26년 예산 편성 시에는 시범사업 및 본사업 1년차 품목의 가입률 목표를 모두 하향 조정하였음.

【 수입안정보험 가입률 】

구분	본사업	시범사업
'25년 가입률 실적	1년차 17.2%(17,871/104,107ha)	18.4%(8,324/45,136ha)
'25년 목표	1년차 25%	15%
'26년 목표	1년차 15%, 2년차 35%	10%

* 가입률 = 가입면적 / 대상면적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품목별 가입 실적을 보면, 시범사업 품목의 가입률은 1.3%에서 31.3%까지, 본사업 품목은 2.8%에서 29.1%까지 분포하는 등 품목 간 가입률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수입안정보험 가입 현황('25년 9월 기준) 】

(단위: ha, %)

상품		대상면적(A)	가입면적(B)	가입률(B/A)	비고
시 범	봄감자	1,935	315	16.3	
	고랭지감자	1,290	405	31.3	
	벼	35,646	6,871	19.2	
	감귤(만감류)	3,324	44	1.3	
	가을배추	2,497	571	22.9	
	가을무	444	118	26.5	
	단감	2,877	-	-	판매 예정
	복숭아	4,692	-	-	판매 예정
본 사 업	고구마	15,173	1,369	9.0	
	옥수수	14,167	400	2.8	
	콩	64,646	14,147	21.9	
	가을양배추	8,209	480	17.0	
	월동양배추		916		
	가을감자	1,912	559	29.1	
	마늘	21,321	-	-	판매 예정
	양파	18,050	-	-	판매 예정
	보리	23,174	-	-	판매 예정
	포도	12,770	-	-	판매 예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와 같이 '26년 가입률 목표치가 실제 가입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목 간 가입률 편차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과 같은 일률적 목표 설정 방식으로는 정확한 소요 예산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농가가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중 하나를 선택

가입해야 하는 가운데,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첫해인 '25년에는 품목별 가입 선호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업수입안 정보험만을 대상으로 한 품목별 가입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내역 사업을 통합하여 품목별 가입률 변화 추이와 농가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성 있는 목표 가입률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재정 소요를 추계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만큼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수준은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높으나, 농가의 수입(收入) 변동성 위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실제로 '25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필요성, 보상 만족도, 가입 유지 의향 등 주요 지표에서 농작물재해보험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농업재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

(단위: %)

구분	필요성			만족도			가입유지 의향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농작물 재해보험	49.1	37.3	10.6	12.9	49.9	28.8	25.2	64.3	7.8
농업수입 안정보험	54.7	34.1	10.1	18.9	52.2	26.4	28.8	62.5	7.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가입 대상인 농가는 물론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지역농축협의 이해도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가가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중 하나를 선택 가입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재배 품목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 선택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농촌고용인력지원

- 신규 편성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사업’은 시·군별 면적, 인구, 쓰레기 발생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운영비로 편성된 ‘재해 시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 인력 동원’ 예산은 현재 환경부가 별도 지침과 지원체계를 통해 재난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농업분야의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의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6억 2,800만원(46.3%) 증액된 399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⁴⁷⁾

【 2026년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 예산(A)	집행 (실집행)		(B-A)	%
농촌고용인력지원	21,911	27,288	27,288 (10,805)	39,916	12,628	46.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7)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

나) 검토의견

(1)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배분 기준 마련 필요 등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예산 68억 4,800만원이 '26년에 신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5예산 (A)	'26 예산안(B)	증 감	
			(B-A)	%
농촌고용인력지원	27,288	39,916	12,628	46.3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	6,848	6,848	순증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농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타 지역 대비 인구 고령화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감소지역⁴⁸⁾(89개소) 중 84개 시군을 대상(5개 구는 제외)으로 하며,

48)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되며, 조출생률, 청년 순 이동률, 장기(20년) 및 중기(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유소년 및 고령화 비율, 인구밀도,

해당 지자체가 농지나 하천 등 농어촌지역에 방치·산재된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지역 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경우 국비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음.

【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개요 】

구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사업목적	쓰레기 수거로 농촌의 전반적 정주 여건 개선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사업기간	2026년~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5개 구를 제외한 84개 시군
사업주체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내용	■ 쓰레기 수거지원단의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지원 ■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 산출내역	6,848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6,048백만원 (쓰레기 수거 지원) 84개 시군×144백만원×국비 50% = 6,048 ■ 민간경상보조: 800백만원 (운영관리비) 800백만원×국비 100% = 800

※ 자료: 농식품부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주간인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됨.

(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배분 기준 마련 등 필요

- 먼저, 수거지원단의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지원 예산 60억 4,800만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각 84개 시군에 대하여 수거인건비와 운영·관리비를 합산한 금액(1억 4,400만원)의 50%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됨.

【 수거지원단 인건비 등 산출내역 】

- 84개 시군 × 144백만원 × 국비 보조율 50% = 6,048백만원
- 시군당 144백만원 = 수거인건비(120백만원^①) + 운영·관리비(24백만원^②)
① 연 48일(월4회) × 12만원/일 × 21명 (일당(12만원)에 자차 사용 유류비 등 포함)
② 관리 인건비, 수거지원단 상해보험 가입비, 장갑 등 안전 피복비, 집계 등 재료비, 교육비 등

그러나 총 60억 4,800만 원 규모의 예산은 사업 편성 단계에서 시·군별 참여 수요 조사나 실제 소요비용 분석 없이 84개 시·군에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배분된 한계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이 「폐기물관리법」 상 시군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 참여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실제로는 시군별 신청 수요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 예산을 시군에 배분함에 있어 단순히 시군의 사업비 신청 규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청내역의 타당성과 실제

소요비용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예산 배분 시 시군별 면적, 인구, 쓰레기 발생량, 불법투기 실태, 도서·벽지 여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배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다·과소 배정이나 불필요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고 시군 간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한편,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가 적고 산재된 지역의 경우 쓰레기 수거 인력이 부족하고 수거 주기도 길어 지자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중 일부 시군은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 국비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는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농어촌 시군(56개)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여 쓰레기 수거 부담이 큰 지역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사업 신청 수요가 미달될 경우 기타 시군에 대해서도 지원을 허용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높이거나,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신청 수요와 소요액,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환경부 재난폐기물 처리체계와의 기능 중복 검토 필요

□ 한편, 동 사업 예산안에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예산 외에 전담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운영비 예산이 8억원 편성되어 있음.

84개 시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지원, 추진상황 점검, 성과관리, 깨끗한 농촌 캠페인 추진 등을 위해 전담지원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임.

운영비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재해 시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 인력 지원 동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예산으로 2억 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 운영비 산출내역 】

○ 외주용역비 100백만원 + 교육 및 전문가 회의비 30백만원 + 재해 시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 인력 지원 동원 체계 구축 등 290백만원* + 인건비 210 + 경비 140+ 일반관리비 30,000= 8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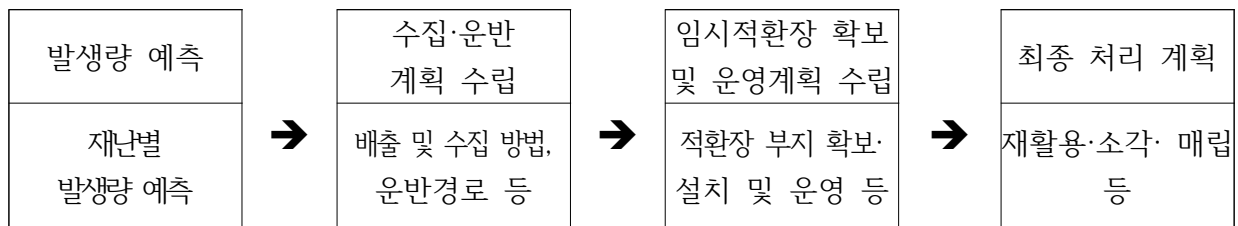
* 세부 산출내역(290백만원): 연 4회 × 차량 동원 36대 × 2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예산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재난 발생 시 재난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 인력을 모집하여 해당 시군으로 수송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임.

그런데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이 일상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 수거지원단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수송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운영비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의 사업 영역인 것으로 보임.

또한,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으로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예산⁴⁹⁾이 매년 편성되고 있고, 환경부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재난폐기물의 수거·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등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쓰레기 수거 기능까지 포함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환경부의 재난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절차 】



※ 자료: 환경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49) 재해대책비(환경개선특별회계 7140-300)의 내역사업인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26년 350억원이 편성됨.

(2)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적정성 검토 필요

- 영농도우미 내역사업은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연간 최대 10일까지 영농작업 대행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활동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 영농도우미 내역사업 개요 】

구분	세부내역
사업 목적	사고·질병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지원 대상	사고·질병발생,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으로 ①~④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 ①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지원액	영농도우미 인건비 84천원/일 지원 (연간 최대 10일) *국비지원 70%, 자부담 30%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 동 내역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76억 4,700만원으로 13,000가구에 각 10일간 영농도우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음.

【 영농도우미 내역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영농도우미 지원: 76억 4700만원 = 13,000가구 × 84,000원 × 10일 × 국비 70%	○ 영농도우미 지원: 76억 4700만원(전년동) = 13,000가구 × 84,000원 × 10일 × 국비 70%

□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대상⁵⁰⁾ 중에는 ‘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농식품부는 이에 대하여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등 안전사고 예방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농작업 관련 손상 발생률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남성 농업인(2.9%)이 여성농업인(2.2%)에 비하여 약 32%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남성농업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필요성 또한 높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업인 업무상 손상 발생 현황 】

성별	2019			2021			2023			평균 손상 발생률
	업무상 손상발생률	업무상 손상자	농업인	업무상 손상발생률	업무상 손상자	농업인	업무상 손상발생률	업무상 손상자	농업인	
합계	2.7	48,405	1,811,825	2.4	44,302	1,823,982	2.6	47,601	1,833,373	2.6
남성	2.7	25,940	955,787	2.8	28,002	984,463	2.9	28,532	971,723	2.8
여성	2.6	22,465	856,038	1.9	16,300	839,519	2.2	19,069	861,650	2.3

* 업무상 손상: 휴업 1일 이상이 필요한 농작업 관련 손상(골절, 파열 등)

※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365

□ 이를 감안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특정 성별만을 교육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며, 이는 실제

50) 지원요건: 사고·질병발생,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으로 ①~④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

①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 높은 농업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동 사업은 영농도우미 지원 요건을 성별 구분 없이 '농업인 교육과정 이수자'로 개선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특정 작물, 농기계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설정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 예산 필요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개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력계통연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센터설립, 교육·홍보, 전과정 컨설팅 자문 관련 예산의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국전력공사 계통 관련 문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 저조로 인한 연례적인 집행부진 상황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이해도 제고 등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3,300만원(△71.4%) 감액된 8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⁵¹⁾

【 2026년도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2,816	3,128	3,137 (172)	895	△2,233	△71.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1)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2240-401)

나) 검토의견

(1)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적 탄소중립, 농촌 화석연료 이용 절감 등을 위해서 농촌 태양광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정책⁵²⁾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안보 유지를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⁵³⁾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추진 중임.

□ 또한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을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⁵⁴⁾로 삼아, 2025년 시범 사업지 선정 후 본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햇빛소득마을이란 마을의 공용시설 및 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모델⁵⁵⁾로,

52)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개발('09~), 농업·농촌 RE100실증지원('22~) 등 농촌 마을, 시설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53) 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2024. 4. 23.

54)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 계획입지 기반의 농지·농업법인 규제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농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전기 등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활성화

55) 햇빛소득마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구양리) 한강수계 관리기금(건축물) 및 SK하이닉스 보상금으로 마련된 마을 공동관리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1MW 규모 태양광 설치 * 사업비 : 16.7억원(부지 담보대출(논), 산업부 정책자금 대출, 마을기금 활용) ** (발전수익) 약 1,000만원/월, (수익배분) 마을협동조합 공동 관리로 마을 공용버스 운행·무료 급식 운영·문화 관람 지원 등
--

마을협동조합(시행주체)⁵⁶⁾이 구성되고 주민동의⁵⁷⁾, 설치재원⁵⁸⁾,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⁵⁹⁾ 등이 확보된 농촌 마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발전시설 설치 부지 유형에 따라 수상형⁶⁰⁾, 영농형⁶¹⁾, 혼합형⁶²⁾으로 구분하여 마을당 300kw~1MW 이내의 규모⁶³⁾로 건설될 예정임.

- (월평) 마을협동조합 구성원 소유 염해간척지(5만㎡, 13필지)에 3MW 규모 태양광 설치(現 1MW 준공)
- * 사업비 : 54억원(마을협동조합 56%, SPC 44% 출자)
- ** (발전수익) 약 1,000만원/월, (수익배분) 마을주민배당(출자비율에 따른 총 배당금 330만원/월을 28 가구에 11만8천원/월/가구 배당)

56)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마을협동조합

57) 사업참여에 대한 주민동의 100% 확보 원칙(해당 마을의 가구 규모가 큰 경우 차등 설정)

* 30 가구 이상 동의율 70%, 21~29 가구 80%, 15~20 가구 90%, 14가구 이하 100%

58) 마을의 자기자본 출자금과 금융대출을 통한 재원 마련이 원칙

* 책임성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의 20% 이내 마을조합 자기자본 출자 장려(가점)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부)' 내 마을태양광사업(총사업비의 80% 용자지원) 활용

59) 발전설비 설치 이전까지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계통(변전소, 송배전선로)에 대한 확인 필수

- 안정적인 전력판매 수익 확보를 위해 한전과 장기고정계약 추진(산업부 협조)

- 전국적으로 전력계통이 확보되지 않아 햇빛소득마을 선정후 추진중단 등에 대응, 계통 확보 등 준비된 곳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

-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계통 우선 배정, 전력피크 외 시간대 전력 계통 접속을 위한 ESS 및 스마트 그리드 구축 지원 방안 등 지속 협의

60)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소유 저수지의 수면 임대후 설치

61) 농어촌공사 소유 비축농지(15천ha)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소유 농지를 장기간(20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임대후 설치

-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농지는 재생에너지 지구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허용

* 지자체의 특화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조성지역을 반드시 포함

** 실제 영농여부 확인 및 수확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직불금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 대상에 필수 조사대상으로 포함(직불금 미지급 대상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별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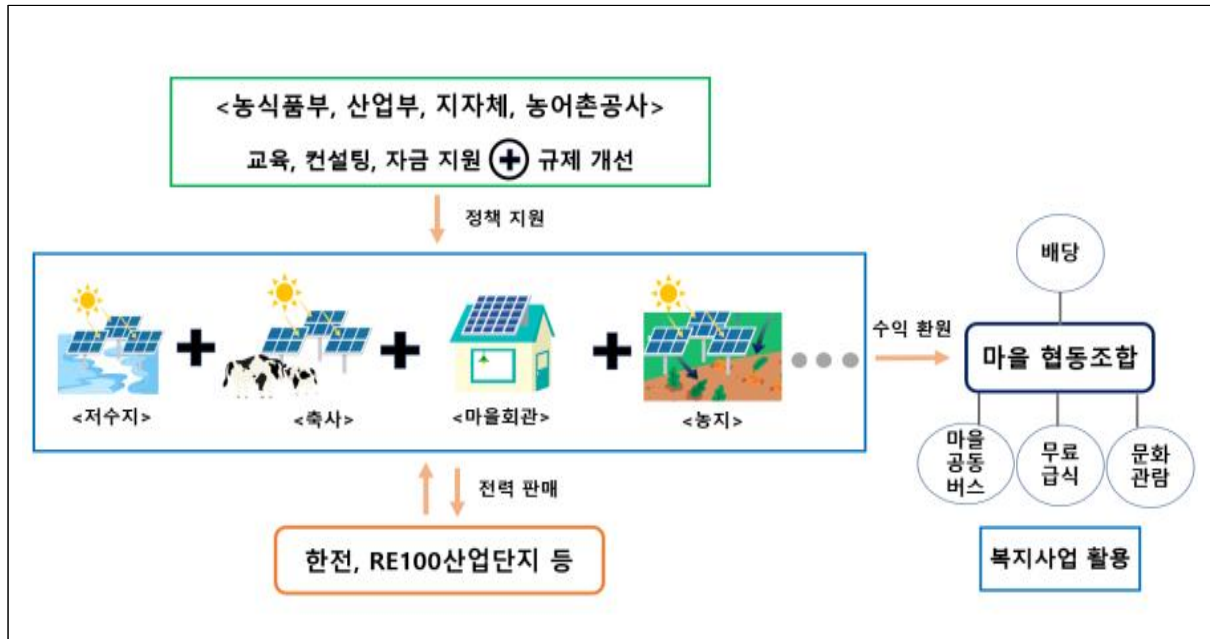
62) 공공부지 임대(저수지·비축농지 등)와 마을 공용시설(주차장부지·마을회관 등)을 모두 활용 설치

- 사업구역내 축사·버섯재배사·농수로·양배수시설·양곡창고·폐교 등의 지붕 공유가 가능한 경우 적극 활용하되 경관을 고려

63) (투입) 발전량 1MW 기준, 수상형 1ha, 영농형 및 혼합형 2ha 부지 필요, 건설비 약 16억원 소요

(수익) 1MW 판매시 약 1,000만원/월 판매 수익 창출

【 햇빛소득마을 개요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계획」, 2025. 9.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도에 예비 햇빛소득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교육·홍보, 금융상담, 사업 전(全)과정 자문 지원 및 전담 현장 교육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을 위한 교육센터설립, 교육·홍보, 전과정 컨설팅 자문 관련 예산을 예산안 심사 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계통 연결 및 전력가격 협의

와 같은 과제가 남아있는바, 후술하는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도 전력계통 연결 등에 있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임.

【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 사업(안) 내용 】

- 지원내용: 2,200백만원('26) (국비 100%)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 수상·영농형 태양광 관리 및 교육 일원화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농어촌공사로 지정
 - (사업수혜자) 지자체, 농업인 등 햇빛소득마을 예비후보지 마을주민
- 사업내용
 - (교육센터설립) 햇빛소득마을 추진절차 갈등관리 등 교육 및 일반형,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견학, 전기농기계 이용, 충전 등 에너지 전환 체험 등이 가능한 햇빛소득마을 전담 현장교육센터 조성
 - * (산출) 토지매입 600백만원+기본계획 20+세부설계 50+감리기타 10×국비 100%
 - (교육·홍보) 햇빛소득마을 조성 필요성·효과 등 홍보, 예비후보지 이해관계자 대상 협동조합설립, 인허가 획득, 부지확보, 마을 갈등관리 등 의무교육 실시
 - * (산출) 연간 교육인원 1,000명(100개소×10인) 이상, 교재인쇄비 10백만원(5천원×2,000부)+강사료 276(23만원/4시간×3일×100개소)+기타 33(홍보비, 사무용품비, 예비비 등)×국비 100%
 - (전과정 컨설팅 자문)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선정, 발전시설 설치·운영·사후관리, 수익배분 전반 및 금융상담 등 전(全) 과정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산출) 인건비(33명×65백만원×50%)+국내여비(85백만원)+예비비(34백만원)×국비 1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 필요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은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농촌마을 단위의 RE100⁶⁴⁾을 실증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8,300만원(△67.8%) 감액된 8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⁶⁵⁾

【 2026년도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 예산(A)	집행		(B-A)	%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2,124	2,778	2,847 (132)	895	△1,883	△67.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민간경상보조(320-01): 200백만원
 - 에너지 진단 등 컨설팅: 50백만원x4개소x국비1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95백만원
 - 가. 마을발전소 설치: 391백만원
 - 976백만원×4개소×국비 50%×1년차 20%
 - 나. 농업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180백만원
 - 450백만원×4개소×국비 50%×1년차 20%
 - 다.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124백만원
 - 310백만원×4개소×국비 50%×1년차 2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4)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는 것을 의미

65)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2240-401)

□ 동 사업은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년도에 걸쳐 4단계로 지원하는데, 1년차에 ① 에너지 진단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1년차~2년차에 걸쳐 ② 마을발전소 설치, ③ 농업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④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게 됨.

동 사업이 최초로 편성된 2022년도 이후의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① 1단계 에너지 진단 등 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320-01목) 예산 2억원은 매년 전액이 실집행되고 있으나,

이후 단계인 ② 마을발전소 설치, ③ 농업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④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예산은 매년 실집행이 부진⁶⁶⁾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 비목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연도	비목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 액(A)	실집행 액(B)	이월액	불용액	B/A
2022	320-01	200	200	200	-	200	200	-	-	100.0
	330-03	1,600	1,600	1,600	-	1,600	400	1,200	-	25.0
2023	320-01	200	200	200	-	200	200	-	-	100.0
	330-03	3,472	3,472	3,472	1,200	4,672	957	3,315	400	20.5

66) 교부현액 기준 실집행률: 2022년도 25.0%, 2023년도 20.5%, 2024년도 19.9%, 2025년도 7월 기준 2.3%

연도	비목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 액(A)	실집행 액(B)	이월액	불용액	B/A
2024	320-01	200	200	200	-	200	200	-	-	100
	330-03	2,566	1,924	1,924	3,315	5,239	1,044	4,195	-	19.9
2025 (7월)	330-03	2,778	2,847	2,847	2,792	5,639	132	-	-	2.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12개 지방자치단체 중 사업기간(2년) 내에 사업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는 춘천밖에 없고, 2022년도에 선정된 서천, 홍성, 화순(동가지구)과 2023년도에 선정된 정선, 보령, 화순(반곡지구)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3년도에 선정된 강릉은 사업을 포기한 상황임.

또한, 2023년도에 선정된 화순(반곡지구) 및 2024년도에 선정된 음성, 이천, 공주, 진안은 교부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음.

【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지자체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 액(A)	실집행 액(B)	이월액	불용액	B/A
춘천	2022	400	400	400	-	400	400	-	-	100.0
	2023	468	468	468	-	468	468	-	-	100.0
서천	2022	400	400	400	-	400	-	400	-	0.0
	2023	468	468	468	400	868	237	631	-	27.3
	2024	-	-	-	631	631	15	616	-	2.4
	2025	-	-	-	616	616	430	-	-	69.8
홍성	2022	400	400	400	-	400	-	400	-	0.0
	2023	468	468	468	400	868	113	755	-	13.0
	2024	-	-	-	755	755	308	447	-	40.8
	2025	-	-	-	447	447	415	-	-	92.8
화순(동 가지구)	2022	400	400	400	-	400	-	400	-	0.0
	2023	468	468	468	400	868	139	729	-	16.0
	2024	-	-	-	729	729	26	703	-	3.6
	2025	-	-	-	703	703	193	-	-	27.5
강릉	2023	400	400	400	-	400	-	-	400	0.0
	2024	468	-	-	-	-	-	-	-	-
정선	2023	400	400	400	-	400	-	400	-	0.0
	2024	468	468	468	400	868	687	181	-	79.1
	2025	-	-	-	181	181	95	-	-	52.5

지자체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 액(A)	실집행 액(B)	이월액	불용액	B/A
보령	2023	400	400	400	-	400	-	400	-	0.0
	2024	468	468	468	400	868	8	860	-	0.9
	2025	-	-	-	860	860	270	-	-	31.4
화순(반 곡지구)	2023	400	400	400	-	400	-	400	-	0.0
	2024	468	468	468	400	868	-	868	-	0.0
	2025	-	-	-	868	868	-	-	-	0.0
음성	2024	174	174	174	-	174	-	174	-	0.0
	2025	694	694	694	174	868	83	-	-	9.6
이천	2024	174	174	174	-	174	-	174	-	0.0
	2025	694	694	694	174	868	7	-	-	0.8
공주	2024	174	174	174	-	174	-	174	-	0.0
	2025	694	694	694	174	868	42	-	-	4.8
진안	2024	174	-	-	-	-	-	-	-	-
	2025	694	764	764	-	764	-	-	-	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 부진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한국전력공사 계통보강공사 계획 미정 또는 미실시 확정으로 인한 전체 또는 일부 사업 포기, 사업 수요부족으로 인한 여러 차례 공모실시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등이 있음.

【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부진 사유 】

(단위: 백만원)

지자체	연도	집행 부진 사유
서천	2023	필지분할에 따른 행정절차(의회 심의 및 통과)에 따른 인허가 지연
	2024	사업 부지 내 묘지 발견으로 묘지 이장 추진에 따른 지연
	2025	(진행중)한전 계통보강공사 착수('25.상)로 마을발전소 공사 지연
홍성	2024	발전사업허가 주체 변경에 따른 인허가 지연
	2025	(진행중)한전 계통보강공사 착수('25.12.) 예정으로 마을발전소 공사 중지
화순(동가지구)	2023	한전 계통보강공사 계획 미정
	2024	한전 계통보강공사 계획 미정
	2025	(진행중)한전 계통보강공사 미실시 확정으로 마을발전소 포기
강릉	2024	한전 동해안 계통보강공사(~'26.6)로 인해 사업연계 불가로 사업 포기
	2025	(사업포기)
정선	2024	사업 수요부족(5차 공모)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2025	(진행중)한전 변전소 용량 부족으로 마을발전소 공사 지연
보령	2024	사업 수요부족(5차 공모)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2025	(진행중)개발행위허가 절차(의회 승인) 따른 지연
화순(반곡지구)	2024	사업 수요부족(5차 공모)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2025	(진행중)한전 계통보강공사 미실시 확정으로 마을발전소 포기
음성	2025	(진행중)사업 수요부족(3차 공모)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이천	2025	(진행중)사업 수요부족(3차 공모)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공주	2025	(진행중)사업 수요부족(3차 공모)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진안	2025	(진행중)사업 수요부족(3차 공모)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와 같은 연례적인 집행부진으로 인하여, 2022년도부터 2025년도 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부진 사유 】

구 분	연도	지적사항
예결위	2022 결산	실집행을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및 연차별 국고보조금 교부율 조정 검토 필요
	2023 결산	사업수요 부족 및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재검토 필요
	2024 예산안	마을법인 설립 지연 및 한전 전력계통 연계 대기 등에 따른 조정 검토 필요
	2024 결산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이월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교부
	2025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조정 및 사업의 추진 필요성 재검토 필요
농해수위	2023 결산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

※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연도별 예산안·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도 2025년 9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서 동 사업을 2025년도 종료예정 사업으로 분류하는 한편, ‘집행 적정성’ 평가지표에서 실집행이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국전력공사 계통 관련 문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 저조로 인한 연례적인 집행부진 상황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이해도 제고 등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해서 향후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부족한 한국전력공사 선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고,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과 연계하자는 정책 제안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⁶⁷⁾되었음.

67) 국회의원 문금주,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례를 통해 본 농촌의 미래’, 「202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25

4)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지원: 은퇴봉사동물 민간입양지원 사업 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은퇴봉사동물 민간입양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인 은퇴한 봉사동물이 노령화될수록 의료비 등 양육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할 경우 은퇴한 봉사동물에 대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동물복지 관련 교육, 홍보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유실·유기동물의 포획과 구조, 입양 등을 지원하며 은퇴 봉사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1,200만원 (1.8%) 증액된 119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음.⁶⁸⁾

【 2026년도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지원	10,948	11,764	11,047 (7,049)	11,976	212	1.8
-은퇴봉사동물 민간입양지원	-	-	-	100	100	순증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8)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지원(3741-338)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은퇴봉사동물 민간입양지원’ 사업은 군견, 경찰견, 탐지견 등 활동 후 은퇴한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양육비(사료비·의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1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국가안보·인명구조 등에 기여하는 봉사동물이 돌봄비용 부담⁶⁹⁾ 등을 이유로 은퇴 후에 민간에 입양되는 비율이 저조한 현실과 기관 보호 시에도 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관리 소홀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연 100마리의 은퇴봉사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사료비 등 돌봄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증빙하면 마리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임.

【 은퇴봉사동물 민간입양지원 사업 내용 】

□ 사업목적

: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자에게 사료비·의료비 등 돌봄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은퇴봉사동물 대상 의료비·사료비 등 돌봄비용 지출 증빙 시 마리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 환급(자부담 40%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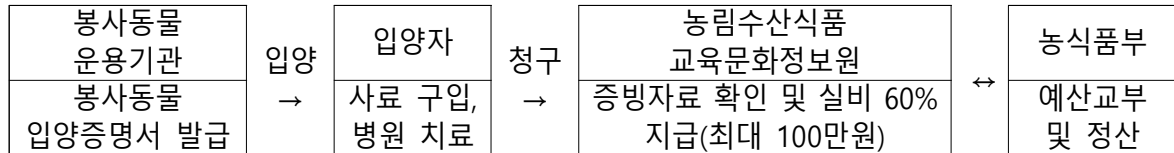
69) 봉사동물 관리기관 설문조사 결과 은퇴 봉사동물 입양 저해 요인으로 동물의 노화·질병(61%), 경제적 부담(23%), 홍보 부족(9%), 기타(7%) 등이 지적

☐ 대상 및 규모

: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자 / 연 100마리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비 60%

☐ 수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2026년 예산 : 100백만원

○ (산출근거) 100마리* × 168만원(14만원**/월×12개월) × 국비 60%

* 연평균 봉사동물 은퇴 현황(174마리)과 훈련 중 탈락률(30%)을 고려하여 책정

** 반려동물 1마리 당 월평균 양육비(출처: '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평균적으로 은퇴하는 봉사동물의 수(174마리⁷⁰⁾)와 훈련 중 탈락률(30%)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100명의 입양자로 하였으며, 은퇴봉사동물 1마리당 지원액은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⁷¹⁾에 따른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병원비 포함) 14.23만원을 12개월로 환산한 168만원의 60%인 100만원을 산정하였음.

70) 최근 5년 평균 은퇴 봉사동물 수는 174마리로 연도별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 124마리 → (‘21) 155 → (‘22) 209 → (‘23) 177 → (‘24) 207

71)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을 질문하여 1마리당으로 환산한 결과, ‘20만원 이상’이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10만원 미만’(23.1%), ‘10~15만원 미만’(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4.23만원으로 조사됨.(농림축산식품부,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25. 1.)

□ 그러나 2024년도 은퇴봉사동물 수는 319마리로, 이 중 민간에 입양된 은퇴봉사동물은 64마리에 불과하며 199마리는 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중이고, 56마리는 사망한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은퇴봉사동물 현황(누적) 】

(단위: 마리)

구분	합계	기관 보호	민간 입양	사망
2024	319	199	64	56
2023	311	166	76	69
2022	342	206	76	60
2021	281	182	65	34
2020	311	176	90	4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따라서 상당수 은퇴한 봉사동물이 기관에서 관리되는 상황을 벗어나 남은 생을 입양되어 보호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은 ① 민간 입양의 초기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단년도로 설계되었으며, ② 동물의료·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일정 부분 민간이 지원하고 수의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진료비·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봉사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은퇴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은퇴한 봉사동물이 노령화될수록 의료비 등 양육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할 경우 은퇴한 봉사동물에 대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입양자나 동물병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가축방역대응지원: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정보 화전략계획(ISP) 및 업무재설계(BPR) 수립 예산 반영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2031년까지 구축하기 위하여 2026년도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내에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업무재설계(BPR) 수립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비,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예방약품·방역장비·소독자원 등에 소요되는 가축방역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2,400만원(△0.8%) 감액된 96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⁷²⁾

【 2026년도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 예산(A)	집행		(B-A)	%
가축방역대응지원	96,547	97,634	83,300 (61,179)	96,810	△824	△0.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72)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가축방역대응지원(3940-335)

나) 검토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축질병 및 가축방역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08년도에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최초 구축하여 2013년도부터 본격 운영⁷³⁾ 중임.

동 시스템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농협 및 민간병성감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① 소독·검사 실적 관리, ② 가금농장 방역점검 결과·백신공급실적 등 예방·예찰·백신, ③ 병성감정의뢰·진단 및 질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④ 가축매몰지 정보관리, ⑤ 축산차량 등록 및 관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시스템은 노후화 문제와 2026년 12월 이후 시스템 단종 및 업데이트 중단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및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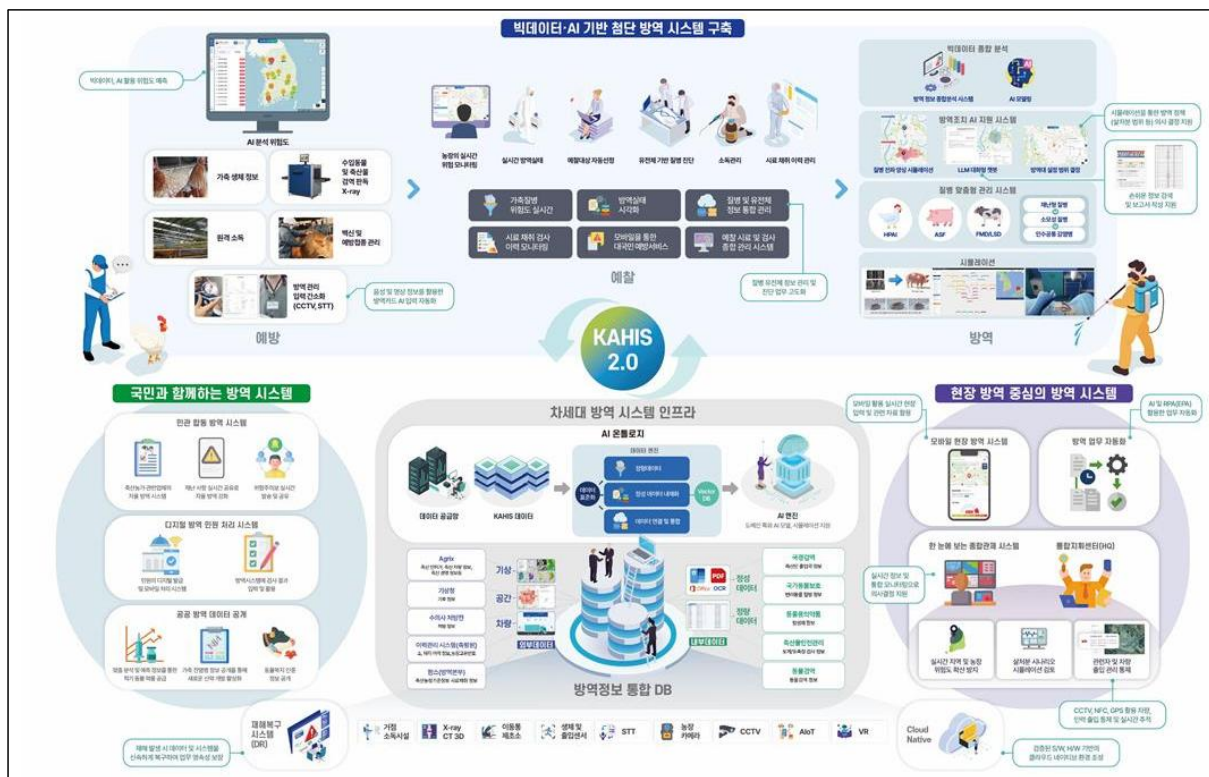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3월 5일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에서 질병 예측 및 분석을 고도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이하 ‘차세대 KAHIS’)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73)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6231-300)

이후 「차세대 KAHIS 구축 추진계획(안)」(2025. 5.)을 통해 2031년까지 사전 예방 중심의 농장 자율방역 체계⁷⁴⁾인 차세대 KAHIS를 구축하기 위하여 약 3,524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음.

구체적으로 차세대 KAHIS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① 공무원 업무용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② 경험에 의존한 방역 조치가 아닌 AI를 통한 빅데이터의 자동 분석 등을 활용하며, ③ 모바일을 활용하여 실시간 현장 방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차세대 KAHIS 구축 모델 】



74)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를 통한 종합 분석 및 실시간 방역정보 관리 등

□ 차세대 KAHIS 구축에는 3,524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업무재설계(BPR)를 통해 업무 개선 전략을 계획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추진 및 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2031년까지 차세대 KAHIS를 구축하는 일정을 제시하고도 2026년도에 예산안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업무재설계(BPR)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따라 차세대 KAHIS의 구축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정한 2031년보다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그 동안에는 노후화된 현행 시스템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임.

【 차세대 KAHIS 구축 추진 일정(안) 】

'26년	'27년	'28년	'29년~'31년
ISP/BPR 사업 추진 차세대 KAHIS TF 구성 및 운영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및 조직 신설 검토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사업 추진	차세대 KAHIS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차세대 KAHIS를 2031년까지 구축하기 위하여 2026년도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내에 차세대 KAHIS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업무재설계(BPR) 수립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용자):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항원생산시설 구축 및 시험백신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관리·감독을 하는 한편, 향후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사업에서 이와 같은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용자) 사업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및 수출업체 운영지원을 통하여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6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⁷⁵⁾

【 2026년도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용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 예산(A)	집행		(B-A)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용자)	7,088	6,624	4,326 (4,326)	6,624	-	-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3,288	2,824	526 (526)	2,824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75)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용자)(3940-35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사업은 동물용의약품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조 시설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8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2개소에 지원할 예정임.

【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사업 개요 】

- (사업내용) 동물용의약품 우수제조시설(GMP) 및 시험(연구)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를 위한 건물, 장비 등 시설비 융자 지원
- (지원형태) 융자70%, 자부담 30%
* 연리 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 (사업대상)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 (2026년도 예산안) 28억 2,400만원
* 2,017백만원 × 융자 70% × 2개소 = 2,824백만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연도별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사업 지원 내역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안)
개소	2	6	3	2	2	2
지원총액	4,350	10,582	1,162	3,288	1,888(10월) 3,349(예정)	2,82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여 2025년 현재에도 백신 제조 등의 사업 성과가 나오지 못한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을 전량 수입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수입을 대체하고 국내 맞춤형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2017년도부터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사업을 통해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착수하였음.

【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내용) 구제역백신 제조시설 건축(2가 백신 기준 5천만두/년, 충북 오송)
- (사업기간) ('17) 사업자 선정 → ('18~'21) 설계 → ('22~'28) 건축·설비
 - * '21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이었으나 외국 기업과의 기술제휴 지연 등으로 기간 연장
- (사업비) 590억원
 - * 용자390억(정부103, 금융권287), 자부담200억(FVC 102, 바고社 98)
- (지원조건) 용자 70%(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30%⁷⁶⁾
- (사업자) (주)에프브이씨(FVC, FMD Vaccine Company)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그러나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사업은 2017년 사업 시작부터 사업 예산의 상당액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음.

76) 당초 지원조건은 용자 70%, 자부담 30%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이후 최종적인 용자비율은 17.5%임 (590억원 중 103억원).

【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사업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이·불용 사유
2017	1,193	-	1,193	-	1,193	-	'17. 9.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이월
2018	18,814	1,193	20,007	1,193	18,814	-	외국 기업(M社)과의 기술제휴 협상 지연으로 이월
2019	4,706	18,814	23,520	-	4,706	18,814	외국 기업(M社)과의 기술제휴 협상 지연으로 이월·불용
2020	310	4,706	5,016	-	-	5,016	다른 외국기업(B社)과 MOU 체결('20.10월) 후 설계와 생산장비 재검토로 인해 건축공사가 늦어져 불용
2021	9,114	-	9,114	1,350	7,764	-	외국 기업(B社)과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등 검토로 건축공사가 늦어져 이월
2022	-	7,764	7,764	7,764	-	-	-
2023	-	-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에 2021년까지 동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도에 기술이전 문제로 해외협력사를 변경(메리알→바고)하면서 일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023년도에 건축물을 완공한 후에는 사업자와 해외협력사 간 백신 생산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으로 항원생산시설 구축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 건축물 완공 후 2년이 지난 2025년 7월에야 사업자와 해외협력사

간 백신 생산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업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2025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변경된 사업 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에 항원생산시설 구축을 시작하고 2028년 7월에 시험백신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사업 주요 경과 】

-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17.4.)
 - 제조시설 구축 후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 '24년 국내 생산 목표
- 사업자(FVC) 선정('17.9.) 후 기술이전 협상 난항으로 협력사 변경(메리알→바고, '21년)
- 협력사 변경 후 충북 오송에 건축물 완공('23.8.)
- 사업자(FVC)와 해외협력사(바고) 간 백신 생산 우선순위 등 관련 협의 진행(~'25.4)
- 사업자와 해외협력사 간 백신생산 일정 합의('25.5.) 및 사업 변경 계획(안) 제출('25.7.)
 - 항원생산시설 구축 착공('26.12.), 시험백신 생산('28.7.)
-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타당성 검토 후 사업 계획 변경 승인('25.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한편, 동 사업의 지연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구제역 백신을 개발⁷⁷⁾하였음에도 이를 상용화하지 못해 연구성과를 발전시키지 못한

77) 우리나라의 구제역 백신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백신 개발 개요)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국내 사용중인 수입 불활화 백신을 대체하고자 (주)FVC와 개발하여 왔으며, 국내 3개 산업체가 재조합 백신을 개발중에 있음
- (정부 차원 개발 현황)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 구제역 불활화 백신(근육용) 개발하고, (주)FVC는 단계적으로 백신 기술이전 진행 중
 - 검역본부와 (주)FVC간 업무협약 체결('18.7.12), 구제역 백신주(종자바이러스) 총 17종* 개발 및 4종** 기술이전
 - * O형 7종, A형 3종, Asia1형 3종, SAT 1-2-3형 각 1종, C형 1종
 - ** O형 보은주, O형 PanAsia 2(R), A형 연천주, A형 A22 Iraq(R)
 - 백신 효능 개선을 위한 신개념 백신 원천기술 개발 등 백신 고도화 추진중

상황임.

- 동 사업은 국가 방역체계의 자립과 안정적 백신 수급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차질과 사업자·해외협력사 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국산 백신 공급체계 구축이 지연되었으며, 해외 백신 의존으로 예산 2,865만 달러 이상의 외화가 유출되며,⁷⁸⁾ 가격 변동이나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산 백신 기술의 산업화 및 수출 기반 조성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항원생산시설 구축 및 시험백신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임.

또한, 향후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사업에서 이와 같은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지역형을 동시에 방어하는 광범위 백신주 개발
 - 집중부위 이상반응(이상육) 억제를 위한 피내집중용 백신 개발
 - 숙주의 면역체계를 개선하는 면역강화제*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 패턴-인식 수용체, 사이토카인, 선천성 면역세포 작용제 및 점막 면역 유도제 등

78) 최근 5년간 구제역 백신 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제역 백신 연도별 수입금액(단위: 천달러) 】

('20) 28,398 → ('21) 22,070 → ('22) 29,484 → ('23) 32,420 → ('24) 28,645

7) 국립농업박물관운영: 인건비 처우개선 미반영분 검토 필요

- 정부의 2026년도 인건비 처우개선 공통기준인 3.5% 인상이 국립농업박물관의 인건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처우개선 공통기준 인상분 3억 1,4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립농업박물관운영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교육·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00만원(△0.5%) 감액된 17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⁷⁹⁾

【 2026년도 국립농업박물관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 예산(A)	집행		(B-A)	%
국립농업박물관 운영	18,039	17,406	-	17,310	△96	△0.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79)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국립농업박물관 운영(4130-427)

나) 검토의견

□ 국립농업박물관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2022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특수법인(비공공기관)으로 농식품부로부터 인건비,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받는 출연기관임.

□ 국립농업박물관의 2026년 인건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한 125인 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 등 총 89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국립농업박물관 인건비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국립농업박물관운영		18,039	17,406	17,310	△96
	인건비	8,739	8,991	8,991	-
	사업비	4,261	<u>3,628</u>	3,772	<u>144</u>
	기관운영비	5,039	<u>4,787</u>	4,547	<u>△240</u>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는 정부의 공통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⁸⁰⁾ 이에 따른 정부의 2026년도 인건비 처우개선 공통기준은 3.5% 인상임.

80)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5. 5., p.23)

□ 국립농업박물관 예산안에 인건비 처우개선이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처우개선분인 3.5% 증액이 반영되었어야 하나,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전시·교육·체험 등 국립농업박물관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비공공기관의 인건비를 확인해보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2026년 예산안에 처우개선이 반영되었으며,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성과급을 반영하여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됨.

이에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립농업박물관의 인건비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보임.

[유사 기능 수행하는 정부출연·보조기관 인건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증감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B-A	비율
국립세계문자박물관	6,035	6,246	211	3.5%
국립박물관단지	3,273	3,646	373	11.4% (증원 포함)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2,155	2,231	76	3.5%
국립인천해양박물관	6,224	7,404	1,180	19%
국립농업박물관	8,991	8,991	0	-

※자료: 각 관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참조

- 따라서, 국립농업박물관의 2026년도 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정부의 공통기준인 3.5%를 반영한 3억 1,400만원⁸¹⁾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국립농업박물관의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것과 달리 2025년도의 경우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5,200만원(2.8%)이 증액되었음.

81) 8,991백만원(2025년도 인건비) × 3.5%(처우개선분) = 3억 1,469만원

8)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절차 및 관리·감독 등 의무 준수 필요

- 농식품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하도록 내부절차 및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억 3,400만원(48.3%) 증액된 9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⁸²⁾

【 2026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 예산(A)	집행		(B-A)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4,300	6,500	-	9,640	3,140	48.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82)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4135-397)

나) 검토의견

- 2025년 기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51~70세 여성농업인의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 농업 특화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 】

구 분	내 용
실 시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목 적	여성농업인 직업 질환 검진
대상자	51~70세 여성농업인
검진 주기	2년 마다
검진 항목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골절 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활량검사
비용 부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농림축산식품부, '25.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혁]



※자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5.1.)

- 2026년 예산안은 여성농업인 80,000명의 검진비 86억 4,000만원과 검진관리비 10억원으로 총 9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5년보다 검진대상자를 30,000명 확대한 것임.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산출내역 】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검진관리비: 10억원	○ 검진관리비: 10억원 (전년동)
○ 검진비: 55억원 = 50,000명 × 220천원 × 50%	○ 검진비: 86억 4,000만원 (31억 4,000만원 증) = 72,000명 × 220천원 × 50% + 8,000명 × 180천원 × 50%

- 최근 국가기관 등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체계 마련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뿐만 아니라 민감정보인 검진결과까지 처리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안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⁸³⁾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83)「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 위탁시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문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⁸⁴⁾를 부과함.

□ 그러나, 그동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보조사업자는 ○○소프트와 계약을 통하여 검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 및 보관하도록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⁸⁵⁾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안전성 확보 및 보호조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마련, 접속기록 보관·점검 및 정기적 교육 등의 의무⁸⁶⁾를 이행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개인정보 보호조

84)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85)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별표 9)

8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3. 9. 22.)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동 기준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30조, 제30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예시) 】

의무사항	근거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3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3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월 1회 이상 접속기록 점검, 접근권한 관리·통제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보조치 기준」
수탁자 교육 및 감독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따라서, 농식품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하도록 내부절차 및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재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가. 개 요

□ 20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30억 임.

【 202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430	430	-	-
투자계정 소계	210	210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	1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09	209	-	-
용자계정 소계	220	220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	5	-	-
○ 용자원금회수	215	215	-	-

□ 202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억원) 증가하였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보조)가 전년 대비 1.8%(3억원) 증가한 168억원임.

【202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65	168	3	1.8
투자계정 소계	165	168	3	1.8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보조)	165	168	3	1.8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가. 개 요

- 2026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4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2.4%(11백만원) 증가하였음.

【 2026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34	45	11	32.4
○ 건물대여료	34	45	11	32.4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3%(75억원)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억 원)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35	110	75	214.3
지역자율계정 소계	31	106	75	241.9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	7	4	133.3
○ 기타경상이전수입	28	99	71	253.6
지역지원계정 소계	4	1	△3	△75.0
○ 기타경상이전수입	4	1	△3	△75.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소계	-	3	3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	3	3	순증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5.8% (4,872억원) 증가한 1조 8,496억이 편성되었음.

계정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자율계정은 전년보다 36.7%(2,607억원) 증가한 9,715억원, 지역지원 계정은 전년보다 35.0%(2,221억원) 증가한 8,562억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전년보다 24.7%(39

억)이 증가한 197억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전년보다 27.8%(5억원) 증가한 2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억원)

사 업 명	'25년 예산(A)	'26년 예산안(B)	증감	
			(B-A)	%
총 계	13,624	18,496	4,872	35.8
<지역자율계정>	7,108	9,715	2,607	36.7
○ 일반지출	7,108	9,715	2,607	36.7
<지역지원계정>	6,341	8,562	2,221	35.0
○ 일반지출	6,341	8,562	2,221	35.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58	197	39	24.7
○ 일반지출	158	197	39	24.7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8	23	5	27.8
○ 일반지출	18	23	5	27.8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효과 및 재정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등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규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업효과, 재정부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안 편성 절차 특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등이 절차에 따라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계획 수립 등의 준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공익기여 행위에 대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1,703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⁸⁷⁾

【 2026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	-	170,337	170,337	순증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87) 회계(기금)-세부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4135-300)

나) 검토의견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군 단위)에 주민 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 사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임.
- ☐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23.7만명에게 12개월 동안 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700억원과 운영비 3억 3,700만원으로 총 1,703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예산안
1,703억 3,700만원 ○사업비: 1,700억원 = 23.7만명 × 15만원 × 12개월 × 40%(국비지원율) ○운영비: 3억 3,700만원

(1)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 ☐ 최근 농어촌 지역은 읍·면 단위에서 3천명 이하로 과소화되는 지역이 증가⁸⁸⁾하고 있고, 농어촌의 고령화⁸⁹⁾가 심화되는 등 소멸 위기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교육시설 및 상권 부족 등으로

88) 과소화(인구 3천명 이하) 읍·면 : ('00) 458개(전체 읍면의 32%) → ('25) 731개(52%)

89) 고령화율(통계청): ('00) 14.6%(읍 9.5%, 면 18%) → ('23) 26%(읍 19%, 면 33%)

농어촌 지역의 주민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첫째,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가처분소득 증대는 농어촌 정주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의 농어촌 정주에 따른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촌공동체의 소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임.

둘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기본소득의 지급으로 지역경제의 소비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상권을 유지하고 지역내 경제활동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임.

셋째,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보장을 통해 농어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식량공급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점임.

□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사업의 지원금인 월 15만원이 농어촌 주민의 정주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실질적 유인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실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5년 간 실시 중인 경기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이지만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임.⁹⁰⁾

둘째, 기본소득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전으로 국가의 재정여력이 감소하여 농어업의 혁신이나 농어촌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기반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셋째, 동 사업을 현재의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매년 4조 9,010억원⁹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90) 연천군 청산면 인구변화

(사업도입 전 '21.12.) 3,895명 → ('22) 4,217명 → ('23)4,176명 → ('24)4,068명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II-1)」(농림축산식품부, 2025. 9.)

91) 현 지급액(1인당 15만원)을 기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대상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매년 4조 9,010억원**(국비 1조 9,604억원, 지방비 2조 9,4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농식품부 제출자료)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인구수 2,722,806명(2025년 4월 기준)

넷째,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군 단위로 설정하여, 도농복합시에 소속된 읍·면 등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어도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⁹²⁾와 특정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의 실시로 시범사업지가 인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를 흡수하여 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동 사업은 위와 같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2026년 및 2027년 2개년에 걸쳐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실험을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동 사업의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임.

(2) 예산안 편성절차 준수 필요성

-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편성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⁹³⁾에 따른 예산편성 절차

92) 예시로, 지원대상에 해당 특정 읍은 인구수가 3만명 이상이나, 특정시에 소속된 면은 지원대상이 안되지만 대부분 인구수 3천명이 안되는 상황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토론회(신정훈·이개호·임미애의원 공동주최, '25.10.)

9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의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생략)

상의 특례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동 법의 특례절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월 30일까지 예산신청서를 받은 후, 예산신청서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에 기초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⁴⁾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임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신청서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편성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요 및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수렴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이 2025년 9월말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10월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계획 수립 등의 준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봄.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동 사업이 긴급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었고, 새정부 출범시기(6월) 및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기간(6~8월) 등을 고려 시 예산편성 특례절차 등의 기한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94) 한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은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도 예산에 계상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에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19회의 대면협의 및 수시
유선협의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절차와 지방시대
위원회 의견 반영 등을 보완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함.

(3) 성과지표의 목표 적정성 검토 필요

- ☐ 동 사업은 성과지표로 ①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 완화율 5% 이상,
② 사업자 등록수 증가율 1% 이상을 설정하고 있음.

【 2026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	2026년 목표	측정산식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 완화율	5%	$[(\text{시범사업 대상지역 인구증감률} - \text{인구감소지역 69개군 인구증감률}) / \text{인구감소지역 69개군 인구증감률}] \times 100 \geq 5\%$
사업자 등록수 증가율	1%	시범사업 대상지 최근 3년 평균 대비 +1%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II-1)」(농림축산식품부, 2025. 9.)

- ☐ 그러나, 위 성과지표는 그 측정대상과 목표가 다소 미흡하게 설정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먼저, 인구감소세 완화율과 사업자 등록수는 동 사업의 목적인 주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검증하기에는 다소 단편적인 지표로 보임.

특히, 사업자 등록수는 지역 내 창업 및 폐업 현황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이는 1인 사업자·법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등록 건수에 불과하여, 실제 고용 창출·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로 보임.

또한, 주민등록 인구감소세 완화율은 작은 변화에도 수치 변화가 크도록 산식이 설계되어 있어, 실제 인구 변화에 비해 지표상 변화가 과도하게 민감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아래 예시에서 보듯이, A지역과 B지역은 인구 변화 폭이 35명 차이에 불과하지만 감소세 완화율은 5%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계산됨. 이처럼 소규모 인구 변동에도 지표 값이 과도하게 변화할 수 있어, 실제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지역	사업 시행전	사업 시행후	인구 변화	증감률 (A)	감소세완화율 (A-B/B)
A 지역	40,000인	39,315인	685인 감소	-1.713%	-2.61%
B 지역	40,000인	39,350인	650인 감소 *A지역과 35인 차이	-1.625%	+2.64%
69개시 평균 인구증감률(B)				-1.669%	A와 B지역 5% 이상 차이

*설명을 위하여 가상의 숫자를 사용함

□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그 목적을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인구 변동 및 사업자 등록수 변동 외에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변화(예: 가구소득, 지역 만족도 등), 지역경제의 실질적 활성화 지표(예: 고용률, 사업체 생존율, 지역 내 소비지출 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농촌경제활성화지원: 창업공모전 등의 중복 최소화 필요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계정 이관 필요

- 동일 부처 내 유사 창업공모전 및 창업지원사업이 이중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중복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의 기존 창업지원사업에 ‘농촌지역 활성화’ 분야를 신설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 편성되어 있으나, 지역자율계정 특성상 중앙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강제할 수 없고, 공모전 수상자의 지역을 사전에 특정할 수 없어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 소관을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은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기반을 다각화하고, 생활인구 유치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7억 2,900만원이 감액된 22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⁹⁵⁾

【 2026년도 농촌경제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자율)	13,631	11,793	11,793	10,764	△1,029	△8.7
□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지원)	10,847	12,467	12,467	11,767	△700	△5.6
계	24,478	24,260	24,260	22,531	△1,729	△7.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5) 회계(기금)-세부사업: 지특회계-농촌경제활성화지원(자율)(4130-300),

회계(기금)-세부사업: 지특회계-농촌경제활성화지원(지원)(4130-30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은 202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농촌지역 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촌에서의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임.

단계별로는 ①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공모 및 수상하고, ② 우수 수상자를 대상으로 창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③ 농촌창업가 간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하여 협업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 개요 】

내내역사업	사업 내용
①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재해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u>아이디어 공모 및 상금 수여</u>
②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농촌지역 내 창업·정착한 도시 청년팀(창업 2년 이상)을 대상으로 <u>후속 성장 자금 지원</u> * ‘26년부터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와 연계하여 수상자 대상 사업화자금 지원 예정
③ 농촌산업 혁신 지원	농촌혁신 <u>창업가 간 자유로운 네트워킹의 장 마련</u> 을 통한 지속적인 협업 및 상호 교류의 기회 제공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며, 농촌 혁신 아이디어 콘테스트 2억 2500만원,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확산 4억 5,000만원, 농촌창업가 간의 네트워킹지원 2억 2500만원으로 총 9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의 2026년 예산안 편성내역 】

내내역사업	2026년 예산안	편성내역	회계구분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2억 2,500만원 (국비 100%)	수상자 11팀에 대한 상금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4억 5,000만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9개 팀 x 5,000만원	지특회계 <u>지역자율계정</u>
농촌산업 혁신지원 (농촌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3억원 (국비 100%)	총 35인 창업가에 대한 지원비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합 계	9억 7,500만원	-	-

※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확산’은 2025년까지 농특회계에서 편성되었으나, 2026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편성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유사 창업 콘테스트 및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필요

- 동 내역사업의 하위 내역사업인 ‘농촌 혁신 아이디어 콘테스트’ 역 사업은 전국 단위 공모전(창업 아이디어 대회)을 통하여 농촌의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수상하려는 것으로, 수상자에게는 다른 하위 내역사업인 ‘농촌 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에 따라 후속적인 창업화 자금이 지원됨.

【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의 공모전 및 창업지원 】

①공모전		⇒	②창업 지원	
사업명	농촌 혁신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업명	농촌 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주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주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원 대상	· 예비 창업자(대학생) · 7년 이내 창업자		지원 대상	·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수상자(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자)
분야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사업아이디어		분야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사업아이디어
지원 내용	· 농식품부장관상 등 11점 총 상금 1억 3500만원		지원 내용	· 창업자금 지원 (기업당 1억원)
비고	· 후속 창업지원사업 연계		비고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현재 농식품부 내에서는 농식품 전·후방 분야를 망라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상자에 대한 창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음.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25년에는 우수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한 10팀에 대하여 상금을 총 1억 2천만원 수여하였고, 수상자에게는 창업지원 사업 선발에 우대(가산점 부여)하였음.

또한, 후속적인 창업지원을 위하여 2025년에 농식품 유관분야 380개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 중 공모전 및 창업지원 현황 】

①공모전		⇒ 수상자는 창업지원 사업 가점	②창업 지원	
사업명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사업명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주관 (소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주관 (소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지원 대상	· 예비 창업자 · 7년 이내 창업자		지원 대상	· 예비 창업자 · 5년 이내 창업자
분야	전·후방 농산업 관련 분야		분야	전·후방 농산업 관련 분야
지원 내용	대통령상 등 10점 총 상금 1억 2,000만 원		지원 내용	· <u>창업자금 지원</u> -창업기업 3,000만원, 예비창업 1,000만원, 첨단기술기업 3억원 *우수기업 추가 지원
비고	· 후속 창업지원사업 선 정시 가산점 부여		비고	· 국비 70%, 자부담 3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농촌 혁신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업은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에 관광 등의 수요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의 목적 및 내용에 차별점이 있다고 보이나, 그럼에도 기존

농식품 전·후방 분야에 대한 창업지원사업과 일정 부분⁹⁶⁾ 중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동일 부처 내 유사 창업공모전 및 창업지원사업이 이중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며, 이원적 추진으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양 사업 간의 지원금액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창업지원사업 간 중복지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농촌 혁신 아이디어 콘테스트’ 및 ‘농촌 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은 농식품부의 기존 창업지원사업에 농촌지역에 대한 분야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가능해 보임.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 관련 문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① 지역자율계정, ② 지역지원계정,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계정별 편성절차를 살펴보면, ①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 자율편성에 의한 포괄보조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시·도 및 시·군·구 포괄보조사업 중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지자체별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96)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제조한 식품 등

- ② 지역지원계정은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중앙 부처가 각 시·도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요구내용을 조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
-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④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지자체 자율편성사업과 부처 직접편성사업이 혼재되어 있음.

□ 하위 내역사업인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은 2025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운영되어 오다 2026년 예산안부터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전국 단위 공모전(창업 아이디어 대회)을 통하여 선정된 수상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가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되기 때문에 수상자 및 사업 추진 지역을 예산안 편성 당시⁹⁷⁾에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음.

【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내역사업 2026년 예산안 현황 】

내내역사업	2026년 예산안	내역	회계구분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4억 5,000만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9개 팀 x 5,000만원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II-1)」(농림축산식품부, 2025. 9.)

9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30일까지 예산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에게 제출해야 함.

□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안과 같이 동 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자율적으로 요구·편성해야 하는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는 해당 사업지가 어느 곳일지 예측하여 예산안을 반영하기 곤란하고, 지자체가 자율편성한다는 계정 특성상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봄.

(3) 농촌산업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

□ 하위 내역사업인 ‘농촌산업 혁신지원’ 사업은 30인의 창업가에게 5인의 멘토를 지정하여 자율적인 협업 및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2025년에는 30인의 창업가와 5인의 멘토로 구성된 농촌혁신 네트워크 제1기를 모집하여 멘토링시스템을 운영하고, 2박 3일간의 워크숍 운영, 멘토링 후속 결과 보고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임.

□ 동 사업은 그동안의 정형화된 지원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여 농촌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창업가 1인당 1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임에도, 성과 목표와 관리·감독 체계가 확인되지 않아, 자칫 상호교류 지원경비인 연회비 등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봄.
- 동 사업의 2025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8월에 대상자를 모집 완료한 이후, 11월에 2박 3일의 캠프를 운영하고, 팝업 스토어 운영지원 및 간담회 등 후속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이나, 10월말 현재까지도 확인되는 활동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동 사업이 그 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량적인 사업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추적 및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가. 개 요

- 20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억원) 증가하였음.

【20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57	159	2	1.3
○ 영농아카데미	157	159	2	1.3

7. 양곡관리특별회계

가. 개 요

- 2026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6,1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1,808억 원) 감소하였는데, 주된 감소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감소에 따른 것임

【 2026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억 원)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27,925	26,117	△1,808	△6.5
○ 양곡사업수입	4,789	6,508	1,719	35.9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1	70	59	536.4
○ 기타경상이전수입	66	266	200	303.0
○ 잡수입	28	42	14	50.0
○ 전입금	22,715	18,560	△4,155	△18.3
○ 세계잉여금이입액	317	672	355	112.0

□ 2026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6,1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1,808억 원)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액사유로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이 전년 대비 7.6%(1,318억 원) 감액 및 수입양곡대 사업이 전년 대비 7.4%(440억 원)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임.

【 2026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억 원)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27,925	26,117	△1,808	△6.5
○ 정부양곡매입비	17,322	16,004	△1,318	△7.6
○ 수입양곡대	5,922	5,482	△440	△7.4
○ 정부양곡관리비	4,561	4,495	△66	△1.4
○ 쌀소비기반구축	120	136	16	13.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쌀 소비기반구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홍보 필요성에 따른 적정규모의 홍보예산 운영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내역사업에서 사업홍보 필요성에 따른 홍보예산의 적정규모를 점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쌀 소비기반구축」 사업은 주곡인 쌀의 수급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등 소비기반을 강화하고 신수요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6,300만원(13.0%) 증액된 136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⁹⁸⁾

【 2026년도 쌀 소비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집행		(B-A)	%
쌀 소비기반구축	14,760	12,043	10,189 (8,791)	13,606	1,563	13.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8) 회계(기금)-세부사업: 양곡관리특별회계-쌀 소비기반구축(2131-369)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8,200만원(19.1%) 증액된 11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적으로는 ① 식비 지원 목적으로 108억원, ② 홍보 및 운영비 목적으로 3억 2,600만원이 각각 편성됨.

【 천원의 아침밥 내역사업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

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총계	93억 4,400만원	111억 2,600만원
- 식비 지원	90억원	108억원
	- 450만명×2천원=90억원	- 540만명×2천원=108억원
- 홍보 및 운영비	3억 4,400만원	3억 2,600만원
- 온·오프라인 홍보	1억 100만원	9,384만원
- 서포터즈 발대식 및 교육	1,400만원	1,400만원
	- 2회×700만원=1,400만원	- 2회×700만원=1,400만원
- 서포터즈 활동비	5,200만원	4,800만원
	- 130개교×40만원=5,200만원	- 120개교×40만원=4,800만원
- 권역별 간담회 등 성과점검 회의	4,000만원	4,000만원
- 우수사례 선정 및 사례집 제작	3,000만원	2,800만원
-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6,700만원	6,500만원
- 설문조사 및 분석	4,000만원	3,724만원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사업설명자료(Ⅱ-1)를 재가공

- 2017년 10개교, 14만명 대상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높은 수요와 참여에 따라 2023년부터 지원대상 학교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2025년 현재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인원이 208개교, 469만명에 이르고 있음.

【 천원의 아침밥 내역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24	'25(p)
지원규모(개교)	10	21	16	14	26	28	144	190	208
지원인원(만명)	14	27	37	12	35	49	233	393	469
소요예산(백만원)	240	250	420	309	445	570	2,371	8,116	9,727
지원단가(원)	240	55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	2,0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그런데, 동 내역사업은 사업대상자의 만족도도 높고 사업수요도 증가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사업 초기와 같은 홍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저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의 규모가 오히려 증가하여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참여학교 증가에 따라, 선정된 대학생으로 하여금 교내·외 홍보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는 ‘서포터즈’ 제도의 예산을 2024년 예산부터 1천만원대에서 6천만원대로 증액하였고, 2026년 예산안에도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포터즈 제도는 이미 일부 대학에서만 운영되고 중복 콘텐츠가 누적되는 운영상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2024년부터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로 개편되었으므로, 예산안의 세부 산출내역을 실제 집행 계획과 일치하도록 제출하는 한편 예산 소요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천원의 아침밥 서포터즈 및 옴부즈맨 제도 비교 】

구분	천원의 아침밥 서포터즈	천원의 아침밥 옴부즈맨
운영연도	2020년 ~ 2023년	2024년 ~
참여대상	서포터즈 <u>선정 학생</u> ※ 2023년: 70개교 70명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u>모든 학생</u>
참여방법	월 1회 미션 부여 및 참여 ※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① 현장 비치 QR코드를 통해 식단만족도 등 의견 제시, ② 쌀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커뮤니티 활동 이벤트 참여
주요성과	콘텐츠 210회 업로드, 우수 서포터즈 6인 선정	(’24년) 190개 대학 15,879명 참여, 사업만족도 향상(87.4점→95.8점)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에 옴부즈맨 제도 관련 예산⁹⁹⁾을 대부분 홍보 성격이 강한 공식 SNS 채널 운영, 매체 광고,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옴부즈맨 참여 유도 이벤트에 집행하였으나, 옴부즈맨 제도가 사업의 홍보보다는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예산 소요의 재점검 과정에서는 홍보성 예산 외에 실제로 옴부즈맨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99) ① 공식채널 운영 3,150만원, ② 커뮤니티 기획기사 등 매체 광고 1,400만원, ③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1,000만원, ④ 옴부즈맨 참여 유도 이벤트 1,250만원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내역 사업에서 사업홍보 필요성에 따른 홍보예산의 적정규모를 점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가. 개 요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4,503억원(17.3%) 증가한 3조 481억원임.

□ 202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자체수입으로 2조 4,518억원, 여유자금 회수로 3,923억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40억원 등을 통해 총 3조 481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종자산업 진흥 등을 위한 각종 기금사업으로 2조 5,21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으로 201억원 예수이자 상환하고, 여유자금 5,068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5계획		'26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 입	1. 자체수입	23,608	23,608	24,518	910	3.9
	○ 재산수입	131	131	202	72	55.0
	○ 경상이전수입	1,311	1,311	1,316	5	0.4
	- 법정부담금	575	575	575	-	-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735	735	741	5	0.7
	○ 관유물매각대(농산물판매 등)	7,410	7,410	7,410	-	-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4,756	14,756	15,589	833	5.6
	2. 정부내부수입	-	1,277	2,040	2,040	순증
	○ 특별회계전입금	-	-	2,040	2,040	순증
	○ 공자기금예수금	-	1,277	-	-	-
	3. 여유자금회수	2,370	2,370	3,923	1,553	65.5
수입 계		25,978	27,255	30,481	4,503	17.3
지 출	1. 일반지출	21,896	23,158	25,212	3,315	15.1
	○ 사업비	21,303	22,565	24,584	3,281	15.4
	- 농식품수출촉진	4,582	4,623	5,100	518	11.3
	- 식품산업육성	1,634	1,834	1,434	△200	△12.2
	-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8,509	9,530	9,379	870	10.2
	- 농산물유통개선	5,228	5,228	6,272	1,044	20.0
	- 소비지유통활성화	663	663	450	△213	△32.1
	- 농산물소비활성화 및 식생활개선	-	-	1,213	1,213	순증
	- 농식품품질관리	-	-	51	51	순증
	- 종자수급조절	687	687	685	△2	△0.3
	○ 기금운영비	593	593	627	34	5.7
	2. 정부내부지출	159	174	201	42	26.4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59	174	201	42	26.4
	3. 여유자금운용	3,923	3,923	5,068	1,145	29.2
지출 계		25,978	27,255	30,481	4,503	17.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비축지원: 긴급가격안정자금의 실제 집행내용에 부합하는 비목 편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속하여 긴급가격안정자금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실제 집행내용을 반영하여 저장품매입비 외의 다른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비축지원」 사업은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당초 계획액 대비 858억 6,200만원(10.6%) 증액된 8,983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¹⁰⁰⁾

【 2026년도 비축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계획(7월기준)			'26 계획안(B)	증 감	
		계획(A)	수정	집행		(B-A)	%
비축지원	811,933	812,532	914,652	501,960 (425,929)	898,394	85,862	10.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00)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비축지원(3031-323)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농산물을 수매 또는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유형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의 저장품매입비(430-02목)로 편성되며,

2026년 예산안의 경우 8,983억 9,400만원인 전체 사업예산 중 8,354억 4,400만원(93.0%)이 다음과 같이 저장품매입비로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의 2025년 및 2026년 저장품매입비 산출 세부내역 】

구분	2025년 계획(당초)	2026년 계획
수매비축	251,696백만원	392,822백만원
	- 두류: 153,180백만원 - 고추: 20,468백만원 - 마늘: 11,683백만원 - 양파: 12,765백만원 - 배추: 12,774백만원 - 무: 5,280백만원 - 밀: 33,858백만원 - 감자: 1,688백만원	- 두류: 314,966백만원 - 고추: 10,502백만원 - 마늘: 8,309백만원 - 양파: 4,203백만원 - 배추: 14,529백만원 - 무: 3,509백만원 - 밀: 33,158백만원 - 감자: 3,646백만원
수입비축	491,054백만원	435,622백만원
	- 콩: 177,767백만원 - 팔: 52,567백만원 - 참깨: 217,059백만원 - 고추: 15,782백만원 - 마늘: 11,297백만원 - 양파: 11,373백만원 - 감자: 5,209백만원	- 콩: 159,911백만원 - 팔: 48,356백만원 - 참깨: 197,719백만원 - 고추: 17,097백만원 - 마늘: 2,630백만원 - 양파: 6,776백만원 - 감자: 3,133백만원
긴급가격안정자금	7,000백만원	7,000백만원
계	749,750백만원	835,444백만원

* 주: 2025년의 경우 두류(콩) 수매비축액 증액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음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저장품매입비 편성액 중 구매비축·수입비축 외의 예산인 70억원의 긴급가격안정자금은 가격 급락, 출하 과잉 등 농산물 전체의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매입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긴급한 수급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물가안정 및 시장격리 차원에서 품목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임.

□ 그런데, 최근 3년간 긴급가격안정자금 예산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저장품 매입에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① 납품단가 지원사업, ② 할인지원 사업, ③ 재배면적 확대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급조절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긴급가격안정자금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집행액
2023년	여름배추 재배면적 확대 관련 비용	3,601
	가을배추 시장격리 비용	399
	배추 소비자할인지원 사업 비용	1,921
	집중호우 피해 채소류 출하제비용	592
	겨울당근 수급안정사업 비용	290
	양파 소비자할인지원사업 비용 등	1,876
	생강, 대파 소비자할인지원사업 비용	1,310
	소계	9,989

연도	사업내용	집행액
2024년	납품단가 지원사업	85,181
	과일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과일 직공급 지원사업	24,024
	봄·여름배추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 저장 지원 등	804
	조생종양파 출하장려비	535
	마늘 출하연기 사업	19
	소계	110,563
2025년	시금치(시설) 재배면적 확대 지원 사업 지원금	63
	소계	63

* 주: 2024년은 납품단가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871억원) 및 예비비(115억원) 편성 등으로 증액 집행하였음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와 같은 긴급가격안정자금 예산의 집행은 민간 저장, 출하지원 등 비축사업과의 관련성이 일부 인정되는 측면도 있으나, 저장품 매입비 비목의 편성 목적에 맞지 않은 집행에 해당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속하여 긴급가격안정자금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실제 집행내용을 반영하여 저장품매입비 외의 다른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유사 시스템 간 통합·조정 계획 마련 검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기능이 유사한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농넷)과 KAMIS를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사업은 농산물 수급, 도소매 가격정보 및 유통실태조사 등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00만원(2.5%) 증액된 42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¹⁰¹⁾

【 2026년도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계획(7월기준)		'26 계획안(B)	증 감	
		계획(A)	집행		(B-A)	%
농산물유통소비 정보조사	4,262	4,146	3,316 (1,619)	4,248	102	2.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01)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3031-324)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급정보조사’ 사업은 주요 농산물 수급정보의 생산 및 전파를 통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5조의3¹⁰²⁾에 따른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농넷)의 운영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게 위탁하고 있음.

□ 한편,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국내가격정보조사’ 사업은 농수산물 도·소매가격 등을 수집·제공하여 시장거래주체의 의사결정 및 합리적 소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에 대한 운영·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10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 수산물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농넷 · KAMIS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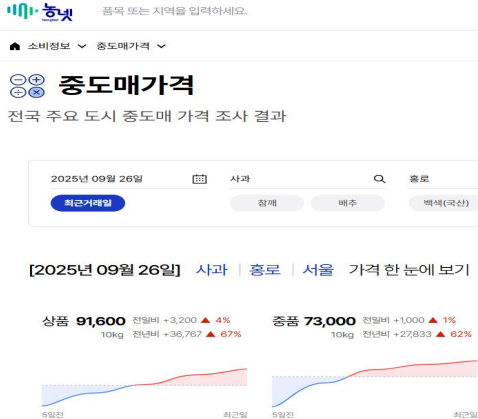
연번	구분	농넷	KAMIS
1	운영 시작연도	2018년 ~	1995년 ~
2	운영기관	aT (농식품부에서 위탁)	aT
3	운영목적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별 종합 정보 수집 및 제공	일일 도·소매가격 조사 및 제공
4	수집데이터	<u>농축산물 도·소매가격</u> , 경락가격, 기상정보, 병해충 발생정보 등 95종 데이터	<u>농수산물 도·소매가격</u> 및 온라인소매가격
5	제공 정보	- (생산) 주요 산지 작황정보, 주요 품목 위기단계, 수급상황 등 - (유통) <u>전국 도매시장</u>, 산지공판장 등 품목·품종별 정보 - (소비) <u>마트·전통시장 소매가격</u>, 온라인 가격, POS데이터 등	- <u>도·소매가격</u> 제공 - 그 외 주요 농산물 온라인 소매가격, 식재료 정보 및 알뜰소비 서비스 등 정보 제공
6	2026년 예산안	- ‘수급정보조사’ 내역사업 중 시스템 고도화 861백만원	- ‘국내가격정보조사’ 내역사업 중 시스템 운영·관리 100백만원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 그런데, 농넷과 KAMIS는 ① 동일한 기관(aT)이 운영하는 시스템 이면서도 ② KAMIS의 도·소매가격 정보를 농넷에서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본래 aT가 1995년부터 독자 시스템으로서 KAMIS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6년 「농안법」 개정으로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농넷을 추가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농넷 · KAMIS 중복 제공 정보 예시 】

구분	중복 제공 정보 예시	
	농넷	KAMIS
도매가격 (가락시장)	 예시) 2025. 9. 27. 가락시장 양파 1kg 도매가격(특 1,163원, 상 1,078원)	 예시) 2025. 9. 27. 가락시장 양파 1kg 도매가격(특 1,163원, 상 1,078원)
중도매인 판매가격	 예시) 2025. 9. 26. 서울지역 사과(홍로) 10kg 중도매가격(상 91,600원)	 예시) 2025. 9. 26. 서울지역 사과(홍로) 10kg 중도매가격(상 91,600원)
소매가격	 예시) 2025. 9. 26. 배추 1포기 소매가격(상품 6,074원)	 예시) 2025. 9. 26. 배추 1포기 소매가격(상품 6,074원)

※ 자료: 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넷(<https://hongnet.or.kr>), 2025. 9. 29. 확인
 ②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https://kamis.or.kr>), 2025. 9. 29. 확인

□ 이와 같이 동일 기관이 동일 정보를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하는 경우 중복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시스템의 통합 또는 기능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KAMIS는 1995년부터 운영하여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이 요구됨에도, 시스템 유지·보안 비용 등의 단순 운영·관리 예산만이 편성되었음.

반면, 농넷은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비교적 신규 시스템이면서 데이터분석·LLM¹⁰³⁾ 강화, AI 가격예측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보다 발전된 시스템으로서 향후 시스템 운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농넷을 중심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 2026년 농넷 고도화 추진계획 】

연번	고도화 항목	주요 내용
1	수집 데이터 확충	- KREI 지역별 생산 작황 정보, 재해보험 데이터 등 6개 항목 추가(102종 → 108종)
2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자동생성 기능 신설	- 수급동향 분석, 정책 수립 등 업무 목적에 따라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보고서 자동생성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103)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 이해와 생성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심층 신경망 모델

연번	고도화 항목	주요 내용
3	데이터 처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도록 모니터링 * 타 기관 수집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내부데이터에 연계할 때 생기는 오류 등
4	자체 AI 챗봇서비스 개선 및 AI 가격예측모형 운영시스템 구축	- 예시) “배추품목의 전국 도매시장과 가락 도매시장의 2024년 순별 평균가와 반입량을 기초로 표를 추출해주고, 전년도와 비교 분석해줘” → 원본 데이터와 그래프, 분석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형태 자동화 생성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기능이 유사한 ‘수급정보조사’ 내역사업의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농넷)과 ‘국내 가격정보조사’ 내역사업의 KAMIS를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자조금지원: 쌀 자조금에 대한 의무자조금 전환 유도 노력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에서 신규 임의자조금단체인 쌀 자조금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함에 따라, 자조금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타 자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향후 쌀 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자조금지원」 사업은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3,500만원(22.4%) 증액된 160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¹⁰⁴⁾

【 2026년도 자조금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계획(7월기준)		'26 계획안(B)	증 감	
		계 획(A)	집 행		(B-A)	%
자조금지원	13,110	13,110	7,558 (3,501)	16,045	2,935	22.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04)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자조금지원(3031-325)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자조금법」”이라 한다) 제5조¹⁰⁵⁾에 따라 정부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말 시점에서 농산물 자조금단체는 총 30개(의무자조금 단체 20개, 임의자조금단체 10개)가 설치되어 있었음.

【 농산물 자조금 현황(2025년 6월말 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연번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치년도 (의무전환)	'25년 재정지원
의무	1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14('15)	610
	2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15('16)	1,534
	3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09('17)	504
	4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06('17)	184
	5	배	(사)한국배연합회	'10('17)	717
	6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00('17)	1,130
	7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10('17)	1,309
	8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08('17)	1,293
	9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94('17)	129
	10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06('18)	321
	11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19('19)	707
	12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10('19)	609
	13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10('20)	1,056
	14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10('20)	617

105)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분	연번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치년도 (의무전환)	'25년 재정지원
의무	15	뽕은감	(사)한국뽕은감협회	'18('21)	247
	16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08('21)	451
	17	차	(사)한국차자조회	'03('22)	-
	18	자생란	(사)한국난재배자협회	'03('22)	239
	19	블루베리	(사)한국블루베리연합회	'21('25)	-
	20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	'22('25)	51
임의	1	가지	(사)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05	-
	2	오이	(사)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08	-
	3	풋고추	(사)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	'12	-
	4	단감	(사)한국단감연합회	'09	-
	5	무배추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10	-
	6	고추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10	-
	7	딸기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06	-
	8	밀	(사)국산밀산업협회	'10	-
	9	버섯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24	50
	10	논콩	(사)한국논콩자조회	'24	80

* 주: 차는 2024년 자조금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2025년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블루베리는 2025년에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반기 시점에서 지원되지 않았음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 그런데, 지난 2025년 7월 4일에 정부지원 RPC 협회 간 합동으로
(사)한국쌀산업연합회의 설립이 완료되면서 그동안 자조금이 설치
되지 않았던 품목인 ‘쌀’에 임의자조금이 설치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RPC의 쌀 판매물량이 연 140만톤 수
준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거출금 조성액 수준이 높은 점을 이유로,
2026년 예산안에 쌀 임의자조금에 대한 29억 3,500만원의 지원예산
을 신규로 편성하였음.¹⁰⁶⁾

106) 참고로, 동 사업의 2026년 증액분 29억 3,500만원 전액이 쌀 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예산임

이는 2025년 초 배정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이 배정되었던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15억 3,400만원)보다도 약 2배 많은 큰 규모의 보조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라면 2026년에는 임의자조금단체인 쌀자조금 단체에 대하여 어느 의무자조금단체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보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임의자조금단체 역시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무자조금을 장려하고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자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온 그동안의 사업양상과는 상반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거출금 납부의무가 적용되는 의무자조금¹⁰⁷⁾이 재정기반 측면에서 임의자조금에 비하여 유리하다는 점에서 의무자조금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부터 임의자조금 졸업제를 도입하여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하여는 의무자조금 전환을 전제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만 지원함으로써,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장려해 왔음.

107)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사업의 경우 임의자조금단체 중 설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3개 임의자조금단체(밤¹⁰⁸⁾, 버섯, 논콩)에 대하여만 지원이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자조금에 대하여도 다른 임의자조금과 마찬가지로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최대 3년의 지원 기간을 적용하는 등,

자조금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타 자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향후 쌀 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8) 밤은 2025년 의무자조금 전환 품목으로, 지원액 배정 당시에는 임의자조금에 해당하였음

4)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 정부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농업경영체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내역사업의 2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은 농업인력 감소, 이상기후 심화 등 여건 변화 및 높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원예농산물 안정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0억 8,700만원(183.8%) 증액된 325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¹⁰⁹⁾

【 2026년도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계획(7월기준)		'26 계획안(B)	증 감	
		계획(A)	집행		(B-A)	%
농산물안정생산 공급지원	10,497	11,472	9,650 (1,696)	32,559	21,087	183.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09)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3033-369)

나) 검토의견

(1)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내역사업의 2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은 발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종래 2025년까지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왔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사업예산이 △100.0% 순감하여 편성되지 않았음.

【 2026년도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내역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계획(7월기준)		'26 계획안(B)	증 감	
		계획(A)	집행		(B-A)	%
농산물안정생산 공급지원	10,497	11,472	9,650 (1,696)	32,559	21,087	183.8
-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9,680	9,155	9,055 (1,608)	-	△9,055	△1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까지 동 내역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년차에는 산지 조직화를 위하여 농가 교육, 협의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발작물의 저장·선별·포장 등에 필요한 유통시설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해 왔으며,

2025년 사업의 경우 91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년차(신규) 사업대상자 12개소와 2년차(계속) 사업대상자 19개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음.

【 2025년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계	지자체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1년차(신규)	12	-	-	1	3	2	2	3	1
2년차(계속)	19	1	1	-	6	3	5	2	1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2025년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1년차 사업대상자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개소 수	세부현황
충남	1	부여 규암농협(수박)
경북	3	경산 경산동지과수 영농조합법인(포도), 성주 수륜농협(참외), 청도 동청도농협(포도)
경남	2	창녕 우포농협(마늘), 함양 안의농협(양파)
전북	2	순창 서순창농협(생강), 익산 삼기농협(고구마)
전남	3	나주 노안농협(미나리), 무안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양파), 해남 영농조합법인 해남녹색유통(배추)
제주	1	서귀포 안덕농협(마늘)
계	12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 내역사업의 2026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2025년 1년차(신규) 사업대상자 12개소는 모집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¹¹⁰⁾한 사항과는 달리 2년차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이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발작물산업육성’ 사업을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지출액 조정을 이유로 동 내역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사업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① 중복지원, ② 사업 포기, ③ 사업부지 미확보, ④ 1년차 추진실적 부진 등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안내받았을 뿐이므로,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2년간 지원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공고를 신뢰하여 이미 1년차부터 2년차에 예정된 유통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자금운용·공사 등의 계획을 마련하였을 것임.

□ 따라서, 정부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농업경영체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동 내역사업의 2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¹¹¹⁾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68호, “2025년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111)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① 2년차 사업대상자에 대한 예산만을 정상적으로 편성하였다면 52억원[= 2년차 사업비 51억원(=12개소 × 850백만원 × 50%) + 행정경비 1억원]이, ② 2년차 사업대상자는 물론 신규 사업대상자까지 선정하였다면 3억 7,500만원(=5개소 × 150백만원 × 50%)을 추가하여 55억 7,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야 하였던 것으로 보임

(2)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의 시범사업 성과관리 강화 및 지역 확산 체계 설계 필요

□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 중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 예산은 '26년에 25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5예산 (A)	'26 예산안(B)	증 감	
			(B-A)	%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11,472	32,559	21,087	183.8
공동영농 확산지원	-	2,550	2,550	순증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의 일환으로 농지 집적화·경영 규모화를 추진하는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¹¹²⁾을 목표로 추진됨.

즉, 논·밭을 규모화하고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한 공동영농법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대상은 20ha 이상 농지를 경영하고 5명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

112) ▪ 관련 공약: [성장-20. 국가균형발전] 공동영농 조직 육성 및 지원

▪ 관련 국정과제: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농지 임차 등으로 농지 집적화·경영 규모화를 추진하는 공동영농법인 육성(100개소, '30))

하는 농업법인으로서,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 영농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영농모델 구축을 위해 각 개소당 2년간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소요 재정의 50%를 1차 연도에 40%, 2차 연도에 60% 지원할 예정이며, '26년에는 6개소에 대한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동영농모델은 농지 집적화 방식과 영농주체, 수입 배분 방식에 따라 ① 임대형, ② 혼합형, ③ 주주형 등으로 유형화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육성해 나갈 계획임.

【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 개요 】

구분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
사업목적	논·밭을 규모화하고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여 공동영농법인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
사업기간	2026년~
사업주체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대상	공동영농면적이 20ha 이상이면서, 참여농업인 수(법인 조합원 이외) 5명 이상 요건을 충족한 농업법인
지원내용	■ 기반정비(논·밭의 배수로 설치, 농지 평탄화 작업, 농로 개설 등) ■ 시설장비 지원(공동육묘·파종 등 생산단계, 공동출하·선별·저장 등 가공/유통단계를 포함한 시설·장비 지원) ■ 교육·컨설팅 및 마케팅·판로 지원 등
공동영농모델 유형	■ 임대형: 농업법인이 자체 소유 농지와 지역농가(농업인)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집적하여 일괄 경영 ■ 혼합형: 농업법인이 자체 소유 농지와 지역농가로부터의 임차 농

구분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
	지를 기반으로 영농을 수행하되 일부 농작업을 지역농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 주주형: 지역농가가 보유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하고 공동으로 경영성과를 공유
예산 산출내역	2,55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2,400백만원 (공동영농 확산 지원) 공동영농법인 6개소 × 2,000백만원 × 50%* × 1년차 40% * 나머지 40%는 지방비, 10%는 자부담 ○ 민간경상보조: 186백만원 (공동영농 확산 지원 행정 경비) 150백만원

□ 최근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농업 생산 기반이 위협받는 가운데, 소규모 영세농 증가로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¹¹³⁾.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지 규모화와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동영농모델이 대안적 농업 경영 형태로 주목¹¹⁴⁾받고 있음.

따라서 공동영농모델의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업 소득 증대를

113)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및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은 물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56%에 달하고 있음. 또한, 경지규모 1.0ha 미만의 농가가 72만 가구로 전체 농가(97만4천)의 74.0%에 해당함.

*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 (‘00) 21.7% → (‘10) 31.8 → (‘24) 55.8

** 면적별 농가수(‘03 → ’24): [0.5ha 미만] 441천호 → 515, [5 이상] 26 → 33 / [0.5~5] 775 → 419

114) 이와 관련해 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은 공동영농을 통한 규모화·기계화 경영의 성공 사례로 평가됨. 이 모델은 지역 농가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법인을 구성하고, 농지를 임차·집적해 법인 중심으로 일괄 경영한 후 수익을 참여 농가에 배분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은 5~20% 향상되었으며, 단작에서 이모작 체계로 전환하여 생산액이 약 3배 증가했고, 농가소득도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시범사업 추진 시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영농법인 육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26년 6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7년에 추가 사업대상(10~15개소)을 선정하고, '28년 45개소, '3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나갈 계획임.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요조사 결과 91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 수요는 충분하나, 시범사업 대상을 6개소로 제한한 것은 성과평가를 거쳐 사업모델의 현장 적합성과 확산 가능성을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동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서, 공동영농모델은 일반적으로 '농지 집적화→법인 운영 안정화→시설 도입→생산·유통 구조 정착' 등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범사업 1차 연도 추진 결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정책 효과 검증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체계와 환류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조정과 지원 기준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공동영농모델은 농지 집적화와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화 달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농업법인과 농가에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단순한 소득 증대를 넘어 지역 단위의 농업 경쟁력 강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농 정착, 지역농산물 유통망 강화, 지역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등과 연계되는 제도적 유인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5)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농산물 PLS 제도의 홍보 예산 편성 시 기관 간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PLS 제도의 홍보와 관련하여 실제로 제도를 집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사업은 농식품 국가인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인증 농식품 소비촉진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6,300만원(△10.0%) 감액된 5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¹¹⁵⁾

【 2026년도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계획(7월기준)		'26 계획안(B)	증 감	
		계획(A)	집행		(B-A)	%
국가인증농식품지원	5,833	5,630	5,526 (2,341)	5,067	△563	△1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15)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국가인증농식품지원(3050-30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허용물질목록제도(PLS) 정착지원’ 사업은 PLS 시행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PLS 제도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와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26년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PLS 제도는 잔류허용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0.01ppm(0.01mg/kg)의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제도로,

- ① 농산물 PLS(농약)의 경우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전면 시행되었고, ② 축산물 PLS(동물용의약품)의 경우 2024년부터 소·돼지·닭·우유·달걀에 대하여 전면 시행되었음.

【 농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 소개 】

제도	주요 내용	위반 시 제재
농산물 PLS	- 농산물에 대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 -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 적용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익직불금 감액 (최대 40%) -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조치 등
축산물 PLS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폐기, 출하 제한 조치 등 - 6개월간 집중 관리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PLS 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목적으로 동 내역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이 ① PLS 제도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②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 2025년 농식품부 PLS 정착지원 내역사업 홍보물 제작 내역 】

연번	구분	내용	활용방식
1	지면	농산물 PLS 개요 및 살충제 주의사항 등	유관단체 및 생산자 대상 배포
2	지면	축산물 PLS 개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등	카카오톡 비즈보드 배너
3	온라인	축산물 PLS 제도 시행 알림 및 효과 안내	전문지 기사·광고
4	지면·온라인	PLS 제도 안내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 수칙 등	축산물박람회 홍보물
5	지면	축산물 PLS 제도 안내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 수칙 등	농업박람회 홍보물
6	지면	농·축산물 PLS 제도 안내 및 의약품 안전 사용 수칙 등	유튜브, TV 광고
7	영상	농·축산물 PLS제도 안내	라디오 방송 송출
8	음원	농·축산물 PLS제도 안내	

농식품부 홍보물 예시

농산물 PLS 제도란?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 Positive List System)

●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농약 분량을 수준인 0.01mg/kg 이하 일률 적용(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 적용)

이것만 지켜주세요!

1.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사용하세요!
● 미등록 농약 사용 시 잔류 및 부적합 발생 가능성 높음
● 잔류기준 초과 시 폐기·회수 및 과태료 부과
2.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확인하세요!
● 상표명, 품명명, 작용기작, 안전사용기준, 주의사항 확인 필수
3. 농약 희석배수, 살포일·횟수 꼭 지켜주세요!
● 희석배수를 지키지 않거나 ● 수확 직전 고농도의 농약을 사용하면 잔류량이 초과되어 부적합 발생
4. 농약살포 주의해서 하세요!
● 농약살포기 SS기 드론 방식 시, 미리 이웃 농가에 알리기

! 농약 살포 예정일 전에 살포 예정지 이웃 농가에 **작업 방문** 또는 **전화**나 **문자**, **방송**으로 **방역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토양 살충제(농약) 사용 주의사항

US Precautions when using soil-injected insecticides
VN Lưu ý khi sử dụng thuốc trừ sâu soil inject. TH Sử dụng thuốc diệt sâu đất lưu ý.

1. 정해진 사용량을 균일하게 살포
US Apply the specified amount evenly.
VN Áp dụng lượng đã quy định đều đặn.
TH Sử dụng thuốc diệt sâu theo liều khuyến nghị.
2. 사용시기를 지키고 1회만 사용
US Use only once and within the recommended application period.
VN Chỉ dùng một lần và trong thời gian áp dụng đã khuyến nghị.
TH Sử dụng thuốc diệt sâu chỉ một lần trong thời gian khuyến nghị.
3. 동일 성분 농약 반복 사용 금지
US Do not repeatedly use pesticides containing the same active ingredient.
VN Không dùng lại thuốc trừ sâu có chứa cùng một thành phần hoạt chất.
TH Không sử dụng liên tục thuốc trừ sâu cùng loại.
4. 등록된 작물에만 사용
US Use only fully matured crops.
VN Chỉ dùng trên các cây trồng đã trưởng thành.
TH Sử dụng thuốc diệt sâu chỉ trên cây trồng đã trưởng thành.
5. 퇴비는 완전히 부숙된 것 사용
US Use only fully matured compost.
VN Chỉ dùng phân đã thành thục hoàn toàn.
TH Sử dụng phân bón đã ủ chín hoàn toàn.

농산물 PLS 경쟁력 PLUS+

안전한 농산물 생산합시다

1회 = 평량 = 균일

Use soil insecticides with care
Cẩn thận khi dùng thuốc trừ sâu đất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하는 경우

- 공작의약품 최대 40% 잔류(공작의약품)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농약안전법)
- 용도전용 폐기 조치(농수산물안전법, 식물의약품법)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2025년 농식품부 PLS 정착지원 내역사업 대중매체 홍보 내역 】

연번	구분	일시	매체	내용
1	TV협찬	4.22.	KBS 2TV 생생정보	제도 개요, 효과(5분)
2	TV협찬	7.31.	KBS 1TV 6시내고향	제도 개요, 효과(5분)
3	광고	5.1~6.30.	카카오톡 비즈보드	농약 안전 사용 독려
4	광고	5.1.~6.30.	카카오톡 비즈보드	축산물 PLS 제도 시행 알림 등
5	광고	6월~9월	축산단체 협회지 8종	축산물 PLS 시행 안내 등
6	광고	6.15.~7.10.	농축산업 전문지 16종	축산물 PLS 설명 등
7	광고	9~11월	농축산업 전문지	축산물 PLS 설명 등
8	광고	10월	아파트 미디어보드 영상광고	축산물 PLS 설명 등
9	TV협찬	10~11월 (예정)	NBS 농업방송	농축산물 PLS 제도 안내
10	광고		유튜브 광고	농축산물 PLS 제도 안내
11	광고		MBC, CBS 라디오	농축산물 PLS 제도 안내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한편, 농산물 PLS 제도와 관련한 실질적인 집행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있음.

농관원은 “농산물안전성조사(6032-301)”¹¹⁶⁾ 사업을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부적합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성조사 및 농약 사용 등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정책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음.

116)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산물안전성조사(6032-301)

【 2025년 농관원 농산물안전성조사 사업 홍보물 제작 내역 】

연번	홍보물	홍보내용
1	리플릿	올바른 농약사용 홍보 리플릿 제작
2	리플릿	2025년 농산물 안전성 부적합 상위 10개 품목 농약사용안내서
3	리플릿	붉은곰팡이병 및 곰팡이독소 예방
4	안내서	농약관매 및 사용 안내(튼튼한 농약관리 핵심요약집)
5	리플릿	외국인 대상 농약안전사용 안내
6	전단지	토양살충제 사용 안내
7	리플릿	작물별 사용가능 농약 현황(들깨잎외16종)
8	리플릿	국가·품목별 주요 농약 부적합 성분
9	리플릿	품목별 주요 수출 3개국 잔류농약허용기준 안내
10	리플릿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올바른 농약사용
11	팜플렛	농약안전사용 지도 및 교육
12	포스터	온라인 해외직금 불법농약 사용 금지
13	전단지	농약 온라인 판매, 구입 금지 안내
14	리플릿	비료 품질관리 안내서(보증표시 의무 등)
15	포스터	농약 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16	리플릿	농약피해 분쟁조정 제도 안내

농관원 홍보물 예시

• PLS제도 •

농산물 PLS제도란?
(Positive List System)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kg 이하를 일률 적용(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안전한 농약사용 꼭 지켜주세요!

- 1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 및 사용하세요!**
 - 미등록 농약 사용 시 검출 및 부적합 발생 가능성 높음
 -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농산물 폐기·회수 및 과태료 부과
- 2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확인하세요!**
 - 제품명, 성분명, 사용 작물, 안전사용기준, 사용 주의사항 등을 확인
- 3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일, 살포 횟수를 꼭 지키세요!**
 - 미준수 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발생 가능성 높음
- 4 불법농약, 밀수농약,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절대 구입·사용 하지마세요!**
 - 「농약관리법」에 따라 불법농약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합시다!

채소류 오이, 고추, 토마토, 호박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공익직불법)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농약관리법)
-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조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자료: 농관원 제출

그런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담당하는 농관원 역시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는 농산물 안전성 규제의 한 축을 이루는 PLS 제도를 농업인 등에게 홍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산물 PLS 제도에 대한 홍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인 농관원에 의하여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이는 농산물 PLS 제도의 홍보 과정에서 제도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도를 실제 집행하는 소속기관 농관원 사이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결과,

두 기관 모두가 정책적 필요성 및 공익적 효과를 근거로 유사한 홍보사업을 서로 다른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규제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실제 집행기관 외에도 전방위적인 홍보사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나, 농산물 PLS 제도는 이미 2019년에 전면 도입되어 2026년에는 시행 8년차를 맞이하는 제도인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PLS 제도의 홍보와 관련하여 실제로 제도를 집행하는 농관원과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9. 농지관리기금

가. 개 요

- 농지관리기금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4,513억원 (19.4%) 증가한 2조 7,802억원임.

- 2026년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보전부담금(7,635억원), 융자원금 회수 (4,604억원) 등 자체수입으로 1조 4,264억원, 정부내부수입 1조 514억원, 여유자금회수 3,024억원 등을 통해 총 2조 7,802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농가 경영회생 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대단위농업개발, 농지연금, 민간의 해외농업 등을 위한 각종 기금사업으로 2조 6,622억원을 지출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69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여유자금 1,111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5계획		'26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 입	1. 자체수입	13,924	13,924	14,264	340	2.4
	○ 농지보전부담금	7,483	7,483	7,635	152	2.0
	○ 용자원금회수	4,604	4,604	4,604	-	-
	○ 조성토지매각대	235	235	374	139	59.1
	○ 토지임대료 등	124	124	125	1	0.8
	○ 기타이자수입 등	1,478	1,478	1,526	48	3.2
	2. 정부내부수입	7,111	7,111	10,514	3,403	47.9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7,000	7,000	900	△6,100	△87.1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111	111	14	△97	△87.4
	○ 기금예수금	-	-	4,600	4,600	순증
	○ 특별회계전입금	-	-	5,000	5,000	순증
	3. 여유자금회수	2,254	2,254	3,024	770	34.2
수입 계		23,289	23,289	27,802	4,513	19.4
지 출	1. 일반지출	18,265	18,265	26,622	8,357	45.8
	○ 사업비	17,621	17,621	25,968	8,347	47.4
	- 경영회생지원	1,824	1,824	1,824	-	-
	- 맞춤형농지지원	11,516	11,516	18,460	6,944	60.3
	- 농가소득안정	2,604	2,604	2,905	301	11.6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1,560	1,560	2,663	1,103	70.7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88	88	87	△1	△1.1
	- 농지관리정보화	29	29	29	-	-
	○ 기금운영비	644	644	653	9	1.4
	2. 정부내부지출	2,000	2,000	69	△1,931	△96.6
	○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	-	69	69	순증
	○ 공자기금예탁금	2,000	2,000	-	△2,000	순감
	3. 여유자금운용	3,024	3,024	1,111	△1,913	△63.3
지출 계		23,289	23,289	27,802	4,513	19.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당초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해외 인턴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농식품부가 인턴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에도, 현재 기준 해당 기업에 정직원으로 취업한 비율은 8%에 불과한 측면과, 동 사업 참여자들의 해외인턴십 종료 후 농식품분야 취업현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추적 조사조차도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어 보이므로, 동 사업의 실효성 및 추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식품 해외진출지원사업은 민간의 해외투자환경조사 및 컨설팅, 해외농업 관련 정보·네트워킹 및 해외농업 역량강화 교육 등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 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보다 1억 2,500만원(4.4%) 감액된 2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¹¹⁷⁾.

【2026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3,000	2,835	1,414	2,710	△125	△4.4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17)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지관리기금-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5032-300)

나) 검토 의견

-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의 세부내역사업인 ‘해외인턴 사업’은 해외농업개발 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인재발굴과 채용지원을 통한 해외농업개발 분야 인력난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인턴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항공료, 비자발급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5년 사업예산 및 지원내역 】

(단위: 천원)

2021	2022	2023	2024	2025
120,000	168,000	176,200	87,000	87,000

○ 지원내역 : 인턴운영기업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 항공료, 비자발급비 등

- 인건비 : 최대 6개월간 인턴사원 인건비 일부지원(2,096천원/월)
 - * 25년도 월최저임금 : 2,096,270원(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10,030원)
 - * 25년도 귀속 인건비는 연도말 별도 정산(차년도 인건비: 26년 예산 반영)
- 왕복항공료 및 파견경비(보험료, 비자, 질병 검사비 등) 실비 지원
- 교육지원비 : 인턴사원 자기계발 비용(어학프로그램, 교육수강) 지원
 - * 참여기업 사업여건 및 신청예산에 따라 운영기간 및 집행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동 사업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인턴으로 활동한 50명 중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인원은 4명에 그치고 있어 총 지원 인원 대비 8%에 불과한 실정임.

【 해외자원개발 기업 인턴 현재 재직현황 등 】

조사연도(총 인턴수 : A)	고용승계 인원(B)	현재 재직 인원(C)	현재 취업률 (C/A*100)
2020년(11)	3	0	0%
2021년(14)	9	0	0%
2022년(11)	7	2	18.2%
2023년(7)	2	0	0%
2024년(7)	2	2	28.6%
합 계(50)	23	4	8%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또한, 인턴십 이후 입국하여 농식품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외인턴십 경험을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취지로 활용될 수 있겠으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 사업 대상자들에 대하여 인턴십이 종료된 후에는 기본적인 추적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

이는 국가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동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나 농식품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로 이어지지 않고, 개인의 단기적인 ‘해외 경험’을 위한 발판으로만 활용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취업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추적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인데, 유사사업인

국토교통부의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¹¹⁸⁾’은 연수생 선발 시 서약을 통해 사후 현황조사 동의를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농식품부의 사업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농식품부가 인턴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항공료, 비자발급비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현재 기준 해당 기업에 정직원으로 취업한 비율은 8%에 불과한 측면과,

동 사업 참여자들의 해외인턴십 종료 이후 농식품분야 취업현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추적조사조차도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사업 목적인 ‘해외농업개발 분야 채용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어 보이므로, 동 사업의 실효성 및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18)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 (추진배경) 2019년부터 국내의 우수한 건축설계 인력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추진 중
- (사업목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축설계 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세계적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수한 설계인력을 육성하고, 건축설계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 (사업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및 제19조

2)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 실효성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동 사업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은 기업의 곡물 반입 실적이 전체 수입량 대비 지속적으로 저조한 실정이고, 사업 대상국 또한 소수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비상 시 식량 위기 대응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식품 해외진출지원사업(융자)은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비상 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억원이 편성되었음¹¹⁹⁾.

【2026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6,700	6,000	5,000	6,000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19)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지관리기금-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5032-302),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5032-300)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은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주요 곡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확보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저장·가공·유통·판매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급등과 같은 식량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가의 식량 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바, 국가 식량 안보의 해외 전초 기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짐.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최근 5년간 지원한 기업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해외농업 자원개발 사업 최근 5년 용자 지원 기업 현황 】

구분	국가명	기업명	기업규모	대상품목	지원액(단위:백만원)
'20년	인도네시아	AH	대기업	오일팜	4,600
'21년	러시아	AK	대기업	대두, 옥수수	1,000
	인도네시아	H	대기업	양계	3,000
	라오스	AP	중소기업	양계	870
	키르기스스탄	AQ	중소기업	야채	2,000
'22년	베트남	AR	중소기업	야채, 감자	3,170
	튀르키예	AS	중소기업	올리브	700
	우즈베키스탄	AT	중소기업	녹두	2,900
'23년	키르기스스탄	AU	중소기업	야채	3,000
	파키스탄	AV	중소기업	이탈리안라이그라스	366
	라오스	AW	중소기업	아보카도, 마카다미아	390
	캄보디아	AX	중소기업	축산	210
'24년	호주	AK	대기업	축산	4,000
	러시아	AK	대기업	콩·옥수수	2,700
합 계				14개사	28,906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2023년 5월, ‘대규모 투자를 통한 국내 반입량 증대’를 명분으로 대기업에 대한 용자 횡수 및 응모 기회 제한¹²⁰⁾을 폐지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였음.

이는 소규모 진출로는 국내 반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¹²¹⁾로, 이에 따라, '24년의 경우 1개 대기업에 대해서만 용자지원(2회)을 실시하였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동 사업을 통한 용자지원 기업의

120) 대기업의 지원 횡수(상한 3회, 상반기 중소기업만 선정)를 제한('20.12월~)

121) ‘해외농업자원개발분야 규제과제 발굴 간담회’(‘22.7월)

반입량 및 전체 수입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콩의 경우 '23년(3,560톤) 대비 '24년(5,220톤)에 반입량이 46.6% 증가하여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되었으나, 전체 수입량 대비로는 0.45%에 불과하여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옥수수 경우에는 '23년(19,629톤) 대비 '24년(14,385톤)에 오히려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체 수입량 대비 비중도 감소(0.17% → 0.13%)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지원 기업의 반입량 및 동 곡물의 전체 수입량 비교(20년~24년) 】

(단위 : 톤)

작물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반입	%	전체	반입	%	전체	반입	%	전체	반입	%	전체	반입	%
콩	1,343,736	6,100	0.45	1,277,954	4,904	0.38	1,313,153	2,359	0.18	1,309,198	3,560	0.27	1,158,999	5,220	0.45
옥수수	11,699,430	24,993	0.21	11,690,519	10,930	0.09	11,844,111	9,794	0.08	11,293,730	19,629	0.17	11,373,999	14,385	0.13
귀리	27,826	1,101	3.96	28,529	1,467	5.14	27,756	1,584	5.71	30,136	750	2.49	26,882	703	2.62
보리	185,290	46	0.02	184,011	-	-	202,077	-	-	270,730	-	-	199,558	100	0.05

※ 수입량은 aT 농식품 수출정보 통계 기준

기타작물(아마씨, 사료작물, 콩기름, 나물콩, 감자) 반입 : '20년 843톤, '21년 1,409톤, '22년 1,460톤, '23년 668톤, '24년 1,360톤

물론, 대기업 지원 확대로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총량이 '23년(1,678천 톤) 대비 '24년(2,600천 톤)에 54.9% 증가하는 등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잠재적 규모가 커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확보한 자원의 총량이 증가하여 비상 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이 늘었음에도, 실제 비상상황 시 확보한 물량이 적시에 반입되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물량은 장부상 수치에 그칠 우려가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 현황(24년말 기준)을 살펴보면, 캄보디아·러시아·중국·인도네시아 4개국에 전체 활동 기업 65개 중 37개 기업(56.9%)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리적 인접성,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북방, 동남아지역을 해외농업자원개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였고, 이로 인해 러시아, 동남아 지역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이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특정 국가 집중 현상은 국가 식량 안보 전략의 잠재적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해외농업 자원개발 사업 관련 진출 기업 현황(2024. 12. 기준) 】

국가	신고기업 (‘09~’24년 신고 누적)	활동기업	비 고
합계	235	65	
캄보디아	46	14	37(56.9%)
러시아	17	9	
중국	32	7	
인도네시아	22	7	
미얀마	6	4	
라오스	15	3	
베트남	16	3	
키르기스스탄	10	3	
우즈베키스탄	5	1	
미국	5	1	
브라질	4	2	
호주	3	2	
우크라이나	3	1	
카자흐스탄	3	-	
인도	2	1	
파키스탄	1	1	
튀르키예	1	1	
루마니아	1	1	
칠레	1	1	
페루	1	1	
볼리비아	1	1	
캐나다	1	1	
필리핀	14	-	
몽골	12	-	
우간다	2	-	
콩고민주공화국	2	-	
스리랑카	1	-	
타지키스탄	1	-	
아제르바이잔	1	-	
네덜란드	1	-	
우루과이	1	-	
마다가스카르	1	-	
모잠비크	1	-	
태국	1	-	
뉴질랜드	1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직접적 노출’의 문제가 있음.

러시아의 경우,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미국 등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 흑해 등 주요 물류망의 불안정,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곡물 수출 통제나 자산 동결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중국 또한 미·중 갈등과 같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자국 식량 안보를 이유로 한 갑작스러운 수출 제한 조치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리스크가 우리 해외 식량 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특정 지역의 국지적 위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한 대규모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고, 토지 소유권 분쟁이나 정치적 불안정성, 취약한 물류 인프라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 진출한 다수 기업이 동시에 타격을 입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이처럼 소수 국가에 대한 해외농업 자원개발의 과도한 의존은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위기가 곧바로 우리 해외 식량 공급망 전체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사업을 통한 용자지원 기업의 주요곡물 반입량이 현재 매우 미미한 실적¹²²⁾에 그치고 있어 실제 비상상황 시 관련 물류망 및 운영 노하우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

그리고, 동 사업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 65개 중 37개 기업(56.9%)이 캄보디아·러시아·중국·인도네시아 4개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식량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가의 식량 주권을 강화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가 비상상황 시 원활히 달성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동 사업의 실효성 및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22) '24년 기준 콩 0.45%, 옥수수 0.13%, 귀리 2.62%, 보리 0.05%

3) 농지연금(용자): 월 지급단가 현실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월 지급단가 인상 추세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예산 추계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지연금(용자) 사업은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농지 자산 유동화를 통해 고령·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7억 5,200만원(12.1%) 증액된 2,766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¹²³⁾

【 2026년도 농지연금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예산(7월기준)		'26 예산안(B)	증 감	
		본 예산(A)	집행 (실 집행)		(B-A)	%
농업재해보험	262,561	246,877	213,963 (155,361)	276,629	29,752	12.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23)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지관리기금-농지연금(용자)(4130-410)

나) 검토의견

□ 농지연금 사업 예산은 가입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일반형(종신 또는 5~20년, 수시인출형은 연금 총액의 30% 수시인출 가능)과 만료 후 농지매도 조건으로 일정 기간(5~1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은퇴직불형으로 구분됨.

'26년 동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97억 5,200만원(12.1%)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형 기존 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신규 가입자가 '26년에 기존 가입자로 누적되면서 지급 소요가 증가한 데 기인함.

【 2026년도 농지연금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5예산	'26 예산안
일반형		239,613	270,192
	기존	217,341	247,896
	신규	18,096	18,096
	수시인출	4,176	4,200
은퇴직불형		7,264	6,437
	기존	4,712	5,356
	신규	2,552	1,08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면, '26년 신규 가입자 지원 예산은 전년대와 동일한 180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출내역을 보면, 월 지급단가(139만원)와 목표 가입 건수(139만원, 2,000건)도 전년대와 동일함.

【 '25년 및 '26년 신규 가입자 예산 산출 내역 】

$$18,096(\text{백만원}) = 1,392\text{천원} \times 2,000\text{건} \times 6.5\text{개월}$$

그런데 월 지급단가로 책정된 139만원은 최근 지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5년 10월 기준 166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음.

【 최근 일반형 신규가입 지원단가 예결산 현황 】

(단위: 천원)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상}	예산	결산
920	1,214	1,251	1,273	1,214	1,560	1,273	1,699	1,392	1,660	1,392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월지급금 추정 결과에 따르면, '26년 월지급금은 168만원 수준으로 향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5년 월지급금 예상액 】

(단위: 천원)

구분	'26	'27	'28	'29	'30
신규가입 월지급금	1,678	1,725	1,773	1,823	1,874
기존가입 월지급금	1,298	1,334	1,370	1,405	1,44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러한 월지급금의 상승은 농지연금 가입 당시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의 평균면적이 증가하고 담보농지의 평균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7년 담보농지 면적 및 평균가격 추이 】

(단위: 백만원, m²)

구분	'19	'20	'21	'22	'23	'24	'25.9
담보농지 평균가격	188	232	251	305	329	312	334
담보농지 평균면적	3,192	3,635	3,884	4,185	4,269	4,434	4,436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지급 단가는 계속해서 낮게 책정되고 있으며, 최근 결산 현황을 보면 지급단가를 과소 계상한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행태가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 농지연금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계획(A)	변경(B)	실집행(C)	차이(A-C)
2020	147,877	177,572	176,722	29,695
2021	180,869	184,815	184,814	3,946
2022	210,568	240,751	240,751	30,183
2023	228,237	263,060	263,058	34,823
2024	242,309	262,561	262,552	20,252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월 지급단가 인상 추세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10. 축산발전기금

가. 개 요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961억원(9.4%) 증가한 1조 1,215억원임.

□ 2026년 축산발전기금은 융자원금 회수(5,654억원), 개량사업소 수입(313억원) 등 자체수입으로 7,269억원, 농특회계전입금 1,455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1,734억원 등을 통해 총 1조 1,215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 축산업 경쟁력 제고, 친환경 축산지원, 축산물위생안전, 가축방역 등을 위한 각종 기금 사업으로 8,542억원, 공자기금 이자상환으로 431억원 등 총 8,973억원을 지출하고, 남은 여유자금 2,242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5계 획		'26계 획 안 (B)	전년 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 입	1. 자체수입	6,349	6,349	7,269	920	14.5
	○ 마사회 납입금	750	750	750	-	-
	○ 대여금 이자 수입	69	69	95	26	37.7
	○ 융자원금 회수	4,931	4,931	5,654	723	14.7
	○ 기타재산수입 등	599	599	770	171	28.5
	2. 정부내부수입	3,855	3,855	3,189	△666	△17.3
	○ 농특회계전입금	1,455	1,455	1,455	-	-
	○ 공자기금예수금	2,400	2,400	1,734	△666	△27.8
	3. 여유자금회수	50	50	757	707	1,414.0
	수입 계	10,254	10,254	11,215	961	9.4
지 출	1. 일반지출	9,089	9,089	8,542	△547	△6.0
	○ 사업비	9,070	9,070	8,524	△546	△6.0
	- 축산물수급관리	1,320	1,320	1,284	△36	△2.7
	- 축산기술보급	491	491	510	19	3.9
	- 축산업경쟁력제고	4,173	4,173	3,669	△504	△12.1
	- 친환경축산	1,579	1,579	1,557	△22	△1.4
	- 축산물품질관리	615	615	598	△17	△2.8
	- 축산물위생안전성	234	234	233	△1	△0.4
	- 가축방역	658	658	673	15	2.3
	○ 기금운영비	19	19	18	△1	△5.3
	2. 정부내부지출	408	408	431	23	5.6
	○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408	408	431	23	5.6
	3. 여유자금운용	757	757	2,242	1,485	196.2
	지출 계	10,254	10,254	11,215	961	9.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보조): 축산악취개선 실집행률 제고 및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축산악취개선’ 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집행관리 강화, 실소요를 고려한 예산 조정 등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적정성과 실행 기반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 여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보조)」 사업은 축산악취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8억 9,800만원(2.6%) 증액된 741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¹²⁴⁾

124) 회계(기금)-세부사업: 축산발전기금-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보조)(3735-329, 330)

【 2026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보조)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계획(7월기준)		'26 계획안(B)	증 감	
		계획액(A)	집행		(B-A)	%
가축분뇨처리지원	67,095	72,295	36,331	74,193	1,898	2.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1) 축산악취개선 사업 실집행률 제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축산악취개선’ 사업은 축산악취저감 시설·기계·장비 등을 보조 및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2025년과 동일한 26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축산악취개선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조건	• 지원비율(%):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융자조건: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시설·장비: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 부대기계·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퇴비·액비 운반차량 등부속도 측정 장비, 퇴비화시설의 통풍(송풍) 또는 교반 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자율운전을 위한 센서 및 관리장비 등

※ 자료: 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 2026년 축산악취개선 사업 세부 산출내역 】

- [송풍·교반 퇴비화시설] 100백만원×253개소×70%(보조 20%, 융자 50%)
- [정화시설] 500백만원×25개소×70%(보조 20%, 융자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동 사업의 2024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94.0% 수준이나 융자금은 66.5%에 불과하며, 더욱이 융자 계획액 189억원 중 70억 8,700만원(37.5%)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5년에도 7월말 기준 융자액의 실집행률이 15.3%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실집행 부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재정이 대기 자금으로 머물게 되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축산악취개선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C/A)
							이월액 예산 현액	제외 집행액 (B)			
2024	보조	7,560	7,560	3,926	11,486	10,667	7,560	7,110	292	527	94.0
	융자	18,900	18,246	8,784	27,030	17,868	18,246	12,134	2,075	7,087	66.5
	합계	26,460	26,460	2,367	28,827	4,842	26,460	4,842	2,367	7,614	74.6
2025	보조	7,560	7,560	292	7,852	1,955	7,560	1,955	-	-	25.9
	융자	18,900	18,900	2,075	20,975	2,887	18,900	2,887	-	-	15.3
	합계	26,460	26,460	2,367	28,827	4,842	26,460	4,842	-	-	18.3

* 주: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정책자금 추가 대출로 담보가 부족해 융자 실행이 어려운 사례가 있고,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일부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동 내역사업에 융자금(50%)과 대응하여 편성된 국고보조금(20%)의 경우 집행률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악취개선 시설·장비 설치 비용을 자부담으로 충당함에 따라 융자가 불필요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26년 ‘축산악취개선’ 사업에 편성된 융자액과 관련하여서는 집행관리 강화, 실소요를 고려한 예산 규모 조정 등 실행집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026년 신규 편성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계획에 따라 고체연료¹²⁵⁾ 활용설비를 구축하고, 분뇨 정기수거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실증하려는 사업임.

2026년에는 3개 지구에 대한 계획 수립 비용으로 3억원(3개 지구×2억원×국비 50%)이 편성되었으며, 향후 5년간(‘26~’30) ①고체연료 활용시설(고체연료 보일러, 고체연료 발전소 등) 구축, ②농가 고착 슬러지¹²⁶⁾ 제거 및 정기수거 지원을 포함하여 국비 258억원, 총사업비 48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아울러 동 내역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③분뇨처리시설, 고체연료 생산시설 구축 필요시 동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축산악취개선 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임.

【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개요 】

목적	• 가축분뇨 정기수거,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환 및 에너지 실증 등을 통해 저탄소 축산 등 친환경 축산 실현 및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시행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126) 바닥이나 벽면에 단단하게 부착되어 쉽게 제거되지 않는 가축분뇨 등 찌꺼기

사업기간	• 2~5년																																												
지원내용	① (가축분뇨 처리 계획) 지역 내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저탄소 분뇨처리계획 마련, 처리시설 물량 및 유형 등 분뇨처리 계획 수립 지원 ② (고체연료 활용시설)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이후 활용(보일러, 농업 관련 건조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③ (발전설비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저장·이송 설비, 투입 및 연소 시스템 개선, 가스 처리 장치 개선 등 발전설비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④ (농가 고착슬러지 제거 및 정기수거) 지역 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신속한 가축분뇨 수거·제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제제 포함) ※ ②~④ 항목은 일부 또는 전부 선택 가능 ※ 기존 공동자원화, 악취개선사업 우선 지원																																												
지원조건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차</th><th>구분</th><th>물량</th><th>단가 (억원)</th><th>지원비율 (%)</th><th>총사업비 (억원)</th><th>국비 (억원)</th></tr> </thead> <tbody> <tr> <td>1년차 (’26)</td><td>가축분뇨 처리 계획 수립(설계)</td><td>3지구</td><td>2</td><td>국50, 지50</td><td>6</td><td>3</td></tr> <tr> <td rowspan="3">2~5년차 (’27~’30)</td><td>고체연료 활용시설</td><td>9개소</td><td>6</td><td rowspan="2">국50, 지30, 자20</td><td>54</td><td>27</td></tr> <tr> <td>발전설비 개선</td><td>3개소</td><td>80</td><td>240</td><td>192</td></tr> <tr> <td>농가 슬러지 제거 및 정기수거 운영</td><td>3지구 ×60개소</td><td>1</td><td>국20, 지30, 자50</td><td>180</td><td>36</td></tr> <tr> <td colspan="5">합계</td><td>480</td><td>258</td></tr> </tbody> </table>						연차	구분	물량	단가 (억원)	지원비율 (%)	총사업비 (억원)	국비 (억원)	1년차 (’26)	가축분뇨 처리 계획 수립(설계)	3지구	2	국50, 지50	6	3	2~5년차 (’27~’30)	고체연료 활용시설	9개소	6	국50, 지30, 자20	54	27	발전설비 개선	3개소	80	240	192	농가 슬러지 제거 및 정기수거 운영	3지구 ×60개소	1	국20, 지30, 자50	180	36	합계					480	258
연차	구분	물량	단가 (억원)	지원비율 (%)	총사업비 (억원)	국비 (억원)																																							
1년차 (’26)	가축분뇨 처리 계획 수립(설계)	3지구	2	국50, 지50	6	3																																							
2~5년차 (’27~’30)	고체연료 활용시설	9개소	6	국50, 지30, 자20	54	27																																							
	발전설비 개선	3개소	80		240	192																																							
	농가 슬러지 제거 및 정기수거 운영	3지구 ×60개소	1	국20, 지30, 자50	180	36																																							
합계					480	25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가축분뇨 배출량은 50,871천톤으로 현재 가축분뇨 처리방식은 퇴액비화(약 85%)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퇴액비를 살포할 농경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 2023년 가축분뇨 처리 현황 】

(단위 : 톤, %)

축종	합계	자가처리(농가)					위탁처리(폐기물처리시설)			
		계	자원화		정화	기타*	계	자원화		정화
			퇴비	액비				퇴비	액비	
합계	50,871 (100)	26,190 (51.5)	19,300 (37.9)	2,642 (5.2)	4,070 (8.0)	179 (0.4)	24,681 (48.5)	17,723 (34.8)	3,361 (6.6)	3,597 (7.1)
한우	17,511 (100)	14,089 (80.5)	14,067 (80.3)	-	-	22 (0.1)	3,423 (19.5)	3,423 (19.5)	-	-
젖소	3,923 (100)	2,618 (66.7)	2,597 (66.2)	-	-	21 (0.5)	1,305 (33.3)	1,305 (33.3)	-	-
돼지	19,679 (100)	7,528 (38.3)	685 (3.5)	2,642 (13.4)	4,070 (20.7)	131 (0.7)	12,150 (61.7)	5,193 (26.4)	3,361 (17.1)	3,597 (18.3)
닭	8,761 (100)	1,675 (19.1)	1,673 (19.1)	-	-	1 (0.0)	7,087 (80.9)	7,087 (80.9)	-	-
오리	997 (100)	280 (28.1)	277 (27.8)	-	-	3 (0.3)	716 (71.9)	716 (71.9)	-	-

* 주: 기타는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

※ 자료: 축산환경관리원

이에 축분 자원화 방식의 다각화를 위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지원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 내 분뇨의 신속한 수거 및 활용 연계가 필요하다 취지에서 동 내역사업은 지역 단위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동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절차적 검토와 실행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측면에서 동 내역사업은 신규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세부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의 내역사업으로 ‘공동자원화시설,’ ‘축산악취개선’ 등 기존 내역사업을 활용하는 방식인 점을 감안하여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기준」에 따르면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내역사업을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체연료 활용시설,’ ‘농가슬러지 제거 및 정기운영’ 등 신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동 내역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서 적격성 심사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증·보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과 타 내역사업 비교 】

구분	공동자원화시설	축산악취개선	저탄소축산 혁신지구시범사업																																																							
사업 목적	• 개별농가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원화 촉진 등 안정적 분뇨처리 기반 구축	•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지역별(시군구) 축산악취개선계획에 따른 지역단위 축산악취저감	• 가축분뇨 정기수거,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환 및 에너지 실증 등을 통해 저탄소 축산 등 친환경 축산 실현 및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지원 내역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 민간형: 퇴·액비화, 에너지화 - 공공형: 에너지화	• 축산악취저감 시설·기계·장비 - 악취방지시설 정화처리 시설, 장비 등	•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 고체연료 활용시설 설치 • 고체연료 활용 발전설비 개선 • 농가 슬러지 제거 및 정기수거																																																							
사업 기간	4년	1년	1~5년																																																							
사업 대상	• 민간(축산농가, 농업법인), 농·축협,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축산농가 농업법인 등	• 민간(축산농가, 농업법인), 농·축협,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지원 조건 (%)	<table><tr><th>구분</th><th>국비</th><th>지방비</th><th>용자</th><th>자담</th></tr><tr><td>퇴·액비</td><td>40</td><td>30</td><td>30</td><td>-</td></tr><tr><td>바이오연계</td><td>40</td><td>30</td><td>30</td><td>-</td></tr><tr><td>에너지화</td><td>50</td><td>20</td><td>20</td><td>10</td></tr></table>	구분	국비	지방비	용자	자담	퇴·액비	40	30	30	-	바이오연계	40	30	30	-	에너지화	50	20	20	10	<table><tr><th>구분</th><th>국비</th><th>지방비</th><th>용자</th><th>자담</th></tr><tr><td></td><td>20</td><td>20</td><td>50</td><td>10</td></tr></table>	구분	국비	지방비	용자	자담		20	20	50	10	<table><tr><th>구분</th><th>국비</th><th>지방비</th><th>용자</th><th>자담</th></tr><tr><td>계획수립</td><td>50</td><td>50</td><td>-</td><td>-</td></tr><tr><td>고체연료 활용시설</td><td>50</td><td>30</td><td>-</td><td>20</td></tr><tr><td>발전설비 개선</td><td>50</td><td>30</td><td>-</td><td>20</td></tr><tr><td>슬러지 제거 및 정기수거</td><td>20</td><td>30</td><td>-</td><td>50</td></tr></table>	구분	국비	지방비	용자	자담	계획수립	50	50	-	-	고체연료 활용시설	50	30	-	20	발전설비 개선	50	30	-	20	슬러지 제거 및 정기수거	20	30	-	50
구분	국비	지방비	용자	자담																																																						
퇴·액비	40	30	30	-																																																						
바이오연계	40	30	30	-																																																						
에너지화	50	20	20	10																																																						
구분	국비	지방비	용자	자담																																																						
	20	20	50	10																																																						
구분	국비	지방비	용자	자담																																																						
계획수립	50	50	-	-																																																						
고체연료 활용시설	50	30	-	20																																																						
발전설비 개선	50	30	-	20																																																						
슬러지 제거 및 정기수거	20	30	-	5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둘째, 동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공모를 통해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에는 ‘가축분뇨 처리 혁신지구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이후 실제 고체연료 활용시설 및 정기수거 등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2차년도 이후 사업의 추진 여부와 효과는 초기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확보에 달려 있음.

2026년 계획 수립 예산이 집행된 이후 지자체별 여건 변화나 관련 인허가 지연, 주민 반대, 기술 적용성 문제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투입된 계획수립비가 실제 사업과 연계되지 못해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목표 달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차별 추진계획 】

'25년 (예비단계)	준비단계
	1.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2. 예비사업자 선정(공모사업)
'26년	1년차(설계추진)
	1. 가축분뇨 처리 혁신지구 계획 수립 2.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을 통해 혁신지구 추진 기반 마련
'27년~'30년	2~5년차(설치·운영)
	1. 고체연료 보일러 설치(농가, 시설 등)
	2. 고체연료 사용시설(발전소 등) 설비 개선 ※ 고체연료 생산시설, 정화시설 확대가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 활용
	3. 농가 슬러지 제거 및 정기수거 운영
	4. 사업 추진 실적, 지역주민 만족도 등을 통해 평가하고 제도화 등 추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을 통해 고체연료 보일러,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 등 고체연료의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국내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이 사실상 미비한 실정임.¹²⁷⁾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활용하여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나,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2015년 「가축분뇨법」에 법제화된 후에도 그간 냄새 발생, 품질 등 문제로 상용화되지 못했던 점, 다수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지역주민 민원으로 인해 설치가 무산된 사례¹²⁸⁾ 등을 고려하면 생산시설이 원활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방비 확보 계획, 지역주민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즉,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획 단계에서 적정성과 실행 기반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 여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27)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북 김제에 1개소가 있으며 2025년 7월 순천시에서 가축분뇨 생산시설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 계획임.

128)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중 주민반대로 35개소 사업 포기

2)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건비 통합 편성 필요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인건비가 보조사업별로 분리 편성되어 예산과 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기관운영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법」 제36조¹²⁹⁾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이력관리·유통정보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부사업 중 ① 축산물품질관리, ②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③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구축, ④ 축사시설현대화, ⑤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⑥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9,100만원(1.7%) 증액된 636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129) 「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2026년도 축산물품질평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계획(7월기준)		'26 계 획안(B)	증 감	
		계획현액(A)	집 행		(B-A)	%
합 계	64,304	62,603	42,977	63,694	1,091	1.7
축산물품질관리	49,488	48,560	31,492	48,503	△57	△0.1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6,054	6,558	4,357	6,630	72	1.1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	1,310	1,100	743	800	△300	△27.3
축사시설현대화	6,241	4,900	4,900	5,425	525	10.7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545	545	545	545	-	-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666	940	940	1,791	851	91.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인건비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보조사업 중 축산물품질관리,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축사시설현대화,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각각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음.

이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989년 4월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수입을 시작으로 2004년 12월 축산물이력제, 2012년 3월 축산물유통조사 등으로 사업이 순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관운영 사업을 신설하지 못하고 신규사업 수입 시마다 해당 사업 내에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여 운영해 왔다는 설명임.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건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구분 (회계, 기금)
합 계	36,028	36,920	-
축산물품질관리(축산물등급판정)	23,658	24,548	축발기금
축산물품질관리(축산물이력제)	9,991	9,609	축발기금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축산물유통정보조사)	2,178	2,250	축발기금
축사시설현대화(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167	442	FTA기금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저탄소농축산물인증)	34	71	농특회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그러나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인력 중에는 특정 보조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행정지원 인력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한 직원이 복수의 내역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¹³⁰⁾

‘축산물품질관리’와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사업에 포함된 예비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임직원 성과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¹³¹⁾ 등을 고려하면 보조사업의 직접 비용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130) 예를 들면 등급판정·이력관리 등 업무는 전국에 산재하여 업무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등급·이력·유통 업무를 병행함.

131)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2024년 축산물품질관리,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예비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내역
축산물등급판정	1,081	1,081	1,081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직원 성과급
축산물이력제	441	441	441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직원 성과급
축산물유통정보조사	109	109	109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직원 성과급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더욱이 「축산법」 제49조¹³²⁾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급판정수수료가 축산물등급판정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경비 외 용도 사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 최근 5년간 등급판정수수료 규모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11,250	11,250	11,250	11,531	11,877
결산	11,000	11,190	11,250	11,531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32) 「축산법」 제49조(수수료) ② 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위탁 또는 보조형태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과 같이 ‘기관 운영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신설하여 인건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 인건비 편성 사례 】

기관명	인건비 편성 방식	기타(관련 세부사업명 등)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별도 세부사업 편성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기관 운영비 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별도 세부사업 편성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축산환경관리원	별도 내역사업 편성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11.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가. 개 요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기능증진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79억원(0.3%) 증가한 3조 1,124억원임.

- 2026년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정부내부수입 농특회계 전입금 2조 9,472억원, 자체수입 558억원, 여유자금 회수 1,094억원을 통해 총 3조 1,124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공익기능증진직불(2조 9,699억원), 직불제이행점검(307억원), 사업관리비(115억원) 등 각종 기금사업으로 3조 0,123억원, 남은 여유자금 1,001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 2026년도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안 】

(단위: 억원)

구 분		'25계획		'26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 입	1. 자체수입	71	71	558	487	685.9
	○ 기타재산수입	31	31	241	210	684.3
	○ 과태료	20	20	-	△20	순감
	○ 법정부담금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0	20	317	297	1,494
	2. 정부내부수입	29,872	29,872	29,472	△400	△0.7
	○ 농특회계전입금	29,872	29,872	29,472	△400	△0.7
	3. 여유자금회수	1,102	1,102	1,094	△8	△1.3
	수입 계	31,045	31,045	31,124	79	0.3
지 출	1. 일반지출	29,951	29,951	30,123	172	0.6
	○ 사업비	29,949	29,949	30,121	172	0.6
	- 직불제이행점검	300	300	307	7	2.3
	- 공익기능증진직불	29,536	29,536	29,699	163	0.6
	- 사업관리비	113	113	115	2	1.9
	○ 기금운영비	2	2	2	△0.2	△9.1
	2. 정부내부지출	-	-	-	-	-
	○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	-	-	-	-
	○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	-	-	-	-
	3. 여유자금운용	1,094	1,094	1,001	△93	△8.5
	지출 계	31,045	31,045	31,124	79	0.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공익기능증진직불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용 벼를 전략작물로서 신규 도입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RPC의 계약 이행 부담 및 관리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가루쌀 정책에 쌀 공급과잉 구조 해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예산 및 정책수단이 마련되었는지 점검하고 가루쌀 수요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의 실질행 부진 해소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가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사육방식개선’ 사업을 통해 추가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정책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면밀한 직불금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시행)」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과 선택형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2억 9,200만원(0.6%) 증액된 2조 9,699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¹³³⁾

133)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 2026년도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계획(7월기준)		'26 계획안(B)	증 감	
		계 획(A)	집 행		(B-A)	%
공익기능증진직불	2,870,184	2,953,622	14,095 (1,341)	2,969,914	16,292	0.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1) 수급조절용 벼 운영에 따른 RPC의 부담 해소 및 가루쌀 관련 예산 및 정책수단 점검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략작물직불사업’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부터 제50조 까지에 따른 전략작물직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¹³⁴⁾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56억원(72.0%) 증액된 4,196억원 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사업 내역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계획(7월기준)		'26 계획안(B)	증 감	
		계획(A)	집행		(B-A)	%
공익기능증진직불	2,870,184	2,953,622	14,095 (1,341)	2,969,914	16,292	0.6
- 전략작물직불사업	186,450	244,000	- (-)	419,600	175,600	72.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3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들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전략작물별 편성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① 신규 전략작물로서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¹³⁵⁾ 등 5개 작물이 추가되었고, ② 하계 조사료에 대한 예산액이 120% 증가하였으며,

③ 기존 전략작물인 두류(논콩)·가루쌀의 예산액이 각각 △21.4%, △50.0% 감소하여, 다른 기존 전략작물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액된 것과는 달리 감액되었다는 특징이 나타남.

【 전략작물직불사업의 2025년 예산·2026년 예산안 비교 】

(단위: 천ha,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B-A			
	면적	단가	예산	면적	단가	예산	면적	단가	예산	
									금액	증감율
전체	176	-	244,000	205	-	419,600	29	-	175,600	72.0
동계작물	115	-	73,000	115	-	73,000	-	-	-	-
밀	31	100	31,000	31	100	31,000	-	-	-	-
식량작물	22	50	11,000	22	50	11,000	-	-	-	-
동계조사료	62	50	31,000	62	50	31,000	-	-	-	-
하계작물	61	-	145,000	90	-	307,600	29	-	162,000	111.7
두류(논콩)	28	200	56,000	22	200	44,000	△6	-	△12,000	△21.4
가루쌀	16	200	32,000	8	200	16,000	△8	-	△16,000	△50.0
하계조사료	10	500	50,000	20	550	110,000	10	50	60,000	120.0
옥수수	4	100	4,000	6	150	9,000	2	50	5,000	125.0
깨	3	100	3,000	6	150	9,000	3	50	6,000	200.0
수급조절용 벼	-	-	-	20	500	100,000	20	500	100,000	순증
알팔파	-	-	-	2	250	5,000	2	250	5,000	순증
수수	-	-	-	2	240	4,800	2	240	4,800	순증
울무	-	-	-	2	250	5,000	2	250	5,000	순증
메밀	-	-	-	2	240	4,800	2	240	4,800	순증
이모작 인센티브	26	100	26,000	39	100	39,000	13	-	13,000	5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사업설명자료(Ⅱ-1)를 재가공

135) Alfalfa, 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사료용으로 재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가) 수급조절용 벼 운영에 따른 RPC의 부담 해소 필요

-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신규 전략작물 ‘수급조절용 벼’는 평시에는 가공·수급조절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밥쌀용 쌀과는 격리하되, 흉작 등으로 쌀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물임.

수급조절용 벼는 논에서 기존과 같이 벼를 재배하면서도 밥쌀용 쌀 생산만을 감축할 수 있는 한편, 농가에게 별도의 타작물 전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농가가 동 직불금을 수령하면서도 생산한 쌀을 밥쌀용으로 출하하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한편, 용도가 가공용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전에 실수요업체(식품업체 등)와 연결하여 가공용 수요를 확보해야하는 과제가 있음.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를 활용하여 대응한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는 각 RPC로 하여금 ① 할당 면적 내에서 계약재배 농가를 모집·계약하고 수확 전·후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농가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② 사용 용도, 인도 시 도정 상태, 물량·가격 등을 실수요업체별로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가공용 쌀의 수요처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것임.

다만, 이와 같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RPC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함.

□ 첫째, 수급조절용 벼는 흉년 등 쌀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으로 그 용도가 전환될 예정이나,

이 과정에서 본래 수급조절용 벼를 실수요업체에게 가공용 쌀로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던 RPC에게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부담이 나타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용도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관리 양곡을 대신 공급하여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RPC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는 단순히 계약물량의 확보 외에도 인도 시기·도정 상태·품질 등의 계약 사항 역시 문제 될 수 있음.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급조절용 벼를 쌀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밥쌀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RPC에게 이와 같은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RPC는 농가로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매입하여 보관한 후, 이를 도정·포장하여 실수요업체로 출고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RPC에게는 보관료, 가공임, 운송료 등의 관리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안에 농가에게 지급할 직불금만을 편성하였을 뿐, 관리비에 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

수급조절용 벼와 유사하게 RPC를 활용하여 매입을 진행하는 정부관리양곡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입비와는 별도로 매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3,565억원 가량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정부양곡관리비(2131-366)” 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하고 있음.

【 2026년 정부관리양곡 조작권리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보관료	가공임	운송료	업무대행 수수료	상하차료 등
조작권리비	356,488	109,855	120,136	51,868	11,552	63,077

* 주: 연평균 재고 100만톤, 공공비축 40만톤, 매출 94만톤 기준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사업설명자료(Ⅱ-1)를 재가공

물론, 수급조절용 벼는 최종적으로 쌀을 정부가 아닌 민간(실수요업체)이 소유하게 됨에 따라, 정부관리양곡과는 정부의 관리비 부담 필요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수급조절용 벼 역시 쌀 수급정책의 일환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가 RPC에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RPC에게 발생하는 관리비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RPC의 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계획면적 2만ha에서 생산되는 수급조절용 벼 약 10만 4천톤에 대해 1톤당 약 16만 5천원 가량의 관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 171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수급조절용 벼 1톤당 예상 관리비 】

단계	내역	예상 관리비
매입	매입 부대비용(톤백 매입료 등)	15,200원
보관	보관·관리비(보관비, 훈증비 등)	40,653원
가공·운송	도정·포장·입출고·상차비	108,684원
소계		164,537원

* 주: (164,537원/톤) × (10만 4천톤) = 171억 1,184만 8,000원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수급조절용 벼를 전략작물로서 신규 도입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RPC의 계약 이행 부담 및 관리비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나) 가루쌀 관련 예산 및 정책수단 점검 및 수요확대 필요

- 2026년 예산안에서는 가루쌀에 대한 전략작물직불금 편성액이 △50.0% 감액되었으며, 그 감액 사유는 직불금 대상면적이 △8천ha 감축되었기 때문임.

【 전략작물직불사업 가루쌀 관련 예산안 현황 】

(단위: 천ha, 백만원, %)

구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B-A			
	면적	단가	예산	면적	단가	예산	면적	단가	예산	
									금액	증감율
가루쌀	16	200	32,000	8	200	16,000	△8	-	△16,000	△5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사업설명자료(Ⅱ-1)를 재가공

이와 같은 급격한 가루쌀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루쌀의 생산에 비하여 소비가 부진하여 수급불안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생산속도 조절을 위해 예산상에서 직불금 대상 재배면적을 감축하였다는 설명임.

- 이와 같은 수급불안의 발생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루쌀 공급확대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수요확대를 위한 시책에는 별다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쌀 공급과잉 구조가 가루쌀 공급과잉 구조로 치환된 것 이상의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예를 들어, 동 사업과 연계하여 전락작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 생산·유통 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전락작물산업화”¹³⁶⁾ 사업의 경우, 가루쌀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은 네 개 내역사업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품화패키지지원 내역사업을 제외한 세 개 내역사업은 가루쌀의 재배·가공 등 공급측면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제품화패키지지원 내역사업만이 직접적으로 가루쌀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함.

【 전락작물산업화 사업 중 가루쌀 관련 내역사업 】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교육·컨설팅 지원	- 밀·콩·가루쌀 <u>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u> 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시설·장비 지원	- 밀·콩·가루쌀 등 <u>논타작물재배</u>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전락작물가공확대지원	- 국산 밀·가루쌀 산업초기 <u>제분기반 조성</u> 과 소비확대를 위하여 가공업체 대상 추가 사용량에 대한 제분비용 지원
제품화패키지지원	- 국산 밀·콩·가루쌀을 활용한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마케팅 및 수출·판촉 등 <u>수요발굴 및 소비확대</u> 도모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사업설명자료(Ⅱ-1)를 재가공

더욱이, 전락작물산업화 사업의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2년간 가루쌀 관련 예산 중 수요확대를 위한 제품화패키지지원 내역사업

13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락작물산업화(2131-351)

의 예산 비중은 2024년 28.1%, 2025년 25.7%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예산이 가루쌀 공급확대 지원을 위하여 편성되었음.

【 최근 3년간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중 가루쌀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B-A	
				금액	증감률
소계	15,930 (100.0)	18,700 (100.0)	9,150 (100.0)	△9,550	△51.1
- 교육·컨설팅 지원	1,950 (12.2)	2,400 (12.8)	1,350 (14.8)	△1,050	△43.8
	- 130개소 ×30백만원×50%	- 160개소 ×30백만원×50%	- 90개소 ×30백만원×50%		
- 시설·장비 지원	7,500 (47.1)	7,500 (40.1)	1,000 (10.9)	△6,500	△86.7
	- 30개소 ×500백만원×50%	- 30개소 ×500백만원×50%	- 4개소 ×500백만원×50%		
- 전략작물가공 확대지원	2,000 (12.6)	4,000 (21.4)	2,000 (21.9)	△2,000	△50.0
	- 10천톤 ×40백만원/톤×50%	- 20천톤 ×40백만원/톤×50%	- 10천톤 ×40백만원/톤×50%		
- 제품화패키지 지원	4,480 (28.1)	4,800 (25.7)	4,800 (52.5)	-	-
	- 28개소 ×200백만원×80%	- 30개소 ×200백만원×80%	- 30개소 ×200백만원×8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사업설명자료(Ⅱ-1)를 재가공

2026년 예산안에서는 가루쌀 관련 예산 중 제품화패키지지원 내역 사업의 비중이 52.5%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공급확대를 위한 타 내역사업의 예산이 직불금 예산 감액에 따라 함께 감액된 반면, 수요확대를 위한 제품화패키지지원 내역

사업의 예산은 유일하게 감액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임.

-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 과정에서 생산자·가공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소비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래부터 가루쌀 공급확대와 동반되어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으로서,

결과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가루쌀 관련 사업을 공급확대 위주로 추진하였던 것은 가루쌀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정책이 쌀 공급과잉 구조 해소를 위한 전략작물로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정책수단이 마련되었는지 점검하는 한편,

가루쌀 수요의 실질적 확대를 통하여 가루쌀 수급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의 농가 참여 유인 강화 및 직불금 지급기준 등 보완 필요

□ 내역사업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축산 분야는 ①저메탄 사료 급이, ②질소저감사료 급이, ③분뇨처리방식개선과 ④사육방식 개선(‘26년 신규)으로 구분됨.

【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지원 활동 】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만원)
저메탄사료 급이	▶ 관행 사료 급여 대비 메탄 발생이 최소 10% 이상 저감되는 사료 급이	2.5~5/두
질소저감사료 급이	▶ 적정 단백질을 공급하여 잉여 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사료 급이	0.02~1/두
분뇨처리방식개선	▶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는 설비 도입 및 가동	0.05~0.15/톤
사육방식개선	▶ 소 사육개월령 단축(30→26개월)을 통한 메탄저감	1/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800만원(△1.5%)이 감액된 99억 1,200만원으로, 저메탄사료 27억원, 질소저감사료 34억 2,500만원, 분뇨처리방식개선 23억 8,400만원, 사육방식개선 8억원과 활동이행 확인 등에 필요한 운영관리비로 6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음.

【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세부 산출내역 】

'25년 계획액 (10,060백만원)	'26년 계획안 (9,912백만원)
· 저메탄사료: 2,700백만원(=한육우 9만두 × 2.5만원/두 + 젓소 0.9만두 × 5만원/두) · 질소저감사료: 3,425백만원(= 한육우 10만두 × 1만원/두 + 돼지 38.5만두 × 0.5만원/두 + 산란계 100만수 × 0.05만원/두) · 분뇨처리방식개선: 3,402백만원(=퇴비 189만톤 × 1,800원/톤) · 운영관리비: 533백만원	· 저메탄사료: 2,700백만원(=9.9만두 × 2.5~5.0만원/두) · 질소저감사료: 3,425백만원(= 298.5만두 × 0.02~1만원/두) · 분뇨처리방식개선: 2,384백만원(=212.8만톤 × 500~1,500원/톤) · 사육방식개선: 800백만원(=8만두 × 1만원/두) · 운영관리비: 603백만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농가의 참여유인 강화 필요

□ 동 내역사업의 2024년 실적행률을 살펴보면, 계획액 46억 2,500만원 대비 0.5%인 2,500만원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탄소감축 목표 달성률도 1.2%에 그치고 있음.

【 2024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축종	계획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저메탄사료	한육우	2,250	219	-	0.0%
	젓소	450	-	-	0.0%
질소저감사료	돼지	1,925	278	25	1.3%
합 계		4,625	497	25	0.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탄소감축 실적 】

구분	2024년	2025년(9월 현재)
감축목표(천톤)	14	164
감축실적(천톤)	0.17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의 경우 9월 현재 농가의 사업 신청률을 살펴보면, 질소저감 사료(돼지, 산란계)는 목표를 초과하였으나, 저메탄사료(한육우)는 당초 목표 대비 57.7%, 질소저감사료(한육우)는 1.3%,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5.8%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상황임.

【 2025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현황(9월 기준) 】

구분	저메탄사료(두)		질소저감사료(두)			분뇨처리방식 개선(톤)	
	한육우	젓소	한육우	돼지	산란계	기계교반·강제송풍	강제송풍
목표	90,000	9,000	100,000	385,000	2,500,000	2,216,000	820,000
신청	51,954	8,509	1,333	856,338	8,803,711	155,000	51,000
참여율	57.7%	94.5%	1.3%	222.4%	352.1%	7.0%	6.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와 같은 사업 실적 부진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에 필요한 사료가 직불금 지급대상 기간 내에 출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 여건이 미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기 때문임.

2024년의 경우 질소저감사료가 '24.5월에 출시되어 활동 이행기간이 당초보다 단축되었고, 한우용 저메탄사료는 '24.10월 처음 출시되었으며, 젓소용 저메탄사료는 '25.10월 현재까지도 출시되지 못함에 따라 2024년 이행기간 동안 농가의 저탄소사료 급이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더욱이 젓소용 저메탄사료는 1개 업체에서 '25년 하반기 사양실험을 마친 후 그 결과에 따라 '26년 상반기 중 출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므로 2025년에도 불용이 예상되며, 실험결과에 따라 2026년 계획안의 경우에도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환경친화사료 출시 현황('25.9월 기준) 】

구 분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한육우	젓소	한육우	돼지	산란계
업체수	7	-	1	11	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둘째, 실제 저탄소영농활동 참여 시 축산농가의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신청률이 높은 질소저감사료(돼지, 산란계)를 제외하고는 지원단가와 실제 소요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참고자료 참조) 농가의 참여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사료 변경에 대한 농가의 심리적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직불단가가 낮아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유의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농가 참여 저조 등으로 2026년에도 실집행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사육방식개선 사업의 직불금 지급기준 등 보완 필요

- 내역사업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중 2026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하위 내역사업인 ‘사육방식개선’은 소 사육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사료섭취량 증가 및 소화기관 발달로 메탄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¹³⁷⁾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소 사육개월령 단축에 따라 농가에 일정 금액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26년 도축 물량(86.7만 마리) 중 8만 마리에 대해 두당 평균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기준 배출권거래 가격이 2만 3,300원 수준임을 감안하여¹³⁸⁾ 단축한 사육개월에 비례해 개월당 약 3,000원을 지급할 예정임.

【 사육방식개선 세부 산출내역 】

· 사육방식개선 : 800백만원(= 8만두 × 1만원/두)

사육개월령 감축기간 (30개월 기준)	온실가스 감축량 (kg/두)	단가 (원/톤)	감축 인센티브 (원/두)
1개월	138.6	20,000	3,000
2개월	296.8		6,000
3개월	415.6		9,000
4개월	590.8		12,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37) (24개월) 105.5kg/마리 → → (26개월) 116.5 → (28개월) 127.0 → (30개월) 137.6

138) 배출권거래 가격(연평균/톤) : ('18) 22천원 → ('19) 30 → ('20) 30 → ('21) 22.6 → ('22) 23.3

- 우리나라의 평균 한우(거세우) 사육기간은 약 31개월('23년 기준)로, 사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육질등급과 경락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익 확대를 위해 비육기간을 장기화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21.12월)」에서 소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을 통해 단기 사육방식을 확립하기로 하고 2022~2024년 출하월령 단축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은 동 사업의 결과를 이어받아 사육기간 단축 모델을 확산시키려는 취지의 사업임.

- 다만, 동 신규사업의 사업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한우농가의 사육기간 단축에 따른 소득손실액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인센티브가 높지 않아 농가에서는 동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육기간 감축에 따른 농가의 마리당 소득손실액은 30개월령 대비 28개월령의 경우 9만원, 26개월령의 경우 41만원 가량으로 2024년 전체 출하 물량의 사육개월령별 가중평균 시 약 12만원의 손실이 예상됨.

그러나 현행 사업계획상 인센티브는 두당 평균 1만원에 불과하여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사육기간 단축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은 미
 흡한 상황임.

【 사육기간 감축에 따른 소득손실액 추산 】

사육개월령 감축기간 (30개월 기준)	경락 단가에 따른 수입손실액(천원)	생산비절감분 (원/두)	총 손실액 ¹⁾ (원/두)
1개월	△ 230	195,600	35,400
2개월	△ 481	391,200	89,800
3개월	△ 772	598,500	174,000
4개월	△ 1,217	805,800	411,252
평 균 ²⁾	-	-	120,000

*주: 1) '22~'24년 평균 경락단가와 생산비 절감분 반영

2) '24년 사육개월령별 전체 출하 물량 가중평균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둘째, 현행 사업계획상 사육방식 단축 확인 방법으로는 신규사업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이력제를 활용하여 도축 월령을 확인하겠
 다는 설명이나, '23년 기준 30개월령 미만 한우(거세) 출하두수가
 이미 동 사업의 사업물량인 8.9만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
 축 월령만을 확인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경영여건상 조기출하를 계획한 개체에 대해 직불금이 지
 급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실제로 감축 노력을 한 농가와 구분되지 않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없이도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중 다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 과정에서 농가의 추가 지출을 보조하는 구조인 반면, 사육방식개선은 소득손실분을 비용으로 간주함에 따라 조기출하를 계획한 경우에는 참여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현행 사업계획상으로는 직불금 지급을 통해 사육방식 단축에 따른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실질적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정책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면밀한 직불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저탄소 영농활동 참여 시 축산농가 실소요비용

활동명	축종	현 지원단가	실소요비용
저메탄 사료	한육우	25,000원 - 일반사료 대비 메탄저감제 추가 배합 비용 $= 22\text{원/kg} \times 5.9\text{kg/일}\cdot\text{두} \times 365\text{일} \times 50\%$	110,000원 $= 40\text{원/kg} \times 7.6\text{kg/일}\cdot\text{두} \times 365\text{일}$ *국내 메탄저감제(3-NOP)는 37원/kg~42.5원 **현장조사 결과 국내 사료비용 10~42원 인상
	젖소	50,000원 - 일반사료 대비 메탄저감제 추가 배합 비용 $= 22\text{원/kg} \times 13.4\text{kg/일}\cdot\text{두} \times 365\text{일} \times 50\%$	160,000원 $= 40\text{원/kg} \times 11.2\text{kg/일}\cdot\text{두} \times 365\text{일}$
질소 저감 사료	한육우	10,000원 - 조단백질 저감에 따른 필수아미노산 추가 비용 $= 8\text{원/kg} \times 5.9\text{kg/일}\cdot\text{두} \times 365\text{일} \times 50\%$	27,200원 - 조단백질 저감에 따른 필수아미노산 추가 비용 $= 8.2\text{원/kg} \times 9.1\text{kg/일}\cdot\text{두} \times 365\text{일}$
	돼지	5,000원 - 조단백질 저감에 따른 필수아미노산 추가 비용 $= 14\text{원/kg} \times 1.9\text{kg/일}\cdot\text{두} \times 365\text{일} \times 50\%$	5,340원 - 조단백질 저감에 따른 필수아미노산 추가 비용 $= 6\text{원/kg} \times 2.44\text{kg/일}\cdot\text{두} \times 365\text{일}$
	산란계	200원 - 일반사료 대비 메탄저감제 추가 배합 비용 $= 3.5\text{원/kg} \times 0.25\text{kg/일}\cdot\text{두} \times 365\text{일} \times 50\%$	200원 - 일반사료 대비 메탄저감제 추가 배합 비용 $= 5.07\text{원/kg} \times 0.107\text{kg/일}\cdot\text{수} \times 365\text{일}$
분뇨 처리 방식 개선	강제송풍·기계교반	1,300~1,500원 - 전력비 570원/톤 $\times 50\%$	8,056원 - 전력비 외 기후환경요금 등 실소요비용
	강제송풍	500원 - 전력비 570원/톤 $\times 50\%$	3,822~5,095원 - 전력비 외 기후환경요금 등 실소요비용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가. 개 요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472억원 (9.8%) 증가한 5,298억원임.

□ 2026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농산물 구매납입금(913억원)과 융자원리금 회수(1,893억원) 등 자체수입으로 3,361억원, 여유자금 회수 1,937억원을 통해 총 5,298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직접피해지원, 경쟁력 제고지원 등 각종 기금사업으로 2,889억원, 공자기금 이자상환으로 7억원 등 총 2,896억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2,402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 2026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5계획		'26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 입	1. 자체수입	3,416	3,416	3,361	△55	△1.6
	○ 법정부담금	917	917	913	△4	△0.4
	○ 기타경상이전수입	444	444	444	-	-
	○ 융자원금회수 등	1,944	1,944	1,893	△51	△2.6
	○ 이자수입 등	111	111	111	-	-
	2. 정부내부수입 (공자기금예수금)	-	227	-	-	-
	3. 여유자금회수	1,410	1,410	1,937	527	37.3
수입 계		4,826	5,053	5,298	472	9.8
지 출	1. 일반지출	2,889	3,119	2,889	-	-
	○ 사업비	2,889	3,102	2,872	-	-
	- 직접피해지원	249	249	212	△37	△14.9
	- 농기자재산업육성	98	104	96	△2	△2.3
	- 원예산업경쟁력강화	1,190	1,190	1,138	△52	△4.4
	- 축사시설현대화	1,335	1,559	1,426	91	6.8
	○ 기금운영비	17	17	17	-	-
	2. 정부내부수입 (공자기금이자상환)	-	3	7	7	순증
	3. 여유자금운용	1,937	1,931	2,402	465	24.0
지출 계		4,826	5,053	5,298	472	9.8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과수생산유통지원: 실집행 단계의 연례적 이월 등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의 실집행 단계에서 연례적 이월 및 실집행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감축)가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은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8,500만원(△4.9%) 감액된 634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¹³⁹⁾

【 2026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계획(7월기준)		'26 계획안(B)	증 감	
		계획(A)	집행		(B-A)	%
과수생산유통지원	58,481	66,759	17,921 (13,426)	63,474	△3,285	△4.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39) 회계(기금)-세부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과수생산유통지원(3034-304)

나) 검토의견

□ 8개 내역사업¹⁴⁰⁾으로 구성된 동 사업은 생산단지기반 조성, 시설 개선, 센터 건립, 장비 도입 등 건축·시설공사를 위한 보조금을 주로 편성하는 특징이 있음.

【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 내용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안)		B-A
		'25(A)	'26(B)	
과실전문생산 단지기반조성	- 집단화된 생산단지, 수출전문단지를 대상으로 <u>생산기반 정비</u> 지원	18,929	19,148	219 (1.2)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방조시설 등 <u>생산시설 현대화</u> 지원	31,125	31,125	- (-)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 경쟁력 강화를 위한 <u>과수스마트팜 장비</u> 지원	240	200	△40 (△16.7)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	- 과수 주산지역을 대상으로 규모화·현대화된 <u>산지유통시설</u> 지원	12,095	8,700	△3,395 (△28.1)
유통시설현대화	- 노후화된 선별·포장시설 등 <u>상품화시설</u> 대상 <u>규모화·현대화</u> 지원	1,128	1,100	△28 (△2.5)
과실브랜드육성	- 전국공동브랜드 전문경영체와 광역화된 지역 공동브랜드 전문경영체의 육성 지원	540	540	- (-)
제주국제 감귤박람회	- 3년 주기 개최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지원	-	-	- (-)
과원규모화	- 과원매매·임대차 농가 대상 <u>과원 규모 확대 및 집단화</u> 지원	2,702	2,651	△51 (△1.9)
소계		66,759	63,474	△3,285 (△4.9)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사업설명자료(Ⅱ-1)를 재가공

140) 단, “제주국제감귤박람회” 내역사업은 3년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2026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실집행 단계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최소 69억 3,200만원, 최대 118억 1,9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당해연도 계획액의 실집행률은 66.1%에서 82.3% 사이로 형성되는 등, 연례적인 이월 및 실집행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와 같은 연례적 이월 및 실집행 부진으로 인하여 동 사업은 2025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일정 수준 감축 평가를 받기도 하였음.

【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당초	수정 (A)					총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C)			총액 대비 (B/A)	이월액 제외 (C/A)
2021년	49,981	50,981	50,981	50,981	16,004	67,025	41,675	33,680	9,553	1,428	81.7	66.1
2022년	53,739	53,739	53,739	53,739	17,010	70,749	57,524	41,649	11,819	1,406	107.0	77.5
2023년	54,956	55,438	55,410	55,410	11,819	67,229	53,924	45,376	8,635	4,743	97.3	81.8
2024년	58,650	58,650	58,481	58,481	8,635	67,116	53,346	48,266	6,932	6,838	91.0	82.3
2025년 7월	66,759	66,759	17,922	17,922	6,932	24,854	12,269	12,269	-	-	18.4	18.4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과수의 생육 시기 및 수확기를 고려하여 주로 1~3월에 시설 설치 등이 집중되고, ② 일부 사업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 부지 매입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연도 내에 실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와 같은 연례적 이월 등은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¹⁴¹⁾

또한,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예상 가능한 이상, 연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의 실집행 단계에서 연례적 이월 및 실집행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감축)가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시설현대화(융자·보조): 사업 추진 시 부처간 사전 협력체계 강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 환경 규제로 인해 증·개축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관계 부처간 사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오리사육시설개선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지자체 인허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불용 및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축사시설현대화(융자·보조)」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 및 스마트 축산장비 보급 지원을 통해 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계획현액(전년도 이월액 150억원, 제2차 추경 224억원 포함) 대비 282억 6,400만원(16.5%)이 감액되었으나 2025년 당초 계획액인 1,335억 1,700만원과 비교하면 91억 3,600만원(6.8%)이 증액된 1,426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¹⁴²⁾

142) 회계(기금)-세부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사시설현대화(융자·보조)(3760-332, 346)

【 2026년도 축사시설현대화(융자·보조)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결산	'25계획(7월기준)		'26 계획안(B)	증 감	
		계획현액(A)	집행		(B-A)	%
축사시설현대화	118,862	170,917	75,786	142,653	△28,264	△16.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축사시설 개선’ 중 ‘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산농가의 노후 축사시설 개선 비용을 융자(융자 80%, 자부담 20%)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2025년 본예산 679억 4,600만원 대비 48억 5,400만원(7.1%)이 증액된 728억원이 편성되었음.

【 시설현대화 사업 세부 산출내역 】

'25년 계획 (90,346백만원)	'26년 계획안 (72,800백만원)
· 당초계획 : 67,946백만원 - (일반) 31,946백만원 = 200개소 × 200백만원 × 융자(80%) - (산란계) 36,000백만원 = 30개소 × 1,500백만원 × 융자(80%) · 추경 : 22,400백만원 - (일반) 8,000백만원 = 50개 × 200백만원 × 융자(80%) - (산란계) 14,400백만원 = 12개소 × 1,500백만원 × 융자(80%)	· (일반) 36,800백만원 = 230개소 × 200백만원 × 융자(80%) · (산란계) 36,000백만원 = 30개소 × 1,500백만원 × 융자(8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 중 ‘시설현대화(산란계)’ 사업(360억원)은 「축산법 시행령」 상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0.05 \rightarrow 0.075\text{m}^2/\text{마리}$) 시행(‘25.9월)에 대응하여 산란계 케이지 수선 및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설현대화(일반)와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2025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라 사육마릿수가 감소하여 계란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축산법 시행령」 상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7월에는 기존농가에 대한 시행령 적용(‘25.9월)에 대비하기 위해 제2차 추경을 통해 114억원을 증액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개선과 지원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축사시설 증·개축 시 적용되는 타 법령상의 규제로 인해 사육두수를 유지하면서 사육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⁴³⁾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는 신규 축사 설치가 제한

143) 한국농어민신문,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연착륙 방안 ‘무용지물’ 논란, 2025.9.2.

되며, 기존 축사의 증·개축 시에도 환경부가 기존 시설의 20% 이내로 권고('15.3월)함에 따라 다수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용지역¹⁴⁴⁾의 경우 총량관리 한도 내에서만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증설이 가능함에 따라 축사시설의 증축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 관련하여 2025년 제2차 추경 당시 증액된 시설현대화(산란계)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9월말 기준 교부액 144억원 대비 실집행액이 21억 9,700만원(0.15%)에 불과하여, 정부가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144) 「물환경보전법」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환경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 2025년 제2차 추경 시설현대화(산란계) 사업 실집행 현황('25.9월)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교부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시설현대화(일반)	8,000	8,000	8,000	888	-	-	0.11
시설현대화(산란계)	14,400	14,400	14,400	2,197	-	-	0.1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관계부처간 사전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내역사업 ‘오리사육시설개선’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취약한 오리사육 환경을 6단 이하 고상식으로 개선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국비 10%, 융자 50%, 자부담 40%)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신규로 4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 오리사육시설개선 사업 세부 산출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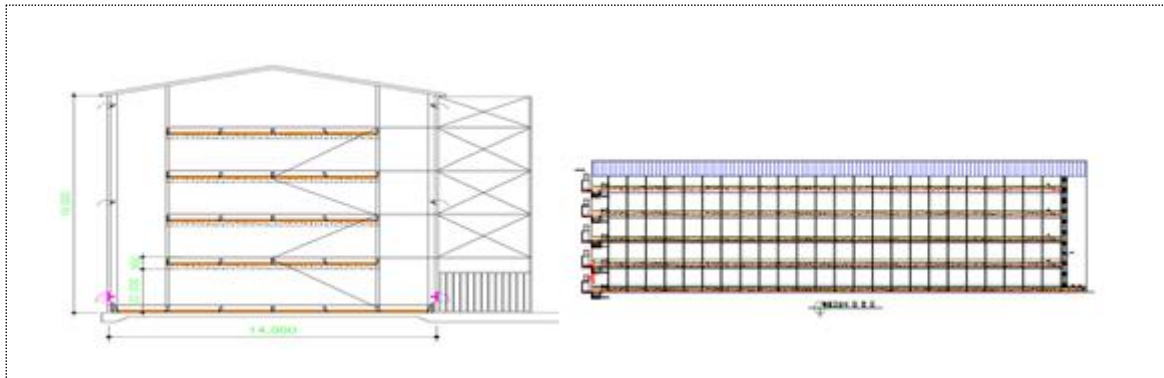
- 오리사육시설개선 : 4,753백만원
- 2개소 × 7,922백만원 × (보조 10%, 융자 50%) × 1년차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내용도 오리사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산란계 시설현대화 사업과 유사하게 시설 개선 과정에서 증축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 증축에 관한 지자체별 규제 내용에 편차가 커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임.

【 고상식 축사 시설도(정면·측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사육시설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 시 지자체 인허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 불용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가. 개 요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협, 수협 등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자가 거대 재해의 발생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재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1,080억원 (26.6%) 증가한 5,139억원임.

- 2026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재보험료 수입 1,463억원, 이자 수입 123억원, 여유자금회수 3,553억원을 통해 총 5,139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농어업재해재보험금 및 사업비 등으로 506억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4,633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 2026년도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5계획		'26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 입	1. 재보험료수입	1,463	1,463	1,463	-	-
	○ 면허료 및 수수료	1,463	1,463	1,463	-	-
	2. 정부내부수입 (농특회계전입금)	-	-	-	-	-
	3. 이자수입	98	98	123	25	25.5
	4. 여유자금회수	2,498	2,498	3,553	1,055	42.2
수입 계		4,059	4,059	5,139	1,080	26.6
지 출	1. 일반지출	506	506	506	-	-
	○ 사업비	500	500	500	-	-
	- 재보험금	500	500	500	-	-
	○ 기금운영비	6	6	6	-	-
	2. 여유자금운용	3553	3553	4,633	1,080	30.4
지출 계		4,059	4,059	5,139	1,080	26.6

14. 양곡증권정리기금

가. 개 요

-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양곡증권 및 차관양곡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산계정의 기금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1,619억원(△29.4%) 감소한 3,890억원임.

- 2025년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자기금예수금 2,000억원, 여유자금회수 260억원 등을 통해 총 3,89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 3,085억원을 공자기금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지출하고, 여유자금 804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 2026년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5계 획		'26계 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 입	1. 자체수입	3	3	21	18	615.0
	2. 정부내부수입	5,309	5,309	3,609	△1,700	△32.0
	○ 일반회계전입금	1,609	1,609	1,609	-	0.0
	○ 공자기금예수	3,700	3,700	2,000	△1,700	△45.9
	3. 여유자금회수	197	197	260	63	31.9
수입 계		5,509	5,509	3,890	△1,619	△29.4
지 출	1. 정부내부지출	5,249	5,249	3,085	△2,164	△41.2
	○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3,700	3,700	2,000	△1,700	△45.9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1,549	1,549	1,085	△464	△29.4
	2. 여유자금운용	260	260	804	544	209.3
지출 계		5,509	5,509	3,890	△1,619	△29.3